

법개정, 언제까지 '노사합의'에만 매달릴 것인가?

김 소 영*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의 세 차례에 걸쳐 유보된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또다시 6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3년 넘게 계속되어온 비정규직 관련입법 문제가 6월에 매듭지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장기표류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 동안 정부는 '비정규직법' 마련을 비정규직 문제해법의 우선순위에 두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 지고, 막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합의를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 노사간 합의로 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현안과 관련된 노동법의 제·개정은 노사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주된 기조이다. 생각건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일련의 합의도출과정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온갖 쟁점들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법 개정은 IMF 위기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경제 및 근로자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노동현안의 경우에도 노사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노사합의에만 매달려 법개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냉정히 따져볼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사간 신뢰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중요 현안일수록 이해관계의 대립과 인식차이 때문에 합의도출이 어려운데, 노동법의 직접적인 법률관계 당사자인 노사의 '합의'에만 의존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과연

-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sykim@kli.re.kr).

타당한 것이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간의 '합의' 도출은 중앙단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의 노사대표가 과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중앙 단위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어 자칫하면 노동운동의 위기로까지 몰고 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정의(正義)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과 힘 겨루기에 의한 합의는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법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이란 형평성을 갖출 때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자들의 대다수가 그 법을 지킬 의무에 대하여 납득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국단적으로 말하면, 노사합의에만 매달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합리적 입법자'인 국회의 존재는 애초부터 뒷전이 아니었나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 가 합의한 법의 내용이 만일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거나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법은 조만간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법을 또 고쳐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 시행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법의 제·개정에 앞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개정에 반영하는 것과,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제는 노사정 모두 노동법을 노동정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률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현안에 있어서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끌어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주고 받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질 경우, 그 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실질적 대안을 위한 합의에 입각해 이루어진 법이 아닌 경우에는, 설사 우여곡절 끝에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노동시장 및 노동현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노사분쟁을 발생시켜 끝없는 악순환을 야기시킬 뿐이다. 따라서 국회가 '합리적 입법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찾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상호 신뢰형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된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5~2020)*

안 주 엽**

I.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없는 성장'이 걱정스런 노동시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6.83%(본고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보여 왔으며, 경제성장과함께 노동수요(취업자 수 기준)는 연평균 2.56% 증가하였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은 0.3749에 이른다. 경제위기 발생 이후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05%, 노동수요 증가율은 2.12%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탄력성 역시 0.3500에 이른다. 제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두 해에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노동수요 증가율은 1984년과 1998년 두 해에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03년 경제성장률은 2.90%를 기록한 반면, 노동수요는 오히려 30.2천명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어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3년 노동수요 감소에 있어 임금근로자는 221.3천명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51.6천명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용없는 성장'이라고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에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왔던 자영업 '위축'으로 보는 것이현재로서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일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는 12.2천명 늘어난반면,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160.6천명, 103.2천명 줄어들어 피용자 없는 영세

_

^{*} 본고는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기초과제로 진행된 동일 제목의 보고서(근간) 중 주요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yahn@kli.re.kr).

자영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 위축은 2004년에도 이어져 비임금근로자가 73.4천명(특히 무급가족종사자가 140.6천명) 줄어들었으며, 반면임금근로자는 491.8천명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작된 '고용없는 성장'이 인구고령화와 함께 미래에 지속적 추세로 자리잡을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이를 밝히고자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2002년도에 이미 2010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에 중장기 전망에 핵심이 되는 통계가 변화함으로써 기존 중장기전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03년 초 통계청이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대해 200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반영한 가중치를 수정, 한국은행이 2004년 말 국민경제를 요약하는 통계자료인 국민계정을 2000년 기준으로 수정, 그리고 2005년 초 통계청이 특별추계인구를 발표, 미래인구추계를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혀 새로운 전망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통상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각각 전망한 후 수급차를 전망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에 부합하는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된 목적에 더하여 전망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또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며 인력수급정책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이에는 산업별 인력수요, 산업별 직종분포, 직종별 인력수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등이 있다. 세분화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예를 들어 보자. 장래 수요가 많아질 직종을 찾아내고, 이러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정확히 주어진다면(이를 위해서는 직업연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진입과정에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는 상당히 개관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전망절차

본고에서는 먼저 노동수요를 전망한 후 노동공급을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인력수급을 논의한다.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은 ① 경제성장 전망, ② 취업계수 전망, ③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④ 산업-직업행렬 전망, 그리고 ⑤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중장기 노동공급 전망은 ① 인구전망, ② 생산가능인구 전망, ③ 경제활동참가율전망, 그리고 ④ 경제활동인구 전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노동수요 전망에서 핵심인 경제성장 전망은 국민계정산업 78부문을 26부문으로 통합

4_노동리뷰

하여,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부가가치(2000년 실질가격) 자료를 추세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 전망하였다. 26부문 전망을 바탕으로 각 부문에 속하는 78부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세분석한 후 전망함으로써 2020년까지 국민계정 78부문 부가가치 전망을 마무리하였다. 국민계정과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산업분류를 달리하고 있음을 감안, 78부문 산업성장 전망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맞도록 통폐합하였다.

다음으로 부가가치 십억원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을 표현하는 취업계수를 전 망한다. 취업계수는 일정시점에서 자본(단기에서 고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할 때 최적 요소배합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요소생산성 등 기술수준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산업중분류 63개 업종 중 취업계수를 구할 수 없는 10개 산업을 유사산업으로 통합하여 53개 산업에 대하여 취업계수를 전망한다.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은 취업계수와 산업별 성장전망을 곱하는 단순한 과정이다. 취업계수를 구할 수 없는 10개 산업 중 9개 산업은 통합된 산업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세분석하여 전망하는 한편 1개 산업(국제 및 외국기관)은 전체 노동수요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추세분석하여 전망값을 구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산업소분류별 노동수요 전망을 시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게재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산업별 직종분포를 나타내는 산업-직업행렬을 전망하는 것이다.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와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이후 자료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추세가 상당히 짧은 시계열에 바탕을 하는 것으로 중장기 전망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능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1993~2003년 자료를 이용해 산업중분류-직업대분류 행렬을 추세전망한 후, 다시 직업을 중분류까지 세분하여 대분류에서 차지하는 최근(2001~2003년) 비중을 이용해 전망치를 구하였다. 여기에서 t시점에서 산업중분류 i, 직종대분류 j에 속하는 직종중분류 k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하기 위해 이전 3개년도의 비중을 이용하되

$$a_{kt}^{ij} = 0.5 a_{k(t-1)}^{ij} + 0.3 a_{k(t-2)}^{ij} + 0.2 a_{k(t-3)}^{ij}$$

와 같이 가중치를 달리하였다.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은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에 산업-직업행렬 전망을 곱함으로써 얻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은 중분류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이 고등교육 진도지도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중분류-직업중분류 전망을 산업은 소분류 단위까지, 직업은 적어도 세분류 단위까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료로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2000년 10%

표본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조사한 자료로 취업자에 대하여 산업소분류-직업소분류를 적용하고 있어 다소 세분화할 수는 있으나 단일시점에 대해서만 이러한 정보가 존재하므로 추세분석이나 전망은 불가능하다. 또다른 가능성을 가진 자료로는 중앙고용정보원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구조조사 자료로 산업소분류-직업세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직업을 분류함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르지 않고 있어 산업중분류-직업중분류 전망과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역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둘째, 이러한 세분화된 전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직업연구가 없다면 전망 역시 무용지물이라는점이다. 적어도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직업과 특이직종 또는 신직종에 대하여 기본적인직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학력과 전공, 그리고 경력에 대한 연구를 담은 것이 직업연구이다. 그러나 현재 본격적인 직업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사업 차원에서 미비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공급 전망에서는 먼저 추계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인구상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생산가능인구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가능인구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구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범위에서 배제하는 인구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성·5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한 후, 이를 생산가능인구와 곱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게 된다. 성과 연령 이외에도 교육수준과 (특히 여성에서) 혼인상태가 경제활동참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를 교육수준별 또는 혼인상태별로 전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성·5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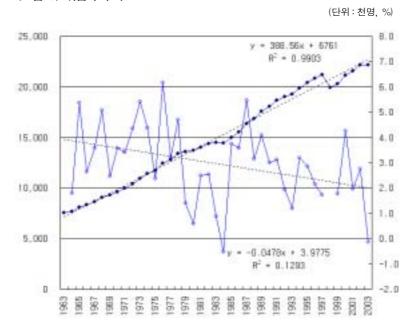
Ⅲ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

1. 노동수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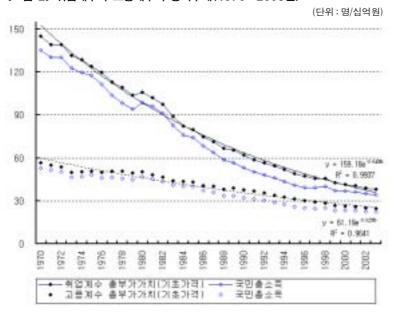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1963년부터 2003년까지 취업자수의 추이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1984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1998년 취업자 감소는 추세 단절을 일으키는 일시적 현상일 뿐 그 이후 이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0년간 취업자수는 연간 38.8천명씩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율은 뚜렷한 현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

로는 둔화(연간 0.05%포인트)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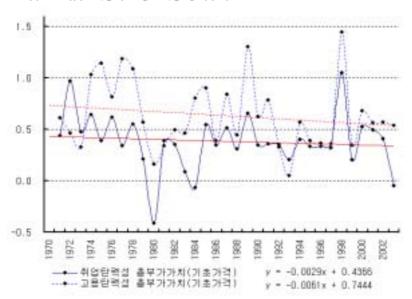


[그림 2] 취업계수와 고용계수의 장기추세(1970~2003년)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보여주는 [그림 2]를 보면, 총부가가치 기준 취업계수는 1970 년 약 150에 이르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연평균 4.38%) 2003년에는 30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고용계수(부가가치 십억원 창출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60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매년 평균 2.58%씩 감소하여 2003년에는 30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림 3]은 총부가가치 기준 취업탄력성과 고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탄력성 모두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탄력성이 연간 0.0029~0.0061 정도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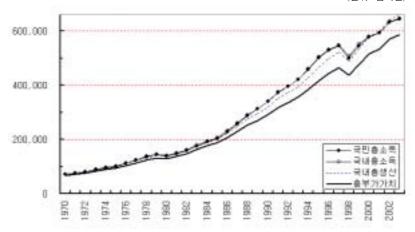
[그림 3] 취업탄력성과 고용탄력성 장기추세(1970~2003년)

2. 국민소득 전망

1970년 이후 국민총소득과 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1980년과 1998년 추세단절을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면 고도성장을 유지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1998년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그 이전과 유사한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2005년 1/4분기 경제성장이 2.7%에 불과하여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는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총소득은 매년 0.12%포인트, 총부가가치는 0.09%포인트씩 하락해 왔음을 상기한다면, 최근 경기둔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으로

[그림 4] 국민소득 추이(1970~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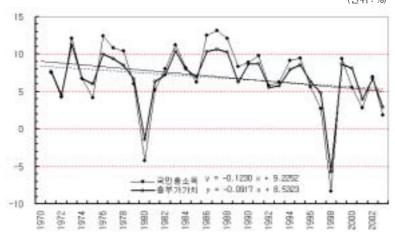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주: 2000년 불변가격.

[그림 5] 국민총소득과 총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70~2003년)

(단위:%)



보인다.

<표 1>과 <표 2>는 이미 설명한 방식을 이용하여 얻은 26개 산업군별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1970~2003년 사이 연평균 6.83% 성장한 총부가치는 2003~2020년 사이에는 연평균 4.5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간별로 보면, 1998~2003년 6.0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3~2010년 사이에는 5.06%(2005~2010년 사이에는 4.78%)로 둔화되고 그 이후 더욱 둔화되어 2015~2020년에는 4.01%에 그칠 것으로나타난다. 여전히 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 성장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나타나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군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반도체산업와 통신기기산업, 서비스업에서는 통신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난 30년간 성장을 주도하였던 금속공업, 기계기기공업,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

〈표 1〉 산업3분류 성장률 전망

(단위 : %)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70~2003	6.83	1.53	10.28	11.35	6.70
2003~2020	4.50	0.80	6.63	6.68	3.45
2003~2010	5.06	1.37	7.29	7.36	4.15
2005~2010	4.78	0.49	6.94	7.00	3.89
2010~2015	4.23	0.43	6.16	6.20	3.26
2015~2020	4.01	0.39	6.18	6.21	2.66

〈표 2〉 26산업군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 %)

							(단위:%)
		1970	1970	1980	1990	1997	1998
		~2003	~1980	~1990	~1997	~1998	~2003
	총부가가치	6.83	6.90	8.50	6.81	-5.72	6.05
1	농림어업	1.53	1.20	3.10	2.47	-6.38	-0.59
2	광업	-0.03	5.21	-0.07	-5.09	-14.85	0.31
3	제조업 1(음식료)	6.28	10.46	6.70	3.68	-3.26	3.00
4	제조업 2(의복)	5.79	17.77	5.26	-3.89	-14.37	2.85
5	제조업 3(나무)	7.84	11.46	13.22	2.43	-11.01	2.30
6	제조업 4(화학)	13.43	18.96	12.61	12.80	1.26	7.86
7	제조업 5(비금속)	11.04	16.07	14.23	5.56	-13.91	8.45
8	제조업 6(금속)	14.68	26.44	15.64	8.12	-10.72	5.89
9	제조업 7(기계기기)	17.92	26.61	19.80	12.83	-22.87	14.79
10	제조업 8(반도체)	25.93	33.63	21.31	21.66	69.61	19.14
11	제조업 9(통신기기)	21.62	31.55	22.29	7.18	-13.81	31.47
12	제조업 10(자동차운송)	15.41	16.77	22.12	13.42	-24.07	12.17
13	전기가스수도	13.50	18.10	15.50	10.07	-0.34	8.47
14	건설	7.45	10.35	10.39	6.84	-10.01	0.82
15	도소매	7.21	8.52	9.94	5.65	-11.97	5.67
16	음식숙박	6.00	4.83	7.83	6.84	-11.56	7.43
17	운수 및 보관	8.22	12.69	7.57	6.67	-6.61	6.14
18	통신	19.06	21.75	14.45	19.89	13.86	23.12
19	금융 및 보험	14.00	19.96	15.14	11.89	-3.50	7.10
20	부동산	5.36	5.22	6.71	7.03	2.17	1.37
21	사업관련서비스/광고	12.13	16.14	14.42	10.05	-6.99	6.97
22	공공행정 및 국방	2.86	2.54	2.95	4.07	0.59	2.10
23	교육	4.15	4.69	5.10	3.45	-1.14	3.23
24	의료, 보건, 위생, 사회복지	8.93	10.07	14.81	6.11	-3.83	2.12
25	문화	7.73	3.68	10.26	10.85	-8.25	10.18
26	기타서비스	6.23	6.91	7.24	7.56	-7.11	3.90

할 점은 문화산업이 연간 6.06% 성장할 것으로 보여 향후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3. 취업계수 전망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계수 역시 이러한 하락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993년 54.1에서 2003년 37.7까지 하락한 전산업 취업계수는 2010년에는 30.4, 2020년에는 23.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광공업에서 더욱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1993년 부가가치 십억원을 창출하는 데 56명을 소요하였으나 2003년 2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중분류 단위에서 볼 때에도 대부분 업종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명/억원)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1993	54.1	117.5	55.8	47.9
1994	51.8	112.5	50.5	47.2
1995	49.0	103.1	45.9	45.8
1996	47.1	97.4	42.3	44.9
1997	45.7	91.6	38.8	44.6
1998	45.6	102.6	36.4	44.4
1999	42.7	93.1	30.8	43.6
2000	41.2	89.6	28.1	43.5
2001	40.4	84.9	27.4	42.9
2002	38.9	84.7	25.3	41.9
2003	37.7	86.0	24.0	41.1
2004	36.1	81.5	22.7	39.6
2005	35.1	79.1	21.5	39.1
2010	30.4	68.2	16.3	36.5
2015	26.6	58.9	12.8	34.0
2020	23.0	50.9	10.1	31.8

4.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다음의 표는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3~2020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1.51%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이전 2.48%, 경제위기 이후 2.12%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지 않은 증가율이다. 표에서 보듯이 2015~2020년 사이에는 1.08%로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에서는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광공업에서는 이미 상당히 낮아진 증가추세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9.07%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2020년에는 18.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6%까지 하락하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표 1>과 <부표 2>에서 보듯이 광공업 중 취업자 증가추세를 주도할 산업은 전자 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할 산업으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리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

다음 표는 지난 10년간 직업(대분류)별 노동수요의 추이와 향후 2020년까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요약하면, 전문가 취업자 증가율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종사자, 장치종사자는 오히려 감소하여 노

〈표 4〉 노동수요 전망

(단위:천명,%)

	2003	2005	2010	2015	2020
전산업	22,139	23,030	25,227	27,084	28,579
농림어업	1,950	1,926	1,701	1,501	1,323
광공업	4,222	4,427	4,706	4,979	5,316
서비스업	15,967	16,677	18,819	20,604	21,940
산업3분류별 비중	2003	2005	2010	2015	2020
농림어업	8.81	8.36	6.74	5.54	4.63
광공업	19.07	19.22	18.66	18.38	18.60
서비스업	72.12	72.42	74.60	76.07	76.77
노동수요 증가율	1998~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12	1.51	1.88	1.43	1.08
농림어업	-4.05	-2.25	-1.93	-2.48	-2.49
광공업	1.40	1.36	1.56	1.13	1.32
서비스업	3.26	1.89	2.38	1.83	1.26

동수요에서 질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까지 전망치를 보면, 서비스직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단순노무 종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무직 종사자수는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판매직 종사자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숙련-고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일자리 양극화'의 본격화로 요약된다.

직업중분류별로 보면(부표 3 참조), 전문직 중에서는 컴퓨터관련 전문가(6.24%)가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과학전문가(5.65%)와 공학전문가(4.91%)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교육전문가(0.40%)는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준전문가 중에서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5.0%), 과학관련 기술종사자(4.3%), 예술 연예경기준전문가(3.9%)로 노동수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교육준전문가와 사회서비스종교 준전문가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직 종사자 중에서는 일반사무관련 사무종사자와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모두 취업자수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종사자 중에서는 모델홍보종사자와 여행운송관련종사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나도소매판매종사자와 보안서비스종사자는 감소 또는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는 제조관련 또는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종사자는 증가율이 높은 반면, 그외 광업건설운송관련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는 정체 또는 급속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표 5〉 직업별 노동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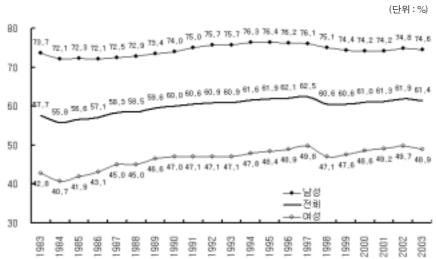
	1993~ 2003	1993~ 1997	1998~ 2003	2003~ 2020	2003~ 2010	2010~ 2015	2015~ 2020
전직종	1.42	2.48	2.12	1.51	1.88	1.43	1.08
직종대분류							
관리직	1.34	-0.43	3.86	1.60	1.35	1.88	1.67
전문가	6.59	2.75	9.14	2.70	3.45	2.29	2.05
준전문가	3.49	9.79	-0.13	2.59	4.06	1.77	1.36
사무종사자	2.52	1.67	5.04	0.13	-0.20	0.63	0.10
서비스종사자	4.19	10.00	1.80	3.18	3.91	2.95	2.41
판매종사자	2.39	0.11	5.10	-0.55	0.04	-0.36	-1.54
농어업숙련종사자	-2.33	-1.60	-4.30	-2.06	-1.61	-2.35	-2.38
기능종사자	-1.66	3.03	-1.06	1.36	2.35	0.93	0.41
장치종사자	-0.45	-2.80	2.55	1.85	1.99	1.83	1.67
단순노무종사자	1.01	2.61	2.39	2.85	2.81	3.03	2.72

Ⅳ. 중장기 노동공급 전망

1. 노동공급 개관

최근 2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성은 1995년 76.4%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74.2%에서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할때 과거 최고치까지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수준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1984년 40.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 49.8%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로 47.1%까지 주저앉은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M자형이 뚜렷하며 다만 20년 전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하는 '계곡'이 27세 전후에서 32세 전후로 이동한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55세 이후 고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50세 전후까지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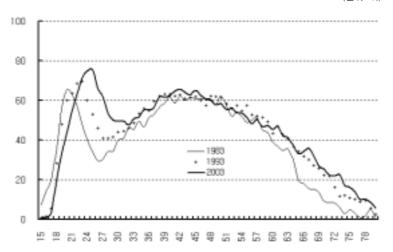


[그림 6]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83~2003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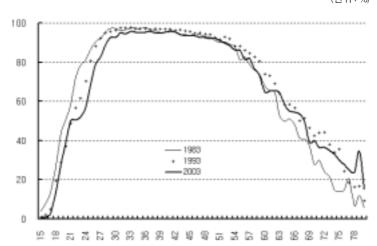


(단위 : %)



[그림 8]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성)

(단위:%)



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1983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으나 1993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이미 언급하였듯이 성 · 연령별 추계인구를 근거로 생산가능인구를 전망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983~1993년 연평균 2.18%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1993~2003년 1.39%로 이미 둔화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둔화추세가 지속되어 2003~2010 년에는 1.09%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2010~2020년에는 0.59%로 급속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대 역시 1993~2003년 사이 15~29세에서 2010~2020년에는 44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젊은 층은 절대인구가 줄고 고연령을 중심으로 절대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고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중위연령, 평균연령,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상승하며 고령사회의 문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동수요 증가를 채울 수 있는 노동공급은 가능한 것인가? 즉 향후 2020년까지 인력수급이 원활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다음 표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74.6%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까지는 74.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점차하락하여 74.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력수급 측면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48.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51.8%, 2015년에는 52.4%, 2020년에는 5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하락하는 반면, 4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15~19세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M자형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계곡'의 깊이가 상당히 얕

〈표 6〉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연령대별)

(단위:%)

	1983	1993	1997	1998	2003	2010	2015	2020
남 자	73.65	75.69	76.06	75.06	74.61	74.84	74.17	74.07
15~19세	18.25	10.56	8.64	9.10	8.30	8.09	7.63	7.22
20~24세	68.19	57.05	57.94	55.14	50.83	49.81	49.23	48.73
25~29세	92.19	90.60	88.04	87.03	82.74	81.98	81.54	81.17
30~34세	96.94	97.17	96.69	96.45	94.66	94.53	94.45	94.39
35~39세	96.59	97.05	96.93	96.25	95.21	96.18	96.14	96.11
40~44세	95.07	96.56	96.09	95.27	94.81	95.47	95.47	95.46
45~49세	93.72	94.86	94.68	94.06	92.83	94.00	94.03	94.06
50~54세	89.79	91.48	91.03	92.01	89.66	90.04	90.26	90.45
55~59세	78.39	84.61	84.83	81.75	80.29	81.30	81.88	82.38
60~64세	60.57	68.60	73.56	68.02	63.65	65.23	66.14	66.91
65~69세	44.25	52.72	55.45	52.96	50.89	55.60	56.22	56.76
70~74세	24.52	41.27	39.26	38.63	36.68	41.99	42.89	43.66
75~79세	14.21	23.58	31.36	29.99	27.93	32.15	33.25	34.20
80세 이상	5.47	9.35	13.23	14.02	15.11	17.86	19.34	20.70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이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계곡'을 없애야 역U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 시현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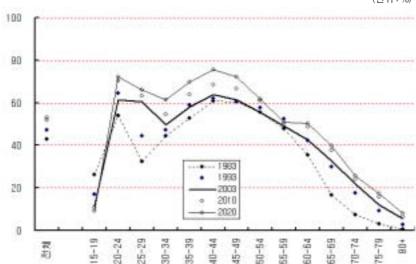
〈표 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연령대별)

(단위 : %)

	1983	1993	1997	1998	2003	2010	2015	2020
여 자	42.81	47.09	49.76	47.06	48.89	51.76	52.37	53.00
15~19세	26.17	16.83	13.00	11.92	11.32	10.82	10.01	9.31
20~24세	54.14	64.46	66.37	61.14	61.54	70.33	71.27	72.09
25~29세	32.51	44.52	53.80	51.50	60.54	63.25	64.80	66.13
30~34세	44.46	47.36	51.11	47.50	49.82	54.70	58.05	61.34
35~39세	52.79	59.09	60.53	58.65	58.14	63.93	66.91	69.82
40~44세	60.77	62.18	67.19	63.60	64.03	68.62	72.08	75.49
45~49세	60.35	60.64	62.01	61.49	61.47	66.51	69.41	72.27
50~54세	55.50	57.63	58.52	55.30	55.50	61.03	61.44	61.79
55~59세	47.98	52.60	54.30	51.41	49.00	50.00	50.57	51.06
60~64세	35.54	42.42	46.57	44.66	42.72	48.66	49.50	50.23
65~69세	16.58	30.09	35.74	32.54	32.61	37.62	38.76	39.73
70~74세	7.26	17.47	22.37	19.06	21.91	23.97	24.88	25.67
75~79세	3.04	9.28	11.88	10.86	12.08	15.86	16.60	17.24
80세 이상	0.59	2.65	4.88	2.92	5.56	6.63	7.37	8.08

[그림 9]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여성)





3. 경제활동인구 전망

다음 표는 경제활동인구와 이의 증가율의 전망을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 년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47% 증가하여 1983~1993년 사이 2.74%와 비교할 때 매 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간을 나누어 보면, 1993~1997년 사이에는 2.4%에 이르는 반 면, 1998~2003년 사이에는 1.35%로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최근 추세는 다소

〈표 8〉 경제활동인구 전망(연령대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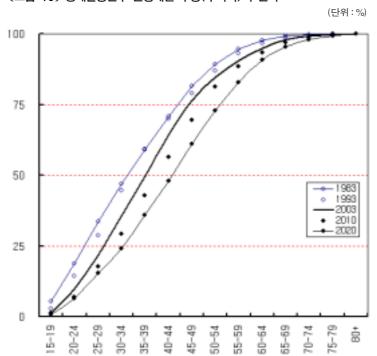
	1983	1993	1997	1998	2003	2010	2015	2020
전 체	15,118	19,805	21,782	21,428	22,915	25,389	26,454	27,062
15~19세	813	537	427	418	309	314	269	196
20~24세	2,001	2,292	2,134	1,922	1,911	1,470	1,672	1,515
25~29세	2,274	2,834	3,111	3,047	2,769	2,736	2,194	2,456
30~34세	2,024	3,176	3,127	3,016	3,185	2,874	2,917	2,379
35~39세	1,787	2,905	3,392	3,365	3,182	3,476	3,146	3,179
40~44세	1,817	2,133	2,784	2,881	3,405	3,430	3,597	3,260
45~49세	1,606	1,751	2,001	2,036	2,754	3,350	3,392	3,549
50~54세	1,164	1,579	1,576	1,604	1,870	2,964	3,141	3,143
55~59세	806	1,235	1,385	1,337	1,370	1,849	2,544	2,710
60~64세	497	718	978	956	1,015	1,260	1,568	2,174
65~69세	230	383	495	493	680	855	1,020	1,271
70~74세	77	188	244	220	301	486	538	656
75~79세	19	60	100	104	118	228	304	342
80세 이상	4	15	30	28	47	95	154	230

〈표 9〉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연령대별)

(단위 : %)

	1983~	1993~	1993~	1998~	2003~	2003~	2010~	2015~
	1993	2003	1997	2003	2020	2010	2015	2020
전 체	2.74	1.47	2.41	1.35	0.98	1.48	0.83	0.46
15~19세	-4.07	-5.37	-5.56	-5.84	-2.64	0.23	-3.08	-6.10
20~24세	1.37	-1.80	-1.77	-0.12	-1.35	-3.67	2.60	-1.95
25~29세	2.23	-0.23	2.36	-1.90	-0.70	-0.17	-4.32	2.29
30~34세	4.61	0.03	-0.39	1.09	-1.70	-1.46	0.29	-3.99
35~39세	4.98	0.91	3.95	-1.11	-0.01	1.27	-1.98	0.21
40~44세	1.62	4.79	6.88	3.40	-0.26	0.10	0.95	-1.95
45~49세	0.87	4.63	3.39	6.23	1.50	2.84	0.25	0.91
50~54세	3.10	1.70	-0.04	3.11	3.10	6.81	1.17	0.01
55~59세	4.36	1.04	2.90	0.48	4.09	4.38	6.60	1.27
60~64세	3.75	3.53	8.03	1.22	4.58	3.13	4.47	6.76
65~69세	5.22	5.91	6.65	6.64	3.75	3.34	3.58	4.51
70~74세	9.33	4.81	6.70	6.46	4.69	7.08	2.05	4.07
75~79세	12.45	7.04	13.77	2.56	6.45	9.88	5.86	2.40
80세 이상	13.23	12.22	19.22	10.93	9.77	10.51	10.11	8.40

완화되어 2003~2010년 사이에는 1.48%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며, 그 이후 점차 낮아져 2015~2020년 사이에는 0.46%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감소추세가 점차 확산되어 2003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15~44세 연령층에서 감소추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증가추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누적구성비는 그림에서 보듯이 우측으로 상당히 이동하여 노동력이 상당히 고령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구성(누적비)의 변화

V.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시사점

2003~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요약하면, 향후 2020년까지 우리 경제의 잠재성 장률(부가가치 기준)이 4.50%에 이르러 노동수요는 연평균 1.51%(연간 379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 61.4%에서 2010년 62.7%, 2015년 63.2%, 2020년 64.0%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증가율 하락과 인구고령화 추세로 노동공급은 연평균 0.9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노동수요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공급 전망을 보면, 2020년 남성은 30~54세까지 92~96%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25~29세나 55~64세 연령층에서도 77~88%로 높게 나타나므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치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66.8%, 40~44세 연령층에서 76.3%로 쌍봉구조가여전히 존재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용이한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부표 1〉 광공업 노동수요 증가율

(단위 : %)

		1998~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12	1.51	1.88	1.43	1.08
	광공업	1.40	1.36	1.56	1.13	1.32
10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15.21	-8.77	-6.38	-46.36	49.65
11	금속광업	8.72	-10.88	-9.91	35.77	-42.39
12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6.13	-2.39	-3.30	-1.98	-1.53
15	음식료품제조업	2.93	0.47	0.41	0.55	0.48
16	담배제조업	-10.55	-3.56	-4.94	-2.54	-2.63
17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 제외)	-3.84	0.32	1.94	-0.96	-0.64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10	0.81	2.19	-0.08	-0.21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4.91	-0.99	0.12	-2.00	-1.53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1.63	-5.09	-6.83	-4.02	-3.67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7.77	-0.23	-0.16	-0.31	-0.25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0.14	1.04	0.85	1.20	1.14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9.75	-1.30	-1.68	-1.07	-1.0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27	0.34	0.87	0.30	-0.3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69	-0.02	-0.34	0.26	0.15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08	-0.33	-0.75	-0.03	-0.04
27	제1차금속산업	2.21	0.07	0.01	0.19	0.05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98	-0.72	-0.75	-0.65	-0.75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12	-1.22	-1.05	-1.05	-1.63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16.39	-0.58	-1.79	0.07	0.49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76	1.48	1.28	1.72	1.52
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14	6.53	7.93	5.54	5.58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8.67	-0.29	0.25	-0.26	-1.0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1	1.67	1.61	1.95	1.48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46	4.93	6.96	3.73	3.33
36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1.40	-2.71	-1.83	-3.19	-3.44
3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5.99	2.96	3.49	2.82	2.35

〈부표 2〉서비스업 노동수요 증가율

(단위 : %)

		1998~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12	1.51	1.88	1.43	1.08
	서비스업	3.26	1.89	2.38	1.83	1.26
40	전기가스 및 증기업	3.76	-0.36	0.40	-0.36	-1.40
41	수도사업	7.22	-2.29	-6.54	1.33	0.26
45	종합건설업		-2.26	-2.49	-1.98	-2.20
46	전문직별 공사업		3.61	4.28	3.48	2.81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	-9.75	-0.77	0.62	-1.09	-2.37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7	-0.78	0.09	-0.59	-2.18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0.58	-1.40	-0.73	-1.12	-2.61
55	숙박 및 음식점업	2.54	3.57	4.24	3.34	2.88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1.72	3.20	3.28	3.23	3.06
61	수상운송업	-4.27	1.75	1.84	1.61	1.78
62	항공운송업	-0.85	4.31	4.95	3.99	3.74
63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2.48	4.37	5.06	4.00	3.76
64	통신업	9.36	5.28	6.46	5.29	3.65
65	금융업	2.80	0.72	0.48	1.26	0.51
66	보험및연금업	-5.38	2.08	2.70	1.99	1.30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6.35	1.81	2.10	2.00	1.21
70	부동산업	7.07	2.04	2.64	2.05	1.20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2.33	4.87	6.59	4.40	2.97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17.70	6.54	10.34	4.65	3.27
73	연구 및 개발업	3.73	7.07	16.89	1.10	0.28
7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27	2.08	0.91	3.44	2.36
75	사업지원서비스업		3.30	3.88	3.44	2.36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30	0.78	1.64	0.28	0.09
80	교육서비스업	5.16	0.93	1.35	0.21	1.06
85	보건업	4.38	2.42	2.99	2.23	1.83
86	사회복지사업		5.06	6.52	4.47	3.62
8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2.73	3.15	2.59	2.30
88	기타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5.53	5.68	5.68	5,17
90	하수처리폐기물처리청소관련서비스업	11.33	-0.34	-0.82	0.16	-0.16
91	회원단체	2.37	1.34	3.81	0.98	-1.68
92	수리업	0.82	2,32	4.28	2,27	-0.33
93	기타서비스업	2.92	1.46	3.42	1.34	-1.12
95	가사서비스업	-0.48	-0.32	-3.97	2.47	2.16
99	국제 및 외국기관	4.71	3.47	4.34	3.16	2.56

〈부표 3〉 직종별 취업자 전망(중분류)

(단위:천명,%)

										L 0, 70,
		2001	2002	2003	2010	2020	2001 ~ 2003	2003~ 2020	2003~ 2010	2010~ 2020
	전직종	21,572	22,169	22,138	25,227	28,579	1.30	1.51	1.88	1.26
1	. 의회임원 및 고위임원	6.3	5.7	3.7	4.6	4.0	-23.14	0.40	3.07	-1.42
2	. 행정 및 경영관리자	109.4	134.0	107.0	136.8	164.0	-1.10	2.55	3.57	1.83
3	. 일반관리자	408.6	430.3	486.6	514.9	614.5	9.13	1.38	0.81	1.78
11	. 과학전문가	27.2	19.5	18.9	43.6	48.2	-16.66	5.65	12.65	1.02
	. 컴퓨터관련전문가	170.4	181.2	162.0	310.2	453.3	-2.49	6.24	9.72	3.87
	. 공학전문가	177.2	183.8	191.6	309.0	432.6	3.99	4.91	7.07	3.42
	. 보건의료전문가	222.2	243.7	254.9	300.4	360.3	7,11	2.06	2.38	1.83
15	교육전문가	581.7	606.5	717.5	726.3	767.7	11.06	0.40	0.18	0.56
	. 행정경영재정전문가	42.7	44.1	51.8	65.2	89.0	10.19	3.24	3.33	3.17
17	. 법률사회서비스종교전문가	89.7	92.4	99.0	145.0	174.2	5.01	3.38	5.61	1.85
	. 문화예술방송관련전문가	187.4	205.8	206.0	258.0	349.5	4.84	3.16	3.27	3.08
21	. 과학관련기술종사자	16.4	16.0	11.1	20.5	22.7	-17.88	4.30	9.22	0.99
	. 컴퓨터관련준전문가	94.3	91.3	94.8	159.1	217.3	0.27	5.00	7.68	3.16
	공학관련기술종사자	332.1	371.4	400.5	522.6	686.2	9.81	3.22	3.87	2.76
	보건의료준전문가	129.0	140.0	142.6	177.8	210.6	5.13	2.32	3.20	1.71
	교육준전문가	415.7	446.4	500.5	548.1	506.2	9.72	0.07	1.31	-0.79
26	경영재정준전문가	746.6	714.6	683.9		1,183.1	-4.29	3.28	5.35	1.85
27	사회서비스종교준전문가	48.3	51.0	39.9	51.9	46.9	-9.13	0.96	3.83	-1.00
28	예술연예경기준전문가	82.1	86.1	71.9	103.2	138.4	-6.42	3.93	5.29	2.98
29	기타준전문가	214.2	198.3	195.3	259.9	293.4	-4.53	2.42	4.17	1.22
31	일반사무관련종사자	2,244.6	2,394.8	2,724.0		2,792.9	10.16	0.15	-0.24	0.42
32	고객서비스사무종사자	426.8	427.4	448.0	449.2	451.8	2.45	0.05	0.04	0.06
	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778.0	807.6	704.9	918.2	1,165.2	-4.82	3.00	3.85	2.41
	조리음식서비스종사자	1,772.6	1,857.2	1,831.9	2,453.2	3,271.6	1.66	3.47	4.26	2.92
43	여행운송관련종사자	17.6	17.9	13.9	20.3	26.6	-10.93	3.89	5.51	2.77
44	보안서비스종사자	154.7	160.7	184.2	184.8	195.9	9.12	0.36	0.04	0.59
51	도소매판매종사자	2,870.6	2,872.0	2,759.1	2,753.3	2,472.3	-1.96	-0.64	-0.03	-1.07
52	통신판매종사자	46.7	61.0	64.9	70.5	86.3	17.83	1.69	1.19	2.05
53	모델홍보종사자	15.8	19.1	11.4	19.3	24.7	-15.07	4.63	7.76	2.49
61	농업숙련종사자	1,967.0	1,907.8	1,767.0	1,566.4	1,213.4	-5.22	-2.19	-1.71	-2.52
62	임업숙련종사자	9.8	10.3	11.1	16.5	21.4	6.34	3.92	5.75	2.65
63	어업숙련종사자	58.0	46.2	55.7	53.5	53.2	-2.04	-0.27	-0.57	-0.06
71	추출건설기능종사자	747.8	832.4	834.8	1,023.8	1,266.5	5.66	2.48	2.96	2.15
72	금속기계관련기능종사자	343.5	331.0	276.0	265.8	233.2	-10.36	-0.99	-0.54	-1.30
73	기계설치정비기능종사자	550.0	581.6	554.6	745.3	845.3	0.42	2.51	4.31	1.27
74	정밀기구세공수공예기능	200.9	203.3	159.6	130.5	93.1	-10.89	-3.12	-2.83	-3.32
75	기타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796.2	748.5	582.1	666.7	589.2	-14.50	0.07	1.96	-1.23
81	고정기계장치시스템조작	161.3	173.0	151.6	170.0	168.1	-3.05	0.61	1.65	-0.11
	기계조작원관련종사자	713.0	698.4	683.9	746.2	764.4	-2.06	0.66	1.25	0.24
83	조립종사자	330.7	318.8	384.0	441.0	513.2	7.75	1.72	2.00	1.53
84	운전원관련종사자	1,127.2	1,183.1	1,167.0	1,383.1	1,813.6	1.75	2.63	2.46	2.75
91	서비스관련단순노무종사자	1,155.3	1,221.4	1,194.6	1,450.3	1,919.2	1.69	2.83	2.81	2.84
92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종사	116.7	118.5	122.5	89.4	65.7	2.45	-3.60	-4.39	-3.04
93	제조관련단순노무종사자	547.0	576.8	587.1	866.8	1,285.8	3.60	4.72	5.72	4.02
94	광업건설운송관련단순노무	318.8	338.0	424.4	421.1	483.6	15.37	0.77	-0.11	1.39

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과 향후 과제

김 정 한*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1989년 18.6%를 정점으로 노조 조직률(피용자 기준)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10.8%로 머물러 대표성의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관리직, 그리고 정규직 내부에서도 고참사원과 신참사원간의 갈등 등 노노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결과 노동운동이 분열되어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힘이 저하되어 가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의 노조재정비리는 그 비리가 개인적 비리이던 조직적 비리이던, 그 조직이 한국노총 가맹조직이던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던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민의 지탄을

〈표 1〉 조합원규모별 예산운용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인한 불신임 경험

(단위:개소,%)

	불신임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이 있다	불신임이나 자진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직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불신임당한 경험이 없다
50인 미만	3(4.6)	1(1.5)	61(93.9)
50~99인	8(9.3)	2(2.3)	76(88.4)
100~499인	25(8.4)	14(4.7)	258(86.9)
500~999인	7(10.6)	2(3.0)	57(86.4)
1,000인 이상	6(11.3)	6(11.3)	41(77.4)
전 체	49(8.6)	25(4.4)	493(87.0)

자료:김정한(200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24_노동리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unghan@kli.re.kr).

받아 노동운동에 치명타를 가한 중대사건이다. 또한 노조비리는 노조집행부의 불신임이 나 자진사퇴를 가져와 노조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표 1 참조).

사실상 노조재정비리는 어제 오늘의 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노조 비리가 사회문제화된 이유는 노조가 이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점에도 기인하지 만, 노조가 더 이상 사회의 민주화와 경영의 투명성 추세를 역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서 비롯된다. 곧 사회전반적으로 조직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노조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이 시장만능주의로 지칭되는 신자유주의하에서 결성목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력화의 단초는 노조의 으뜸가는 덕목인 도덕성을 회복하여 조합원을 비롯한 예비조합원인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있다.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립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본고는 노조재정비리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향후 노조가 재정투명성 및 재정자립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노조재정비리의 유형

노동조합의 재정비리는 조합비 유용비리, 조합비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 그리고 회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조합비 유용비리

조합비 유용비리는 노조집행부가 조합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로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리이다. 조합원 선물비나 조합원 t-shirt 등을 조합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하여 선물비 등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리베이트를 조합간부가 사용(私用)하는 비리이다. 이외에 금융산업노조 국민은행지부에서와 같이 자녀등록금, 가정부 고용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쌈지돈'으로 여겨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2. 조합비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

조합비 횡령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로는 주택조합을 결성할 목적으로 모은 주택기금 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용자측이 제공한 복지기금 등을 유용하여 일어나는 비리이다. 최근 택시노련의 복지기금 유용사례가 대표적이며, 일부 대공장노조에서 주택조합을 결 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비리이다.

3.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는 노동조합이 소비조합, 복지회관, 자판기 등을 운영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대공장노조에서 일어나는 비리이다.

4. 회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

기아차노조 광주공장 지부와 항운노조의 채용비리는 회사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개발독재시절 회사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노사분규를 회피하기 위해 노조간부에게 검은 돈을 주거나 각종 특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이다. 이와 같은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는 노조 임원선거에 직선제보다 간선제를 택한 노조, 다시 말해 노조의 민주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노조에서 많이 일어난다. 과거 섬유업계나 택시업계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비리이다.

5.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는 일부 노조간부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리이다. 기아차 노조 광주공장 비리는 회사와 노조집행부가 담합하여 공장에 취업하려는 노동자로부터 취업특혜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령한 조직적 비리인 반면, 현대차 노조의 채용비리는 일부 노조간부의 권력형 비리(개인적 비리)로 대비된다. 현대차노조의 채용비리는 취업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적지 않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일부 노조간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Ⅲ. 노조재정비리의 발생원인

노조재정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구조적 측면, 개인적 측면, 그리고 자주성 측면으로 구분된다.

1. 구조적 측면

구조적 측면에서 노조재정비리는 다시 노조의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비리와 회 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로 대별된다.

가. 노조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비리

노조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비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노조재정의 미공개 및 투명성 결여로 인한 비리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헌법인 규약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주적 조합운영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제11조). 노조재정과 관련해서 노조법은 자체 규약에 조합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결산 및 기금의 설치·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그 장부 및 서류를 노조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제25조 내지 26조). 그리고 행정관청의 요구시 노동조합은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허위보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96조).

현행법에 기초하여 예산·결산 및 기금의 설치·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예산·결산서 등의 재정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노총의 경우에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결산서를 대의원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전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당수의 연맹에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둘째,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미확보로 인한 비리이다.

노조재정자료의 미공개와 아울러 노조재정비리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는 노조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내부견제시스템인 회계감사시스템의 무기력으로 인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기업별 노조, 산별연맹, 총연맹을 불문하고 노조법에 의해 회계 감사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재정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별연맹이나 총연맹에서와 같이 회계감사의 전문성 결여로 형식적인 회계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회계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노조집행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매년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집행부의 시정조치 미흡으로 동일한 감사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계감사가 자파인 경우에 회계감사의 부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나. 회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

개발독재시절 정부와 회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행부는 회사불만세력을 직 간접적으로 억압하거나 반집행부 세력을 회사측과 결탁하여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여 노동운동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담합구조는 노조의 민주성이 확립되지 못한 노조에서 자주 일어나며, 민주성의 결여는 노조의 재정이나 활동상황의 공개가 일부 집행부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노조의 재정관련 비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2. 개인적 측면

노조를 치부나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조합비나 각종 기금, 복지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으키는 비리인 노조간부의 개인적 비리와 특권형 비리는 노조간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일부 노조간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비리는 전술한 노조 재정의 미공개 및 투명성 결여 등 회계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밀접히 연계된다.

3. 자주성 측면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전 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노조재정의 자립에서 비롯된다. 노동조합은 본질 상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며, 노동관계법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하는 단체교섭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외적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주로 사용자로부터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우 자주성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물론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집기, 전화·전기, 수도, 방송, 차량편의뿐 아니라 심지어 사무용품과 소모품, 노조업무로 출장 갈 경우 출장비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표 2, 표 3 참조).

조합원규모별로 노조의 사무집기 등 비품의 조달방식을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회사로부터 일부 보조 또는 전적으로 제공받는 비중이 전적으로 노조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비중은 규모가 클수록 높아대공장 노조일수록 비품 등의 회사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노조간부가 조합일로 출장갈 때 출장비 지급주체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노조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노조 중 25%는 회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아 노조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상급단체대의원대회 등에의 참석시에도 회사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표 2〉조합원규모별 노조사무집기 등 비품 조달방식

(단위: 개소, %)

	노조예산에서 충당	회사에서 일부 보조	전적으로 회사 제공
50인 미만	21(32.3)	30(46.2)	14(21.5)
50~99인	22(25.3)	38(43.7)	27(31.0)
100~499인	64(21.5)	149(50.2)	84(28.3)
500~999인	12(18.2)	34(51.5)	20(30.3)
1,000인 이상	11(20.8)	30(56.6)	12(22.6)
전 체	130(22.9)	281(49.5)	157(27.6)

자료:김정한(200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표 3〉조합원규모별 노조간부의 출장비 조달방법

(단위:개소,%)

	노조예산에서 충당	회사에서 일부 보조	전적으로 회사 제공
50인 미만	51(78.5)	11(16.9)	3(4.6)
50~99인	69(79.3)	15(17.2)	3(3.5)
100~499인	216(72.5)	66(22.1)	16(5.4)
500~999인	49(74.2)	15(22.7)	2(3.0)
1,000인 이상	43(81.1)	9(17.0)	1(1.9)
전 체	428(75.2)	116(20.4)	25(4.4)

자료:김정한(200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이러한 사용자로부터의 경비원조에 대한 해석론은 형식설과 실질설로 구분된다.

형식설은 재정상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주성 상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아주 경미한 경비의 원조가 아닌 한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긍정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조합전임간부의 근무시간 내의 조합활동에 대한 임금지급(불공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조합업무를 위한 출장비 및 일당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실질설은 형식설과는 달리 형식적으로는 운영비의 원조를 받더라도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우려가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재정상의 원조를 받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부(成否)를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더욱이 노동조합이주체적으로 투쟁하여 경비원조를 획득하고 현재에도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우려가 현저하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의 편의제공이나 경비원조를 당연시하여 이를 타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노조재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IV. 노조재정비리 개선방안

노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의 역사적·본질적 성격상 노조 스스로가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았으며, 국가도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방임하여 왔다. 그러나 노조가 각 국가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되고 노조간부의 부패·전 횡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문제가 제기되자 각국은 노조의 관리·운영 등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Landrum-Griffin Act(Labor 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1959), 영국의 Industrial Relations Act(1971),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1992)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미국의 경우 노조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노조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식, 채권,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노조법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매년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와 같이 아주 엄격한 편은 아니다.

일부에서 미국에서와 같이 노조재정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먼저 노조 자체적인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혁신활동을 지켜본 다음, 노조 스스로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으로 판단된다.

노조의 재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노조재정 자료의 투명성 제고

노조재정 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노조는 회계감사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조합비뿐 아니라 각종 기금 등 재정관련사업 자료(예산서 및 결산서)와 회계감사 자료를 노조신문이나 노조게시판 게재, 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노조집행부의 답변을의무화하도록 규약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집행부가 취하지 않을경우에는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도 규약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가시화될 경우 조합비 횡령비리나 조합비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는 상당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도모

노조집행부에 대한 내부견제시스템인 회계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서 노조비리가 발생한다. 회계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감사의 전 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들이 회계감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회계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03년 12 월 말 현재기준으로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 6,257개소의 2.7%인 174개에 지나지 않는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산별연맹(노조)과 총연맹의 경우에는 자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공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감찰기구 설치

한국노총 규약을 개정하여 총연맹 본부에 감찰기구본부를, 지역본부에는 감찰기구를 각각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 감찰기구는 특정 노조에 재정관련 비리의혹이 있다고

인지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 먼저 해당 노조의 회계감사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감찰기구는 회계감사의 감사결과를 검토한 다음, 당해 노조의 회계 감사와 협의하여 노조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노조집행부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만약 회계감사가 감사기구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감찰기구가 노조의 재정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조집행부가 타당한 이유 없이 감찰기구의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조치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4. 노조 재정자립방안 강구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또는 사용자의 재정보조가 노동조합의 성격이나 활동범위를 사실상 제한해온 것이 사실이다(권현지, 1997: 54).

현 단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재정을 자립할 수 없는 요인으로는 조직의 중층구조로 인한 조합재정의 중층구조, 조직률의 저위 및 조직화 노력 미약, 조합비 징수기준의 저 위, 조직형태상의 문제점, 조합재정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조직규모의 영 세성과 조직분열 등을 들 수 있다(김정한, 1998). 그 중에서도 기업별 노동조합 수준에서 는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상급단체 수준에서는 기업별체제가 갖 는 한계와 낮은 조직률 및 조직화 노력의 미약 등이 노동조합의 재정자립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다.

노동조합이 재정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크게 재정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출의 합리화, 수익사업, 전임자수 축소 및 기금적립, 조합비 인상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이 방안들은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으로서는 조직체계의 변경 및 조직의 슬림화, 조직확대, 조직합병 등이 거론된다. 기업별 노조조직 형태에서 산업별 노조조직 형태로의 전환이 노조재정자립을 위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형태의 실익에 익숙한 기업별 노동조합 집행부의 현실안주의식, 조직이 기주의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노조이던 산별노조이던간에 조직합병, 특히 조직확대는 전체 노동운동세력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노동조합이 대내적으로는 민주성,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견지한 가운데 노동 조합의 생성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민주주의를 고양하며 나아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재정을 자 립해야만 한다.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도덕성 회복 및 제도적 장치 구비

윤리강령 제정, 감찰기구 신설 등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비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조간부의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 개함과 아울러 비리관련 노조간부는 노동운동진영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국중앙조직이나 상급단체, 대공장노조에서는 경우에 따라 재산공개 등 사전검증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노총은 1994년에는 '노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2002년에는 '한국노총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노총의 개혁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아 개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노조재정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혁신위원회와 기 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혁신방안과 실천적인 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2005년 노조재정비리는 노조조직률의 하락과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점증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 개혁조치는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시도되는 한국노총의 개혁과 혁신이 또 다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비단 한국노총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노동운동 전체에 암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유형에는 ① 변화를 적극 인식하고 선도하는 유형, ② 변화를 인식하고 동참하는 유형, ③ 변화를 인식하되 실천하지 않는 유형, 그리고 ④ 변화를 부정하고 발목을 잡는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노총이 4가지 유형 중에서도 변화를 적극 인식하고 선도하는 첫번째 유형을 택하여 노동조합의 결성목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한국사회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현지(1997), '노동조합운영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정한(200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Ⅱ',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____(1998),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중기재정관리체계 도입과 노동부문 재정투자 우선순위

유 경 준*

I. 머리말

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1962년부터 총 7차례의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의 달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 확대를 위한 사전적·총체적 계획의 실효성이 한계에 직면하여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한편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려 하였으나, 매번 새 정부의 출범 등 특정한 해에만 작성되었으며 개략적인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쳐 왔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 하여 국정과제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① 2003년 시안마련, ② 2004년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③ 2005년에 확정,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기재정관리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에서는 대부분의 관심이 단년도 예산에 집중되어 있으나 많은 선진국과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중기재정관리체계(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속에서 예산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MTEF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유지, 국가적 운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의 조절,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책연구실장(yoogj@kdi.re.kr).

¹⁾ 이 부분은 고영선(2002)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는데 매우 유용하다 평가할 수 있다. MTEF의 핵심은 경제전망과 재정수입 전망, 그리고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수요를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적 재정여건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 하여 향후 3~5년간의 총재정지출을 전망하는데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각 연도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당국이 일반부처에 대해 총량적인 통제를 강화하되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예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에는 정부부처간의 예산배정을 위한 논의가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위원의 토론을 거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된 사항이며, 각 부처에서는 부처에 배당된 예산을 가지고 부처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5년 3월 14일 개최된 노동부문 국가재정운영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그리고 노동부문 재원배분에서 현재 최우선순위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안정서비스 구축방향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2004년의 경우, 약 4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평균적으로는 양호한 고용성과를 나타냈으나 2003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간 노동력 중 상당부분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증가된 42만개의 일자리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창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즉 2004년 초에 실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또는 2003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등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01~02년간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04년간은 자영업 및 서비스업이 내수 침체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 부문은 고용흡수력이 소진한 상태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2004년 2월에 시작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은 현재 일부실행과 더불어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평가는 어려우나 다음과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각 부분별 일자리지원 성과(일자리 나누기, 빈 일자리 채우기,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의 실현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지원 종합대책의 경우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한국의 경험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부재에 기인한다.

둘째, 일자리지원 각 사업에 있어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의 설정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 배정의 근거가 모호하며, 일자리지원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현되는 일자리 창출의 개수나 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현 상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2. 일자리지원 재정투자 수준 검토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중은 <표 1>에서 보듯이 2002년 현재 GDP의 0.4%로 OECD국가 평균(1.7%)의 약 1/4 수준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GDP의 0.27% (OECD 평균 0.71%)로 역시 낮은 수준이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실업급여, 조기퇴직대책)의 재정지출 비중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2).

한편 [그림 1]에서 보듯이 실업률로 조정한(실업률 1%당 재정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중은 2002년에 0.08%로 OECD 평균(0.15%)의 약 1/2 수준이나 OECD국가 중에서는 중위권의 수준이다. 따라서 실업률 대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중은 외국의 경우 북구와 중유럽의 재정지출의 비중은 높으나 영미계열의 국가와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중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나, 실업률 대비 재정지출은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어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는냐에 따라 외국과 비교를 통한 노동시장정책의 예산의 적정성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설정하느냐, 그리고 조세체계가 어떠하느냐(특히 소득세의 비중)에 따라 각국의 재정지출 비중이 결정되므로 지출비중을 논하기 전에 복지 및 노동정책의 방향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정책방향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을 기초로 노동부문 재정지출 비중을 판단할 때, 2002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항목별 투자비중은 OECD국가 평균을 기준(조기퇴직 대책 제외)으로 장애인 대책 \rightarrow 실업급여 \rightarrow 청년층 대책 \rightarrow 공공고용안정서비스 \rightarrow 직

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 규모추이: 0.41%(1998)→0.70%(1999)→0.49%(2000)→ 0.31% (2001)→0.27%(2002)

〈표 1〉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항목별 공공지출의 GDP 비중 국제비교(2002년)

(단위:%)

	1. 공공 고용 서비스	2. 직업훈련	3. 청소(년) 대책	4. 고용 보조금	5. 장애인 대책	6. 실업급여	7. 조기퇴직 대책	전 체
호 주	0.20	0.03	0.08	0.10	0.05	1.00	-	1.46
오스트리아	0.14	0.21	0.02	0.10	0.06	1.12	0.13	1.79
벨기에	0.21	0.30	0.01	0.60	0.13	1.94	0.45	3.65
캐나다	0.20	0.15	0.02	0.03	0.02	0.80	-	1.23
체 코	0.07	0.02	0.02	0.06	0.01	0.27	-	0.45
덴마크	0.12	0.86	0.10	0.17	0.34	1.37	1.67	4.63
핀란드	0.12	0.30	0.17	0.33	0.08	1.53	0.53	3.07
프랑스	0.18	0.23	0.40	0.35	0.09	1.63	0.17	3.06
독 일	0.23	0.32	0.10	0.22	0.30	2.10	0.03	3.31
그리스	0.06	0.21	0.10	0.08	0.01	0.47	-	0.93
헝가리	0.12	0.06	-	0.34	-	0.37	-	0.90
아일랜드	0.24	0.15	0.18	0.53	0.03	0.63	0.07	1.83
이탈리아	-	0.05	0.20	0.32	-	0.54	0.10	1.20
일 본	0.18	0.04	0.01	0.06	0.01	0.47	-	0.76
멕시코	-	0.03	-	0.02	-	-	-	0.06
네덜란드	0.28	0.60	0.04	0.33	0.59	1.72	-	3.56
뉴질랜드	0.12	0.14	0.15	0.08	0.05	1.00	-	1.52
노르웨이	0.13	0.05	0.01	0.01	0.67	0.54	-	1.41
폴란드	-	0.01	0.07	0.03	-	1.14	-	-
포르투갈	0.11	0.15	0.22	0.09	0.04	0.69	0.21	1.51
슬로바키아	0.15	0.04	0.01	0.21	0.04	0.48	0.01	0.94
스페인	0.09	0.22	0.05	0.44	0.03	1.56	-	2.41
스웨덴	0.38	0.29	0.61	1.95	0.99	-	-	2.34
스위스	0.12	0.13	0.01	0.14	0.15	0.79	-	1.33
영 국	0.17	0.02	0.13	0.03	0.02	0.37	-	0.75
미 국	0.04	0.03	0.02	0.01	0.03	0.57	-	0.71
한 국(a)	0.05	0.07	0.02	0.11	0.02	0.14	-	0.41
OECD 평균(b)	0.148	0.174	0.1058	0.25	0.157	0.93	0.34	1.74
비율(a/b)	33.7	40.1	18.9	44.1	12.8	15.1		23.6
부족률[(b-a)/b]	66.3	59.9	81.1	55.9	87.2	84.9		76.4

주:1) 고용보조금에는 민간기업의 고용유지와 신규채용장려금과 공공부문(및 비영리)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로 분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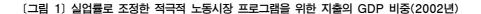
2) 평균은 위 표에 실제 포함된 국가들의 산술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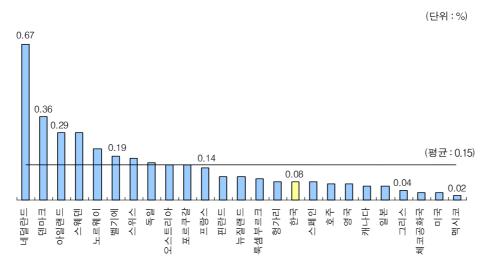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p.319~327에서 정리.

업훈련 → 고용보조금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한 재정지출이 절대규모나 상대적 규모에서 적은 것은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업급여 지출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현재 한국의 실업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여 낮고, 고용보험의 포괄범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출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이 증가하





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의 GDP 비중을 실업률로 나누어 조정한 비중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표 1>의 1~5의 범주를 포함한 것을 의미.

자료: OECD, "OECD database on Labour Market Programmes"(조준모, 2005에서 재인용).

면 이 부분의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장기실업자 위주, 자영업자의 경우는 직업훈련 참가를 전제로 하는 등 선별적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를 억제하고 고용률의증가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서비스 기능강화와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청년층 대책은 일자리창출 종합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기 재정에 있어서는 2005년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구조적인 원인이 크므로 영국의 청년실업대책 중 뉴딜프로 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청년실업 해소방안의 강구가 필요가 있다.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타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현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고용보조금 지원효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2004년 한국의 실업률은 3.5%로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 2월에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고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상에는 문제가 포착되지 않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잠

재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유휴인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휴인력의 증가는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동의 투입을 줄여 궁극적으로 잠재경제성 장률을 하락시켜 장기적으로는 주요한 성장동력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은 과거 실업대책과는 다른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유휴인력의 활용정도를 포착할 수 있는 고용률(취업자수/15~64세 인구)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한국의 고용률은 2002년 현재 63.3%(2004년 63.6%)로 같은해 일본 68.2%, 미국 71.9%, 영국 72.2%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양극화의 해소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기회 차별의 해소를 위하여 향후 효율성 점검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실업률의 증가를 억제하며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부문보다 고용지원서비스의 확충이 노동부문 재정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향후 고용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용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시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Ⅲ 민간고용지원 활성화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확충

1. 우리나라 고용지워서비스의 발전단계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서비스의 향후 방향을 논할 경우 외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고용지원서비스가 일반적인 발전단계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고용서비스의 발생, 공공기관독점시대, 민간기관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발전,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산업화 시기에 인력 중개기관의 출현과 실업보험 도입과 함께 취업알선 중심의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등장하는 시기이며,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직업소개소의 인권유린, 노동착취를 우려하여 민간의 고용서비스기관을 금지하는 시기가 2단계로 구분된다. 3단계는 민간기관 설립금지를 일부 완화하고 직업훈련과 연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4단계는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원스톱 서비스와 개인별 심층지원을 통한 실업예

방과 취업촉진 기능이 강조되고 민간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공 공과 민간기관의 연계강화 또는 역할분리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한국의 위치를 판단하여 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2 단계와 3단계가 혼재되었던 상황이고, 현재는 3단계와 4단계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인 고용지원서비스망을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외국에 비하여 인력이나 전문성이 낮아 서비스의 질 과 내용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고용지원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OECD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미달하는 점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나, 향후 질과 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이끌 것인지, 특히 고용지원서비스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 내지는 분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 호주의 고용지원서비스제도

외국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민간부문이 일부를 보완하는 체계와 공공서비스는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체계(캐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호주)로 구분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호주의 고용지원서비스체계의 공통점은 실업급 여업무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제공하고 그 외 취업알선, 직업알선, 인력관리의 상담, 직 업교육훈련 등은 정부가 민간조직에 아웃소싱하고 그 대가를 민간조직에 지급하는 방식 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고용지원서비스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복지관련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소개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현재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주목받고 있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³).

호주의 센터링크는 국민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센터링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1997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는 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한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천여개의 전달체계 연결망을 보유하고

_

³⁾ 이 부분은 장지연(2005)을 많이 참조하였다.

있으며, 연간 630만명(호주인구의 1/3)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전후로 센터링크는 전국적으로 25,4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7,600명은 지역네트워크에서 대민서비스업무를 담당하며, 4,340명이 콜센터에, 3,470명은 IT관련 종사자 및 중앙조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인력은 독립기구인 센터링크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비스업무의 전화상담과 처리는 26개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져 민간조직에게 구체적인 서비스업무를 인계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센터링크는 급여나 수당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 다양한 민간 에이전트에게 서비스를 할당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센터링크가 2004년 전후 회계연도에 사용한 예산은 220억 호주달러이며, 이 예산은 가족부, 노동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와 여러 정부기관들이 의뢰한 서비스계약의 이행을 통해 받은 대가이다. 따라서 센터링크는 독립적인 정부기구이지만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서 의뢰받은 업무에 따라 일정액수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링크는 전달체계의 효율화, 중복서비스의 방지, IT기술에 의한 효율화를 통하여 지난 5년간 826억 호주달러의 전달체계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서비스의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다른 형태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양자에 대한 평가가 우열이 갈린다면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과 호주 등의 방법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어느 조직이 더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호주의 경우에도 센터링크 조직자체가 효율적이라는 평가에는 대부분이견이 없으나 센터링크가 연결해 주는 각종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효율적이라는 평을 내리기에는 아직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센터링크는 초기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서비스 질과 내용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므로 앞서 논의한 고용지원서비스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는 4단계 말이나새로운 5단계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고용안정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고용안정센터를 국가고용 인프라로 확충하여 공공고용안정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민 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을 민관협력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민간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직업정보의 제공·교육훈련 등의 겸업과 자금지원, 직 업지도자료의 제공, 정부사업의 위탁 등에 대해서는 구매력을 갖춘, 즉 시장성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 는 위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현 시점에서 공공조직으로 더 확충될경우, ① 그것을 축소하고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② 정부가직접 운영하는 조직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늦고 경직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③ 고용지원센터가 노동시장의 정보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보건 등의 정보 연계가 함께 강화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을 좀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육성 및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고영선,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 KDI 정책포럼 제158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4. 장지연, 「호주의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센터링크)」, 월간노동리뷰 ,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조준모,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미발표자료.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

김 주 섭*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의 2차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사업을 실시중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고용안정센터 사업은 성과계약제 도입, 센터별 자율적 운영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경영방식을 일부 도입하고, 분권적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등 다소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그간 2차례에 걸쳐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사업을 수행하게 된배경과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 배경

선진국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 공공고용안정기관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기 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공공고용안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이 3%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1998년에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고용서비스의 급격한 확대를 불러왔다. 실업문제가 정점을 이룬 1998년에 전국에 걸쳐 99개의 공공고용안정센터가 설치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국가위기의 대량실업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설립된 고용안정센터가 선진

44_노동리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skim@kli.re.kr).

국에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고용안정센터 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안정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이미 불가피하게 잉태되었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용안정센터 업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의 비중을 2004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고용보험 업무(실업급여 및 적용) 38%, 고용안정사업 업무 12%,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4%, 기타 행정업무 14%이며, 취업지원 업무는 32%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전체 업무 중 고용보험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고용안정센터의 시장점유율(센터알선 취업자/신규채용자)은 5%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비율은 19.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 주요국의 공공 고용안정기관(PES) 시장점유율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시장점유율	33%	23%	23%	22%	14%	5%

자료: OECD, Database(2004).

둘째,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고용안정센터는 관할지역 내 산업특성 및 인구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특화 고 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여야 한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고용정책 은 지역 고용정보의 창출 및 활용, 지역사회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의 실행과 전달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센터 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인력, 예산 등 자원이 부족 한 상태이다.

이 결과 기업, 노조, 시민단체, 민간 직업안정기관 및 여타 관련기관들과의 업무 연계 내지는 협력기능이 취약하여 고용안정센터는 지역 내 고용서비스 허브(hub)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력부족과 투자부족으로 선진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에 근무하는 인력은 2004년 3월 현재

2,383명으로 1999년에 비해 10.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GDP 대비 공공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0.05%로 OECD 평균의 1/3 수준(2002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2〉 주요국의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일본 (1997)	독일 (2004. 6)	영국 (1999)	미국 (1997)	한국 ¹⁾ (2004. 7)
직원수(명)	15,324	93,274	35,992	70,682	3,116
경제활동인구(천명)	67,650	39,474	29,470	143,006	22,906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명)	4,415	423	819	2,023	7,351

자료: ILO,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2001; 독일은 장은숙(2002).

넷째, 조직 및 인력관리가 취약하다. 현재의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노동부 본부(노동시장기구과) → 고용안정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여명에 불과한 노동부의 노동시장기구과가 전국의 고용안정조직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 System)을 담당하여 중앙의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이 취약하며, 또한 행정조직인 지방청과 지방노동사무소가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에 관여함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정책집행기능이 취약하다.

한편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사이의 부조화 및 문화적 갈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부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것이 조직운영상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공무원과 민간 직업상담원 사이의 갈등은 부분적으로 민간 직업상담원의 처우가 열악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2004년부터 민간인 직업상담원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57세까지 자동 갱신되도록 하여 신분의 불안정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처우가 낮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다.

Ⅱ. 1차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의 성과와 한계

앞서 언급한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선진화하고 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있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사업이었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노동시장 정보수집과 활용기능의 강화, 고용안정센터 규모 및

기능 조정, 기타 업무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고용안정센터 운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1차 시범사업시 센터규모별 담당업무 구분

	수 행 업 무	비고
46개 종합고용 안정센터	 취업지원	기존의 수행 업무와 동일 하나 관할 구 역 확대
6개청 종합고용 안정센터	지역고용정책 수립, 고용동향분석,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 등 청소년 진로(직업)지도 강화, 각종 고용정보지 발간, 고용정보팀, 채용박람회 등의 각종 행사, 상담원 자체 직무교육, 고용안정센터 및 사업 홍보, 소속 센터 평가및 모니터링 등 수행	전문화・대
일반센터	취업알선,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모성보호급여, 자활지원사업 및 종합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접수 및 이첩 등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2002a).

첫째,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고용안정센터를 종합고용안정센터와 6개청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 일반고용안정센터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꾀하였다.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국에 걸친 46개 종합고용안정센터와 6개청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 일반센터의 업무가 규모에 따라 재조정되었는데,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기존의 수행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6개청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선진국형의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반면에 일반센터의 업무는 축소되었다.

둘째,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구직자 유형별 상담 및 서비스 제공체계가 새로이 구축되었다 (표 4 참조). 그간 센터에 등록한 구직자에게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직자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함

으로써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4〉 구직자 유형별 분류

Ç T	우형	대 상	주요 서비스 내용
대	등점관리 상자 등급)	취업의사는 있으나 다른 구직자에 비해 취업능력(학력, 경력, 자격증 등)과 취업기술(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이 부족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층상담 및 지원이 특별히요구되는 자	주 평균 1~2회씩의 지 속적인 심층상담(50분 이 내)을 10회 정도 실시하 면서 단계별로 구직능력 및 심리적 상태 향상
대	업지원 상자 등급)	취업의사와 객관적인 취업능력은 있으나 필요한 취업기술(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이 다소 부족하여, 상담원의 적절한 취업지도 가 요구되는 구직자)	취업기술 향상, 성취프 로그램 참가 유도, 취업 정보 수집 안내, 공공근 로 참여, 동행면접, 채용 박람회 참가 유도
대	업후원 상자 등급)	취업의사 및 취업능력·취업기술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적합한 구인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로 구인정보제공 등의 후원이 필요한 자	구직자에게 적합한 구인 정보, 고용동향 등을 전 화 또는 휴대폰 SMS, e- 메일 등으로 신속 제공
(등급	기타 급보류 직자)	훈련연장급여 등을 통한 직업훈련 참여자, 구체적 취업의사 없는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용자, 단순히 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한 자, 극 도의 정신적·심리적 장애로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자 등	추후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등록할 경우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2002c).

셋째, 이외에도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개선하고 온-라인 보고를 확대하는 등의 보고업무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담원 풀제 도입, 상담원 직무교육 강화 등 고용안정센터 업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1차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 직후에 행해진 평가작업을 통해 동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조직문화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 일정정도 긍정적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2)

그러나 1차 시범사업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종료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과의 지속성 (sustainability)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고용안정센터의 핵심적 성과지표랄수 있는 시장점유율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1차 시범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제한적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2) 1}차 시범고용안정센터의 성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섭·신현구(2004)의 「시범고용안정센터 성과 분석」을 참조.

Ⅲ 2차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사업의 내용

이번에 실시하는 2차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은 직업훈련과 연계 강화,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요체로 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서 발굴되는 모범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요체인 것이다.

본 사업은 6개 지방노동청에서 각 1개씩의 고용안정센터를 선정하여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2차 시범센터운영사업은 1차 시범사업 수행 당시와 대동소이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방법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1차 시범사업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수행되었던 반면에, 2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센터의 자율적 운영계획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성과계약제, 공모제 등 민간의 운영원리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하 보다 자세한 운영계획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 사업은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계획단계에서 각 청별로 1개소씩 총 6개소가 시범센터로 지정되었는데, 시범센터는 인력수급 애로지역,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사업 여건을 갖춘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최종 선정된 센터는 서울 강남고용안정센터,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대구종합 고용안정센터, 광주고용안정센터, 동인천고용안정센터, 청주종합고용안정센터 등이다.

본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시범센터장을 내부공모·추천 방식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실무인력은 인근센터의 인력지원을 받아 보강하였으며, 주로 취업지원 업무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였다. 시범센터장과 실무인력 보강은 시범사업 운영이 시작되기 전인 4월 중에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들 시범센터장과 소속 팀장들은 시범센터의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각 센터 운영계획서 초안발표, 센터간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범센터장은 주요역점사업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제출 완료하였는데, 운영계획서에는 취업률·충족률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차 계약은 센터장·소장과 지방청장간에 그리고 2차 계약은 지방청장과 노동부장관간에 체결되었다.

실행단계에서는 이미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구인-구직 애로고객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직업훈련과 연계한 원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민간, 대학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기업전담관리제 등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본부의 지시나 개입 없이 시범센터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금번 시범센터 운영에 있어서 노동부 본부의 역할은 평가단계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지원 선진화 시범센터 지원팀」을 운영하여 시범기간 중 센터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성공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실적이 우수한 센터와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을 통해 혁신분위기를 진작시킬 계획에 있다.

〈표 5〉 K 시범고용안정센터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성과지표	현 행	목표(6개월 후)	비고
결과지표 (outcome)	고객만족도	71점	78점	본부 고용정책실의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산출지표 (output)	취업자수(취업률) 충족률 수급자 재취업률 구인자수(30인 이상 사업체) 센터 이용자수 센터의 인지도 고용촉진 지원금액	1,166명(10.8%) 26.80% 4% 1,512명 15,478명 852백만원	1,500명(13.9%) 30% 20% 1,700명 17,000명 10% 증가 1,500백만원	(취업자수/구직자수) 취업자수/구인자수 재취업자수/수급자수 구인자수+구직자수 5월조사 인지도대비
투입지표 (input)	알선건수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수 직업심리검사 건수 동행면접 횟수 심층상담 인원수 기업 파일관리건수 집단프로그램 참여 수급자수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건수 직원 1인당 교육이수일수 직원 1인당 휴가사용일수	7,183건 341명 13,545건 126건 46명 50건 14명 6회 1.37일 2.19일	20,000건 610명 16,000건 200건 150명 300건 140명 20회 3일 5일	

주:기간을 비교기준으로 해야 하는 취업자수 등의 현행지표 수치는 2004. 5. 1부터 2004. 10. 31까지의 실적이며, 목표 수치는 금년도 동 기간중 달성할 목표임.

IV. 결론 및 제언

과거 한국경제가 구가하던 고성장 저실업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불어 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이 국가경제의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가 중요한 일차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0여년간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전제될 때에 비로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다. 낙후된 고용지원서비스 체계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곧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들을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으로 몰아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쟁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쟁점의 해결을 위한 수단은 상쟁적 · 전투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다소 때늦은 감마저 있다. 여기서는 시범사업의 성공뿐아니라, 시범사업에서 얻어진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노력이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안정센터와 여타 관련기관들과의 효율적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의 경우, 상담 및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피상담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기관을 소개하여 줄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선 고용안정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노·사 각 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노동시장의 불일치(mismatch)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고용안정기관과의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고용안정센터는 지역에 있어서의 고용서비스 중추(hub)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육성되어야 한다.

둘째,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적정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상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용안정센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적정규모의 우수한 직업 상담원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다. 우수한 상담인력이 적시에 배출될 수 있는 공급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함께 고용안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 에 따른 장단기 인력확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선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체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실적위주의 평가방식은 일선 고용안정센터로 하여금 일상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정책집행의 진정한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추진의 창의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의 확립이 긴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구인정보 수집을 위한 마케팅 강화, 센터 서비스에 대한 홍보강화, 고용서비스 영역의 다양화 및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체제 구축 등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주섭·신현구(2004), 「시범고용안정센터 성과분석」.
노동부 고용관리과(2002a), '고용안정센터 규모 조정 및 기능 활성화 .
(2002b), 「고용안정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범센터 운영(안)」.
(2002c),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I).
유길상 외(2001), 'PES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장홍근(2000),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직업상담 실태와 효과분석 , 한국노동연
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정연택(1997),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한국행정학회(2002a),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연구센터.
(2002b), PES 관련 조직의 체계화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ILO(2001),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공고용서비스 , 한국국제노동재단.
OECD(1994), Jobs Study: Facts, Analysis, Strategies, Paris: OECD.
(2002), 노동시장정책과 공공고용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기업의 경영성적표

김 정 우*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6일,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경영진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연간매출액이 25억 이상인 5,4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항목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로 해당년도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및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다.

2004년도의 기업경영분석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고수익이 실현되고 성장이 증가하는 등 기업경영의 성과가 향상되었지만 기업규모 및 수출-내수 기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 또한 뚜렷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I. 재무구조 개선, 고수익 실현 및 성장 증가

200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표 1 참조). 2004년 말 기준 전산업의 기업재무구조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2)가 각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¹⁾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구조 관련지표이다. (부채/자기자본)×100.

²⁾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차입금+회사채)/총자본 ×100.

각 131.3%에서 114.0%, 29.1%에서 25.6%로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3)이 43.2%에서 46.7%로 높아지는 등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2004년의 재무구조 관련지표는 일본, 미국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기업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꾸준히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채규모가 감소한 데다가 수익성의 개선으로 잉여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시기에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재무구조 관련지표들은 이후 줄곧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표 1〉 1997년 이후 재무구조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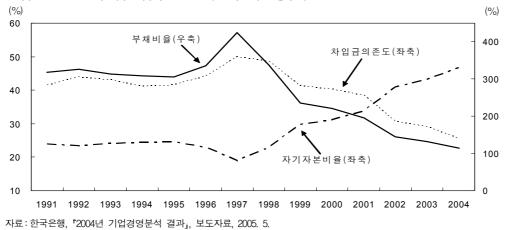
(단위:%)

	1997년말	1008녀만	2000년만	2001년만	2002년만	2003녀만	2004년말	일본	미국
	1331 전 골	133012	2000년 2	20011112	200212	2000년 2	2004년 2	(2004. 3)	(2004년말)
부채비율	424.6	336.4	221.1	195.6	144.7	131.3	114.0	253.6	-
구세미 <u>뀰</u>	(396.3)	(303.0)	(210.6)	(182.2)	(135.4)	(123.4)	(104.2)	(145.4)	(141.2)
차입금의존도	50.0	48.5	40.3	38.4	30.6	29.1	25.6	39.3	-
사합금의근도	(54.2)	(50.8)	(41.2)	(39.8)	(31.7)	(28.3)	(24.0)	(28.7)	(22.9)
자기자본비율	19.1	22.9	31.1	33.8	40.9	43.2	46.7	28.3	-
사기사돈미팔	(20.2)	(24.8)	(32.2)	(35.4)	(42.5)	(44.8)	(49.0)	(40.7)	(41.6)

주:()안은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그림 1] 1990년대 이후 재무구조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³⁾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총자본)×100.

2004년의 수익성 역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대표적 수익성 측정지표인 매출액경상이익률4)이 4.8%에서 7.0%로 상승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5)(6.4%—6.8%), 이자보상비율6)(351.2%—483.4%)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하였다(표 2 참조). 이는 수출호조 등에 힘입은 영업이익의 증가와 금리 및 원화환율 하락 등에 따른 영업외수지의 흑자전환에 기인한다. 특히 이러한 수익성의 개선추세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그림 2 참조).

〈표 2〉 1997년 이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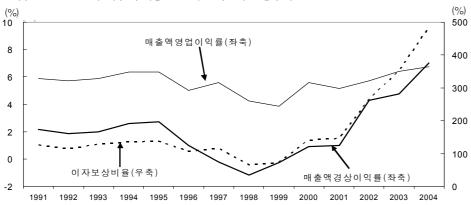
(단위:%)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2003)	미국 (2004)
매출액경상이익률	-0.2 (-0.3)	-1.2 (-1.8)	0.9 (1.3)	1.0 (0.4)	4.3 (4.7)	4.8 (4.7)	7.0 (7.8)	2.7 (3.9)	(9.0)
매출액영업이익률	5.6 (8.3)	4.2 (6.1)	5.6 (7.4)	5.1 (5.5)	5.7 (6.7)	6.4 (6.9)	6.8 (7.6)	2.8 (3.9)	(6.6)
이자보상비율	115.0 (129.1)	61.3 (68.3)	140.8 (157.2)	146.1 (132.6)	263.5 (260.3)	351.2 (367.1)	483.4 (575.8)	360.1 (578.2)	(397.1)

주:()안은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그림 2] 1990년대 이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⁴⁾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

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 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⁶⁾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

2004년의 매출액증가율7)은 13.3%로 나타나 전년의 증가율 4.0%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유형자산증가율8)도 3.8% 증가하여 2003년(1.3%)보다 투자 증가세가 다소확대되었다(표 3 및 그림 3 참조). 그러나 이는 1970년대(28.7%), 1980년대(17.9%), 1990년대(16.1%)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들어 기업들은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의 충격을 경험한 기업들은 주로 투자보다는 부채를 갚는데 치중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1997년 이후 성장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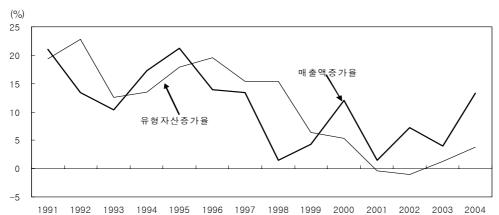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2003)	미국 (2004)
매출액증가율 ¹⁾	13.4	1.5	12.0	1.5	7.3	4.0	13.3	0.6	-
	(11.0)	(0.7)	(15.2)	(1.7)	(8.3)	(6.1)	(17.1)	(2.0)	(12.5)
유형자산증가율 ²⁾	15.4	15.4	5.3	-0.4	-1.0	1.3	3.8	-2.2	-
	(13.7)	(17.2)	(2.4)	(-1.5)	(-2.2)	(1.7)	(4.8)	(-2.7)	(-0.2)

주: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말대비.

3) ()안은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그림 3] 1990년대 이후 성장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⁷⁾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 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된다. 매출액증가율=(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⁸⁾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형자산증가율=(당기말 유형자산/전기말 유형자산)×100-100.

Ⅱ. 기업간 양극화 심화 – 제조업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4년의 기업경영 지표들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수익성,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전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의 지표의 개선정도는 기업규모, 업종, 수출 혹은 내수지향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재무구조 관련지표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지만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재무구조 개선의 정도가 더 컸다(표 4 참조).

〈표 4〉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별 재무구조 관련 주요지표

(단위:%, %p)

		부채비율		차	입금의존도		자	기자본비율				
	2003년말 (A)	2004년말 (B)	B-A (%p)	2003년말 (A)	2004년말 (B)	B-A (%p)	2003년말 (A)					
제 조 업	123.4	104.2	-19.2	28.3	24.0	-4.3	44.8	49.0	4.2			
<기업규모별>												
대 기 업	113.5	91.7	-21.8	25.9	20.4	-5.5	46.8	52.2	5.4			
중 소 기 업	147.6	138.7	-8.9	33.5	31.9	-1.6	40.4	41.9	1.5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5.5	112.8	-12.7	27.9	25.5	-2.4	44.3	47.0	2.7			
매출액 500억원 미만	157.7	152.6	-5.1	35.7	34.8	-0.9	38.8	39.6	0.8			
<수출비중별>												
50% 이상 기업	115.3	95.1	-20.2	24.5	19.1	-5.4	46.4	51.3	4.9			
20~50% 기업	121.3	101.0	-20.3	32.3	27.0	-5.3	45.2	49.8	4.6			
20% 미만 기업	136.0	122.7	-13.3	30.3	29.2	-1.1	42.4	44.9	2.5			

주: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수익성 지표의 경우, 양극화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선, 제조업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대폭 상승한 반면(6.0%→10.2%), 중소기업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2.5%→3.3%).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높아졌지만(8.2%→9.4%) 중소기업은 오히려 낮아졌다(4.6.%→4.1%). 대기업 중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30대 이외 기업→30대 기업→5대 기업)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크기 및 전년과의 격차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1%p 상승에 그쳤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9%p 하락했다.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크기 및 전년과의 격차가 수출비중 20% 미만인 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즉 2004년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기업일수록, 그리고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표 5〉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

(단위:%, %p)

	매	출액경상이익	륟	매출액영업이익률				
	2003 (A)	2004 (B)	B-A (%p)	2003 (A)	2004 (B)	B-A (%p)		
제 조 업	4.7	7.8	3.1	6.9	7.6	0.7		
<기업규모별>								
대 기 업	6.0	10.2	4.2	8.2	9.4	1.2		
5대 기업	10.9	17.0	6.1	12.2	14.9	2.7		
30대 기업	7.7	13.5	5.8	9.5	11.8	2.3		
30대 이외 기업	3.8	5.7	1.9	6.4	6.1	-0.3		
중 소 기 업	2.5	3.3	0.8	4.6	4.1	-0.5		
매출액 500억원 이상	3.9	5.8	1.9	6.1	6.1	0.0		
매출액 500억원 미만	1.9	2.0	0.1	4.0	3.1	-0.9		
<수출비중별>								
50% 이상 기업	4.9	9.3	4.4	7.0	8.2	1.2		
20~50% 기업	4.5	8.9	4.4	7.0	8.7	1.7		
20% 미만 기업	4.6	4.7	0.1	6.6	5.7	-0.9		

주: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기업의 성장추세를 대표하는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2004년의 제조업 전체 매출액증가율은 17.1%로 크게 높아졌으나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매출액증가율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액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수출에 기반한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별 매출액증가율

(단위:%, %p)

	2003(A)	2004(B)	B-A(%p)
제 조 업	6.1	17.1	11.0
<기업규모별>			
대 기 업	6.6	19.9	13.3
30대 기업	10.2	24.7	14.5
30대 이외 기업	2.3	13.7	11.4
중 소 기 업	5.4	12.3	6.9
매출액 500억원 이상	10.9	22.3	11.4
매출액 500억원 미만	3.2	7.9	4.7
(매출액 100억원 미만)	(-5.3)	(-0.3)	(5.0)
<수출비중별>			
50% 이상 기업	8.6	19.8	11.2
20~50% 기업	7.1	22.0	14.9
20% 미만 기업	2.5	10.1	7.6

주: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Ⅲ, 기업수익의 투자유인 필요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였고, 재무구조도 건실해졌다. 그러나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성장성의 크기도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규모가 작고 내수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에 따른 경제 양극화가 구조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제성과의 규모별양극화가 그대로 해당기업 피고용자들에게 전가되었을 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적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유형 자산증가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 업들이 실현된 수익을 새롭게 투자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의 부채를 갚는데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물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 및

이슈분석_59

글로벌 시대의 기업생존과도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 투자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투자 없는 기업에서 고용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업수익이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호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

고령자패널팀

I. 머리말

압축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대비한 정책수 립과 평가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고령자패널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1) 고령 자패널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첫째, 고령화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고령화가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고령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 설문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미국 고령자패널조사(HRS)와 유럽의 고령자패널조사(SHARE) 설문지를 주로 참고하고 있다.2)

여기서는 현재 개발중인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설문 내용 및 설문 문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이나마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고 령자패널조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설문 영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 영역별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¹⁾ 고령자패널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노동리뷰』 2005년 4월호를 참조.

²⁾ 최근 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영국 고령자패널조사(ELSA)와 유럽 고령자패널조사(SHARE) 역시 미국 고령자패널조사와 비교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중국 및 일본 역시 미국 HRS와 비교가능한 고령자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Ⅱ. 설문 영역 구성

2006년 본조사 실시를 목표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은 고 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건강 및 보건, 개인 심리, 자산 및 소득, 주거, 가 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10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강 및 보건에 대한 내용은 크게 건강상태, 의료시설 이용현황,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보 험 가입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심리의 경우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주관 적 기대감을 측정하는 영역만 포함되었으나, 향후에는 개인의 인지능력을 묻는 영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고용현황 이외에도 은퇴 및 연금과 관련된 내 용이 포함된다.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와 미국의 HRS, 유럽의 SHARE의 설문

〈표 1〉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영역

	고령자패널조사	HRS 2004년	SHARE 2004년
인구학적 특성	인 구	Demographics Widowhood Divorce	Demographics
노동시장 특성	고 용	Employment Retirement Pensions	Employment and Pension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보건의료 이용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보험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Health Care Costs ADL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Life Insuranc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Behavior Risk Health Care Grip Strength Walking Speed
개인 심리	주관적 기대감	Cognition Expectations	Cognitive Function Expectations
자산 및 소득	개인소득 및 가구자산	Assets and Debts Income Capital Gains Asset Verificati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ssets
주 거	주 거	Housing	Housing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구조 및 사회적 관계	Family Structure Transfers Event History	Children Social Support Financial Transfers

영역 구성은 약간씩 다르다. 이는 각 국가들이 가진 관심사항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영역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Ⅲ 주요 내용

1. 인 구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간단히 보여주는 인구통계 영역은 HRS의 인구통계 영역과 기본적인 구조를 함께 하고 있다. 전체적인 설문 구조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생년월일을 시작으로 교육수준, 청소년기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수, 군대경험, 거주지 변화, 혼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HRS에서 포함된 출생 국적, 민족/인종, 언어부문은 한국적 실정과는 동떨어진 관계로 생략하였다.

학력을 묻는 질문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므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옛 학교 이름인 보통학교, 공민학교를 괄호로 하여 추가 설명하였고, 중·고등학교 학력에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증제도도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당시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무학'의 경우에도 글자 해독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청소년기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들은 HRS와 동일하게 16세를 기준으로 문고 있으며, 그 시기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이사 경험, 다른 주변사람의 경제적 지원 여부, 당시 부모님의 직업 및 학력과 같은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로 포함되었다. 청소년 시절 거주지를 묻는 설문 문항은 미국과 한국의 거주지 개념과 스케일이 다르므로 우선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로 나누어 질문한 후, 광역 단위로 그 지역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HRS의 혼인력에 대한 설문 문항은 CAPI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HRS 형식은 현재의 혼인상태를 간단히 묻고 이혼을 한 경우초기 결혼부터 마지막 결혼의 순서로 물으며 마지막에 다시 최근 결혼상태 및 기간을 묻는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설문 구조가 더욱 복잡하여 고령자패 널조사에서는 현재 결혼상태 및 2번 이상 결혼을 한 경우에는 처음 결혼부터 최근 결혼에 대해서 묻는 방식으로 설문 구조를 바꾸었다.

2. 고 용

고령자패널조사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령화가 가져올 충격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력의 고령화와 공급 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은퇴를 하는지, 그리고 근로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은 이번 고령자패널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여 고령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의 은퇴과정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 영역의 설문 내용은 크게 고용 및 은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용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시작으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측정한다. 임금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를 측정하고, 일자리의 산업과 규모, 현재 근무하는 일의 종류, 직위, 이 일을 시작한 시기,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정년 연령 등일자리의 특성을 포함한다. 근로로 인한 소득 역시 고용 영역에서 질문한다. 그리고 현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하여 현재 하는 일이 물리적인 힘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가도 포함한다. 또한 주된 일자리 이외에 다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일자리에 대한 특성 역시 측정한다.

HRS의 경우 고령자의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가입 연금의 종류와 향후 급여 예상액, 수령방식과 주기, 직장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만약 일자리를 바꾸었다면 이전과 같은 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 이외에 별다른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지막 일자리의 특성에 대하여 질문한다.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와 근속년수, 일자리의 산업 및 직장의 규모, 일의 종류 및 직위,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 앞과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업상태인 경우는 실업의 이유, 구직활동 여부 및 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을 질문한다.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상태라면 은퇴시기와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질문한다. 더불어 은퇴를 한 이유와 은퇴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과 함께, 비록 은퇴하였으나 현재 소득이나 수입을 얻기 위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아본다. 만약 은퇴하지 않은 경우라면 향후 은퇴연령과 계획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변

경, 자영업 개업 등-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포함된다.

3. 건강상태

건강 영역에서는 우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만성 질환 및 시력, 청력, 통증, 요실금 등 육체적 건강과 우울증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 건강을 조사한다. 그 외에 키, 몸무게 등 체질량지수 조사와 성별에 따른 건강진단(유방암, 전립선암 검사 등) 및 운동, 흡연, 음주 등 건강 습관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만성질환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암,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증, 정신질환, 관절염 등 8개 질환으로 제한하여 각각의 질환에 관한 진단 시기와 현재 약 복용 여부 및 치료상태 등에 관해 보다 자세히질문한다. 이는 만성질환의 종류를 크게 10개의 질환(암,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성 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피부, 비뇨생식기계 질환, 구강 질환, 눈, 귀 질환)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다시구체적인 병명으로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등 보건복지부 조사방법과는 약간다르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낙상관련 질문이 추가되었다.

4. 보건의료 이용

보건의료 이용 영역에서는 고령자의 보건의료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입원, 외래진료, 왕진, 가정간호, 약처방 등을 이용한 횟수와 기간, 비용, 비용을 지불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우선 입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여 각각 입원한 횟수와 기간, 비용, 입·퇴원한 시기에 대해 질문한다.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험도 외래 진료, 치과 진료, 방문 진료로 구분 하여 진료받은 횟수와 비용, 비용을 지불한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노인들은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의 가정방문 치료를 받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정방문 치료에 대해서도 따로 묻는 문항을 포함한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지불한 치료비와 본인이 부담한 정도를 각각 질문하고,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중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시켜 의료 소비가 많은 고령자들과 그 가족이 의료비로 인해 겪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은 삭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한방 병·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노인들이 한방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특성을 반 영하여 한방 병·의원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5.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에서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s)을 점검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누군가의 혹은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지표는 걷기, 앉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무릎꿇기, 팔 내밀기, 당기거나 밀기, 들어올리기, 동전 집어올리기 등이다. KLOSA에는 65세이상 응답자에 대해서는 운전 능력에 대해 추가 질문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에 대해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도우미에 대한 질문은 도우미를 몇 명 두었는지, 그리고 응답자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한다. 도우미에 관한 내용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부분에서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질문이 있다. 도구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이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약 간의 복합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장보기, 전화하기, 약 먹기 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러한 것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한편 HRS에서는 응답자의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여가와 대인관계 항목을 따로 만들어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6.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관한 설문 내용은 크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그리고 사적 건강보험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의 HRS에서처럼 별도로 미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이 필요 없이 모든 응답자가 소득수준에 따라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 대상자로 자동으로 분리되어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하

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시 가입자 명의(본인/가족) 및 가입형태(직장/지역)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및 체납 여부를 조사하며, 전반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 대상자가 현재 및 과거에 의료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간략히 조사한다.

건강보험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 건강보험 부문에서는 가입 여부 및 대상자, 보험료, 혜택의 종류 등을 조사하며, 특히 사망보험금에 관해서는 지급 여부와 수익자, 보험금 액수 외에 약관대출 및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한국에서의 사적 건강보험은 상해, 질병 등에 관한 제3보험 외에도, 생명보험 내의 정기 또는 종신보험 특약, 손해보험 내의 인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구별없이 건강보험의 성격인 보험은 모두 함께 포함하도록 하였다. HRS에서 생명보험으로 한정하여 다루는 사망보험금도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보험을 함께 조사한다. 이는 보험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보험을 들고 있는가, 혹은 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해지나 최근 신규가입 등 보험가입의 변경여부 관련 조사는 추후에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HRS에서는 2000년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이용' 부문을 별도로 조사하다가 2002년부터는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HRS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이용부분 연계조사는 차후에 고려하기로하고, 우선 첫번째 조사년도에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HRS에는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Medicaid(저소득층 대상)의 특성상 양로원 거주비 및 장기요양비 부담관련 내용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 및 지정의사 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7. 주관적 기대감

고령자의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 남북통일, 사회보장 등 국가적인 사안에 대한 기대수준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부터의 재정지원, 재산상속, 요양시설 이용, 생존율, 저축 계획 등 개인적인 차원의 기대 수준도 조사한다. 이 영역은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고안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대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항목은 물가상승률 변동과 경기변동, 실직과 구직의 가능성, 노후의 근로활동 가능성 등을 질문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 대수준을 확인하는 항목도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HRS에서는 조사하지 않는 통일과 부동산에 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이 추가된다.

개인적인 차원의 기대수준을 묻는 항목으로는 유산의 증여 및 상속의 가능성과 규모를 질문하고, 거주지 이동에 관하여 이사 가능성, 이주 지역, 거주 형태를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또한 자신의 수명에 관한 기대수준과 노후의 재정상태에 관한 예측, 요양시설이용의 가능성, 저축계획, 자녀의 재정상태에 관한 기대수준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8. 개인소득 및 가구 자산

개인소득 영역은 주로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과 저작권·특허권, 위자료 및 부양비 명목으로 책정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며, 재정관리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포함된다. HRS의 개인소득 영역에서 다루었던 자영업자의 소득, 자영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이외의 전문활동이나 거래를 통한 소득, 부업소득, 군 적립금 등에 관한 항목은 고용 영역에서 다룬다.

사회보장 급여를 통한 소득은 사회보험 급여와 공공부조 급여를 구분하여 조사하며, 사회보험 급여는 다시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으로 구분하 여 급여의 수급 여부와 급여시기를 조사한다. 국민연금은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장해연 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질문하고, 특 수직연금 또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 역시 세부항목을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로 구분하 고, 고용보험도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세분화하여 사회보험 급여를 통 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가구 자산은 한 가구의 자산관리를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 개인별 또는 가 족별로 다르게 조사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크게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비금 융자산, 부채 등으로 나뉜다.

우선 부동산 또는 사업체/농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소유자산의 현금가치, 그리고 지대,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액수와 빈도, 규칙성에 관해서 조사한다. 자산가치 금액을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을 위해 범위 질문도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데, 자산가치 범위의 수준은 각 해당영역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자산은 크게 주식, 채권, 보통예금/당좌예금/MMF, 양도성예금(CDs), 제2금융권 저축(상호저축, 금고, 협동조합 등), 저축성 보험, 사채, 계 등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소유 여부와 그 자산가치,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지, 그렇다면 그 액수와 주기, 규칙성 등을 질문함으로써 개인 또는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가 총 합계액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개별 금융자산 종류별 합산을 통해 추정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은행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2금융권 저축 및 사채와 계를 별도로 포함하고 것이 미국의 HRS 설문과 다른 부분이다.

이 외에 자동차 등 운송수단 및 보석/예술품 등 비금융자산의 소유 여부와 소득공제, 자선기부, 증여/상속, 유언장 내용 등의 질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저축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는지의 질문을 통해 자산가감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관련 사항으로는 은행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부채, 신용카드 부채, 사채나 친지 등 개인적으로 빌린 돈, 기타 등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HRS 설문은 자산/소득/부채가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는 이를 '가구자산(부채 포함)'과 '개인소득'으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개인소득' 영역에서는 주로 국민연금, 실업수당, 산재보상금, 기초생활보장금 등 사회보험 소득을 다루고, 근로소득은 '고용' 영역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근로소득이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함께 조사될 때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HRS에서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근로소득을 자산/소득 영역에서 조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이를 '가족구조' 영역에서 다룬다. 또한 HRS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형태의 푸드스탬프(Food Stamps)에 관한 질문이 비교적 자세하게 포함되어, 돈이 부족하여 식사를 거른 적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음식물 섭취의 적정성'관련 조사 질문이 동일섹션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이를 '건강' 조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9. 주 거

주거 영역에서는 현재 주로 거주하는 집 이외에 별도의 주택,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땅과 농장을 조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주거 항목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와 소유권, 재산가치 등을 묻는 질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실버타운 등 고령자 주택에서 사는지, 그리고 거주하는 집의 구조, 별장을 포함한 별도의 집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집의 형태(농장인지, 일반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와 그 집의 소유권, 재산가치, 집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집에 대한 부동산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특히 집의 정확한 가치를 알기 위해 주택을 담보

로 한 대출, 토지 거래, 기타 융자금의 규모와 현재 상환하고 있는 금액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구조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전·월세, 하숙 등 세 들어 사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계약형태와 보증금, 계약기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주택이 발달하여 HRS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주택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을 위한 주택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실 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만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에서는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의 이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집의 구조에 대한 조사는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주택 상태, 몇 층에 사는지, 부엌이 있는지, 방의 개수, 엘리베이터와 집안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쉬울지 아니면 어려울지에 대해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을 가진 집을 제외한 또 다른 집에 대해 조사한 항목이 있다. 이집에 대한 조사항목은 집의 소유형태, 소유권, 집의 현재가치, 명의, 언제 구입했는지 등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조사항목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앞으로 이 집에서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10. 가족구조 및 사회적 관계

가족구조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영역은 고령자의 가족구조 및 사회적 연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령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고, 이 외에 고령자의 사회적인 관계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들도 포함된다.

고령자의 자녀와 관련한 문항들은 자녀의 결혼상태, 주택소유 여부, 결혼상태, 거주지역의 근접성 등의 기본정보와 연령, 학력, 재정적 기여도, 근로활동, 동거여부, 소득, 자녀수 등과 같은 개인별 특성 및 손자녀, 증손자녀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한다. 손자녀와 관련된 질문들은 손자녀에 대한 보살핌과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되며 손자녀 보살핌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도 조사한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의 자녀에 대한 이전 항목도 포함된다.

부모와 관련된 항목은 생존과 사망으로 구분하여, 생존 부모의 경우 연령, 일상생활도움여부(ADL), 치매 등을 확인하고, 사망한 부모의 경우 사망 연령, 사망 원인, 사망시보호시설 입소 여부 등을 질문한다.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 재정적 상태, 조사대상자와 부모와의 근접성, 접촉빈도 등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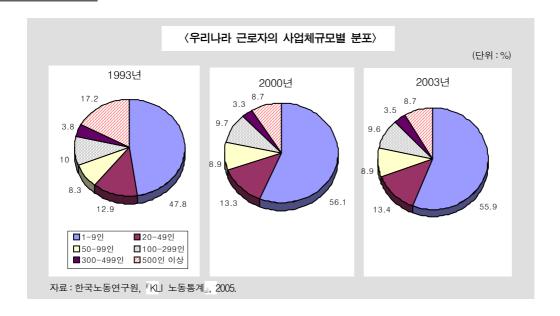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형제·자매의 수와 결혼상태, 연령, 학력, 재정상태, 근로활동 상태, 가족사항 등의 개인별 특성과 부모에 대한 이전 혹은 지원상태를 구체적으로 질 문한다.

이 외에 부모님의 인척,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부모의 인척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와 동일한 문항들을 확인하고,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 등 사회적인 관계망과 배우 자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들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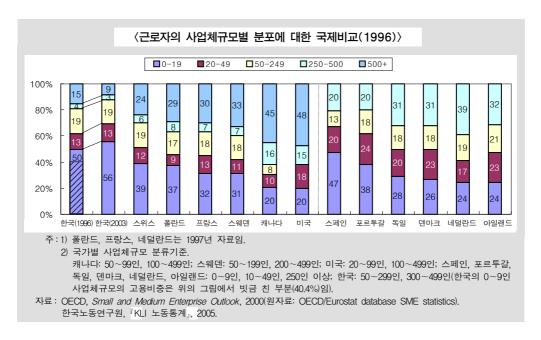
IV. 맺음말

이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 및 설문지는 초고가 완성되는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설문지 초고를 작성한 후,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 보완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은 이미 구축된 외국의 고령자패널조사를 많이 참고하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부터는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적 ·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



- 우리나라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중소기업 고용이 급증하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1993년의 경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17.2%였던 것이 IMF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8.7%로 그 비중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2003 년도까지 큰 변화 없이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1993년 47.8%에서 2000년에 56.1%, 2003년 55.9%로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50~300인 이하 중견기업의 고용비중은 20%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현재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체 고용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인 미만을 소규모 사업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8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49.6%로 가장 높았음. 이는 미국(19.5%)과 캐나다(20.3%) 등의 북미 국가에 비해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이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 10인 미만을 소규모 사업체 기준으로 적 용하는 유럽 6개 국가들과 비교해도 스페인(47.0%)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체 고용비중이 높음.
 - 대기업 고용비중의 경우,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대략적인 국가간의 고용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음. 500인 이상 사업체규모로 비교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의 7개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고용비중 (15.4%)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50인 이상 사업체규모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등의 유럽 국가들의 고용비중은 네덜란드(39.2%)가 가장 높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약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19.3%이므로 250인 이상 기준으로 확장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는 다소 대기업 고용비중이 클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 고용비중(2003년 300인 이상 12.2%)이 더욱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들과의대기업 고용비중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임. ■■

주요 노동동향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 2005년 1/4분기 생산부진, 소비 및 투자 소폭 증가
- 200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조업일수 감소, 담배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성장에 그침. 전년동기 성장률 5.3%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름.
 - 제조업 부문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및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호조로 2.2% 증가하였음.
 - 소비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 투자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하였음.
- 2005년 3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8%,
 4.3%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1.6% 증가. 도소
 매 판매는 1.3% 증가, 설비투자도 2.2% 증가하였음
 (표 1 참조).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의 증가(2005년 2월의 7.3% 감소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은 200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 율(1.6%)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과 오락·

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의 감소를 제외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9개 업종에서 증가(그림 2 참조).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대형할인점, 무점포 판매 등에서 크게 증가),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업에서 모두 증가하여 1.3% 증가(1/4분기로는 1.1% 감소추세)

〈표 1〉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	003	,			2004			200	05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3월	분기	분기	분기	분기p	3월p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1.6	12.7	11.4	6.7	3.8	4.8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2.0	13.2	11.6	7.0	3.5	4.6
생산	출 하	10.8	4.4	2.8	2.5	6.7	10.0	10.9	10.8	10.1	5.8	3.4	4.3
8.7	수 출	12.2	7.3	9.9	11.2	17.6	21.9	21.4	23.4	20.4	15.0	10.8	1.9
	내 수	10.0	2.8	-0.7	-2.1	0.9	3.7	5.0	3.8	4.1	0.3	-1.3	0.1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2.5	0.9	-0.5	-0.2	0.7	1.6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0.8	-0.6	-1.1	-1.4	-1.1	1.3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7.7	3.2	3.8	0.1	4.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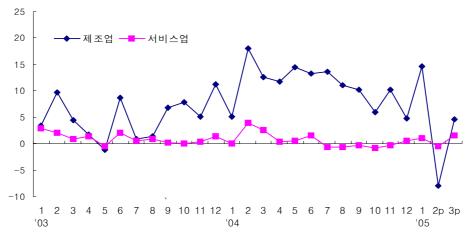
주: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 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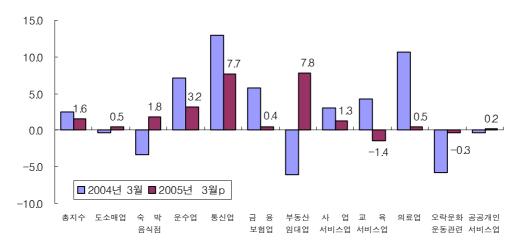
주: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통계청, '2005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5. 4.

_____, 『2005년 3월 및 1/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5.

- 설비투자 부문은 컴퓨터,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됨. 2004년 1/4분기 이후 설비투자 부문의 증가세 지속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또한 전월보다 소폭(0.4%포인트)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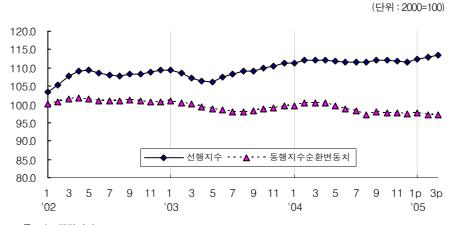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76_노동리뷰

고용 동향

-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세 지속, 고용률 감소
- 2005년 4월중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10천명(1.3%)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
 - 2005년 1월 이후 전년동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75.0%), 여성(50.3%) 각각 0.1%포인트씩 하락
- 2005년 4월중 취업자는 22,9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2천명(1.2%)이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취업자는 13,3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천명(1.2%), 여성취업자 는 9,5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1.1%) 증가
 - 전체 취업자 증감률이 2005년 2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50~59세의 증가세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39세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그림 4참조)
- 2005년 4월중 고용률은 60.1%로 공급(참가율)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0.1%포 인트 감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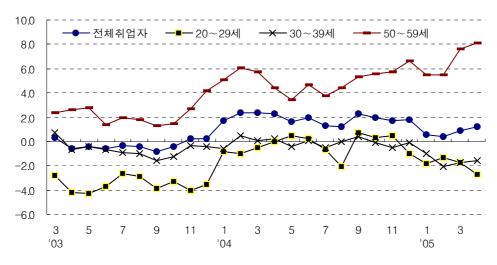
	(211-28, 70)											
			2003			2004				20	05	
			4/4분기	1/4분기	0/4 브 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4七/1	1/4正/1	시4판기	4월	3/4 <u>七</u> 기	4/4七/1	1/4正/1	2월	3월	4월
경 제	활 동 인	! 구	23,119 (0.6)	22,982 (2.4)	23,531 (2.1)	23,482 (2.5)	23,434 (1.7)	23,534 (1.8)	23,534 (0.8)	23,011 (0.5)	23,483 (1.0)	23,791 (1.3)
참	가	율	61.7	61.2	62.5	62.4	62.0	62.2	60.9	60.5	61.6	62.3
취	업	자	22,325 (0.0)	22,104 (2.2)	22,744 (2.0)	22,673 (2.3)	22,647 (1.6)	22,733 (1.8)	22,247 (0.6)	22,086 (0.4)	22,567 (0.9)	22,934 (1.2)
고	용	률	59.6	58.8	60.4	60.2	60.0	60.1	58.5	58.1	59.3	60.1
실	업	자	794	878	787	809	787	802	912	925	907	857
실	업	률	3.4	3.8	3.3	3.4	3.4	3.4	3.9	4.0	3.9	3.6
비경	제 활동 연	<u></u> 구	14,357 (1.8)	14,595 (-1.1)	14,141 (-0.7)	14,157 (-1.3)	14,337 (0.0)	14,313 (-0.3)	14,852 (1.8)	15,000 (2.2)	14,614 (1.8)	14,393 (1.7)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자료: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에 못미치는 취업자의 증가율로 인해 고용률이 감소
- 2005년 4월중 실업자는 8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천명(5.9%)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감소
 - 남성실업자는 대폭 증가하여 527천명(9.4%)인 반면, 여성실업자는 3천명(0.8%)으로 소폭 증가함.
 - 실업률도 남성에서 많이 증가(남성: 3.8%(0.3%포인트), 여성: 3.3%(-0.1%포인트))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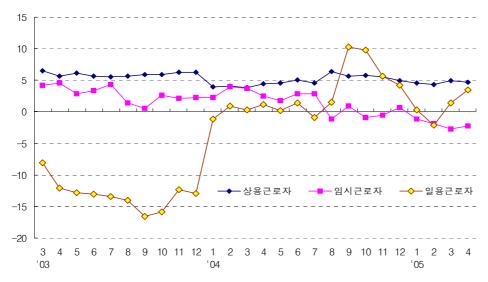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는 14,3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5천명(1.7%) 증가(전월대비 222천명(-1.5%)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 증가
 - ※ 구직단념자 추이: 89천명(2004. 4)→99천명(2004. 11)→105천명(2004. 12)→136천명(2005. 1)→135천명(2005. 2)→109천명(2005. 3)→103천명(2005. 4)
- 2005년 4월에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와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고용상황은 악화
 - 20~30대의 취업자 감소와 일용근로자의 증가, 실업률 상승으로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함.

78_노동리뷰

- 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및 임시근로자의 감소와 취업자가 전년동월에 비하여 1.2%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진전되어 취업자의 고용사 정은 소폭 개선(그림 5 참조).

[그림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5년 4월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7천명, 5.2%), 전기·운수·통신·금융업(68천명, 3.1%)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81천명, -1.4%), 제조업(-52천명, -1.2), 건설업(-17천명, -1.9%) 등에서는 감소함.
 -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률을 보면, 제조업에서 남성 취업자는 32천명(1.1%) 증가 하였으나, 여성은 84천명(-5.5%) 감소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에 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가 많이 증가(남성: 66천명(1.9%), 여성: 271천명 (9.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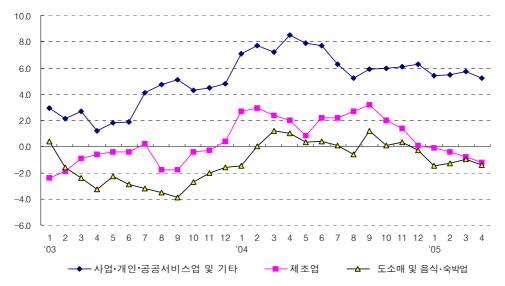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4七/1	1/4七/1	2/4군기	4월	3/4군기	4/4군기	1/4正/1	2월	3월	4월
전 산 업	22,325 (0.0)	22,104 (2.2)	22,744 (2.0)	22,673 (2.3)	22,647	22,733 (1.8)	22,247 (0.6)	22,086 (0.4)	22,576 (0.9)	22,934 (1.2)
농림어업	1,882	1,609	1,967	1,932	1,933	1,789	1,525	1,462	1,708	1,935
	(-8.0)	(-5.3)	(-7.5)	(-7.0)	(-7.5)	(-4.9)	(-5.2)	(-6.0)	(-4.1)	(0.2)
제조업	4,246	4,278	4,308	4,323	4,278	4,296	4,260	4,255	4,274	4,271
	(-0.1)	(2.6)	(1.7)	(2.0)	(2.7)	(1.2)	(-0.4)	(-0.4)	(-0.8)	(-1.2)
건설업	1,854	1,762	1,864	1,869	1,790	1,864	1,692	1,632	1,759	1,851
	(2.3)	(1.6)	(0.6)	(1.3)	(-1.7)	(0.6)	(-4.0)	(-5.6)	(-3.2)	(-0.9)
도소매 및 음식·숙	5,851	5,912	5,866	5,873	5,819	5,853	5,835	5,839	5,817	5,792
박업	(-2.1)	(-0.1)	(0.5)	(1.0)	(0.2)	(0.0)	(-1.3)	(-1.3)	(-1.0)	(-1.4)
사업·개인·공공서	6,322	6,362	6,542	6,495	6,617	6,711	6,714	6,695	6,780	6,832
비스업 및 기타	(4.5)	(7.3)	(8.0)	(8.5)	(5.8)	(6.1)	(5.5)	(5.5)	(5.7)	(5.2)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53 (-1.0)	2,163 (-0.2)	2,182 (0.2)	2,165 (-0.7)	2,197 (2.6)	2,205 (2.4)	2,202 (1.8)	2,186 (1.0)	2,220 (2.9)	2,232 (3.1)

-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고 계절적 일자리 증가로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참조).

- ◈ 상용근로자 증가,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
- 2005년 4월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675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9천명(-0.6%)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는 15,2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1천명(2.1%) 증가
 -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소폭 상승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2004년 4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상용근로자(354천명, 4.7%)이며, 비임금근로자 감소를 주도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86천명, -5.3%)임.
 -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와 상용직 중심으로의 이동은 좋은 현상이나 감소된 인력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축적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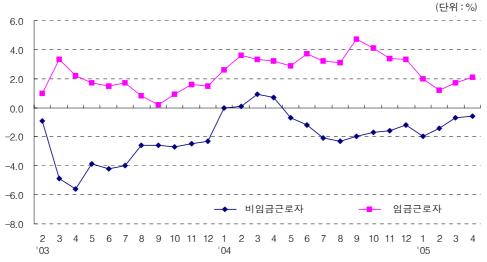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3	2004						20	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4正/1	1/4正/1	2/4군기	4월	3/4군기	4/4正/1	1/4七/1	2월	3월	4월
전 체	22,325 (0.0)	22,104 (2.2)	22,744 (2.0)	22,673 (2.3)	22,647 (1.6)	22,733 (1.8)	22,247 (0.6)	22,086 (0.4)	22,576 (0.9)	22,934 (1.2)
비임금근로자	7,748	7,490	7,762	7,724	7,769	7,631	7,391	7,355	7,534	7,675
	(-2.5)	(0.3)	(-0.4)	(0.7)	(-2.1)	(-1.5)	(-1.3)	(-1.4)	(-0.7)	(-0.6)
자영업주	6,122	6,001	6,136	6,113	6,177	6,126	6,022	6,014	6,088	6,149
	(-0.9)	(2.3)	(1.9)	(2.8)	(0.1)	(0.2)	(0.4)	(0.5)	(0.5)	(0.6)
무급가족종사자	1,637	1,489	1,626	1,612	1,593	1,505	1,368	1,341	1,447	1,526
	(-7.8)	(-7.0)	(-8.2)	(-6.6)	(-9.9)	(-8.0)	(-8.1)	(-9.1)	(-5.4)	(-5.3)
임금근로자	14,577	14,614	14,983	14,948	14,878	15,102	14,856	14,731	15,041	15,260
	(1.4)	(3.2)	(3.3)	(3.2)	(3.6)	(3.6)	(1.7)	(1.2)	(1.7)	(2.1)
상용근로자	7,383	7,460	7,586	7,553	7,671	7,781	7,803	7,774	7,868	7,907
	(6.1)	(4.0)	(4.6)	(4.4)	(5.5)	(5.4)	(4.9)	(4.3)	(4.9)	(4.7)
임시근로자	5,039	5,067	5,199	5,203	5,035	5,026	4,968	4,947	5,010	5,084
	(2.3)	(3.3)	(2.3)	(2.5)	(0.9)	(-0.3)	(-2.0)	(-1.9)	(-2.7)	(-2.3)
일용근로자	2,155 (-13.8)	2,087 (0.0)	2,197 (0.9)	2,192 (1.1)	2,172 (3.5)	2,295 (6.5)	2,085 (-0.1)	2,010 (-2.1)	2,163 (1.4)	2,268 (3.5)
36시간 미만	2,370	2,587	2,509	2,905	2,687	2,501	2,757	3,098	2,907	2,521
	(-1.0)	(0.8)	(27.9)	(40.1)	(-10.0)	(5.5)	(6.7)	(16.2)	(20.6)	(-13.2)
36시간 이상	19,730 (-1.0)	19,125 (0.8)	20,004 (-0.8)	19,539 (-1.9)	19,563 (3.6)	20,000 (1.4)	18,783 (-1.8)	18,524 (-2.2)	19,404 (-1.6)	20,181 (3.3)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통계청, 1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2005년 4월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52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84천명(-13.2%)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81천명으로 643천명(3.3%) 증가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주: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률 증가, 고졸 이하 저학력층 실업률 증가세 지속
- 2005년 4월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연령계층에서 소폭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 18천명, 고졸 24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7천 명 감소(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
- 전체 실업자 857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4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 천명(-14.7%)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08천명으로 57천명(7.5%) 증가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53천명(37천명, 6.0%)으로, 이직한
 지 1년 이상된 전직실업자는 156천명(20천명, 14.3%)으로 증가
 - 신규실업자(5.7%)에 비해 전직실업자(94.2%)의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시사

※ 전직실업자 비중: 93.0%(2004. 4) → 94.2%(2005. 4)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천명,%)

	2003		2004					20	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2/4분기 4월
전 체	794(3.4)	878(3.8)	787(3.3)	809(3.4)	787(3.4)	802(3.4)	912(3.9)	925(4.0)	907(3.9)	857(3.6)
15~29세	394(8.0)	448(8.9)	383(7.7)	376(7.6)	355(7.2)	378(7.7)	423(8.6)	425(8.6)	413(8.5)	375(7.8)
30~39세	188(3.0)	181(2.9)	176(2.7)	188(2.9)	192(3.0)	193(3.0)	212(3.4)	218(3.5)	205(3.3)	205(3.2)
40~49세	129(2.1)	151(2.4)	129(2.0)	140(2.2)	141(2.2)	134(2.1)	167(2.6)	170(2.7)	171(2.7)	159(2.5)
50~59세	61(1.8)	73(2.2)	74(2.2)	79(2.3)	73(2.1)	75(2.1)	86(2.5)	89(2.6)	90(2.5)	92(2.5)
60세이상	23(1.0)	25(1.2)	25(1.1)	26(1.1)	25(1.1)	21(0.9)	25(1.2)	24(1.1)	28(1.2)	27(1.1)
중졸이하	132(2.2)	144(2.5)	132(2.2)	130(2.2)	141(2.4)	136(2.3)	155(2.8)	149(2.8)	153(2.7)	47(2.5)
고 졸	438(4.3)	466(4.6)	398(3.9)	401(4.0)	417(4.1)	457(4.5)	495(4.9)	497(4.9)	468(4.6)	424(4.2)
대졸이상	224(3.2)	268(3.8)	257(3.5)	279(3.8)	229(3.1)	209(2.8)	263(3.5)	279(3.7)	·286(3.8)	286(3.7)
신규실업자	59	82	49	57	29	37	56	57	50	49
전직실업자	736	796	738	752	758	764	857	869	857	808
1년 이상	121	146	131	136	120	134	163	162	177	156
1년 미만	615	650	607	616	638	631	694	707	681	653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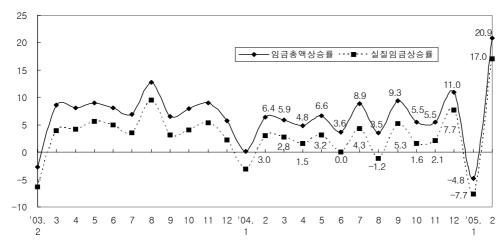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임금 동향

- ◈ 2005년 2월 임금상승률, 전년동기에 비해 대폭 상승
- 2005년 2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24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9%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6.4%보다 14.5%포인트 높은 수치임.
 - 전년보다 매우 높은 임금상승률은 설 보너스 지급시기가 2004년에는 1월이었으나 2004년에는 2월로 늦춰짐에 따라 특별급여의 상승률이 대폭(78.4%) 상승한 데기인
 - 1~2월 임금총액은 2,39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상승
- 실질임금은 17.0% 상승
 - 2005년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17.0% 상승함.
 - 1~2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함으로써 2월 실질임금 17.0%보다
 는 낮은 3.8%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84_노동리뷰

〈표 6〉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	분기	1/4	분기	1~2월
			1/4世/1	<i>식</i> 4군기	3/4군기		12월	1월	2월	1.~2월
임 금 총 액	2,127	2,255	2,185	2,115	2,324	2,399	3,007	2,273	2,524	2,398
	(9.2)	(6.0)	(3.9)	(5.0)	(7.3)	(7.7)	(11.0)	(-4.8)	(20.9)	(7.1)
정 액 급 여	1,532	1,636	1,599	1,613	1,643	1,690	1,757	1,752	1,701	1,726
	(8.8)	(6.8)	(7.0)	(6.6)	(6.9)	(6.7)	(6.4)	(8.2)	(8.3)	(8.2)
초 과 급 여	135	137	132	138	137	143	140	140	138	139
	(7.3)	(1.7)	(3.1)	(2.5)	(2.5)	(-1.0)	(-2.1)	(6.9)	(3.7)	(5.3)
특 별 급 여	460	482	455	364	544	566	1,110	382	684	533
	(11.4)	(4.6)	(-5.4)	(-0.5)	(9.8)	(13.3)	(21.3)	(-40.2)	(78.4)	(4.2)
실질임금지수	115.2	117.9	115.5	111.1	120.5	124.5	156.3	117.3	129.5	123.3
	(5.5)	(2.3)	(0.6)	(1.6)	(2.9)	(4.1)	(7.7)	(-7.7)	(17.0)	(3.8)
소비자물가지수	110.7	114.7	113.4	114.2	115.6	115.5	115.4	116.2	116.9	116.6
	(3.6)	(3.6)	(3.3)	(3.3)	(4.3)	(3.4)	(3.0)	(3.1)	(3.3)	(3.2)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2005년 4월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7%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4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6%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5.3%보다 0.7%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전년동기의 5.4%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2.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7%에 비해 소폭 상승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4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554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11.9%)보다 낮은 8.9%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9.0%로 6,024개소 중 544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10개소가 타결되어 4.9%의 진도율을 기록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4월 30일 현재)

(단위:개소,%)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5,909)	554(706)	8.9(12.0)	4.6(5.3)
민간부문	6,024(5,727)	544(693)	9.0(12.1)	4.6(5.4)
공공부문	204(182)	10(13)	4.9(7.1)	2.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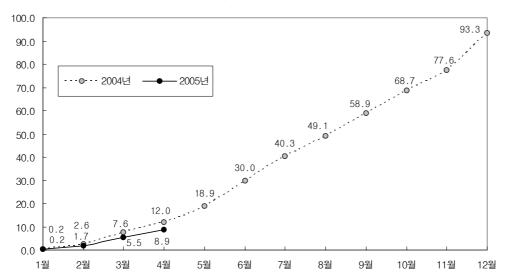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주요노동동향

[그림 9]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주요 노동동향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 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소폭 증가
- 2005년 5월 23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함(표 1 참조).
 - 분규참가자수는 12,832명으로 전년동기의 30,235 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분규발생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는 각각 39건, 123,236일로 전년동기보다 소 폭 증가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개소, 명, 일)

						2003. 5. 23	2004. 5. 23	2005. 5. 23
노	사분	규동	발생	건 =	는(개소)	79	36	39
분	규	참	가	자	수(명)	12,796	30,235	12,832
근	로	손	실	일	수(일)	109,209	104,348	123,236

주: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노동부.

노동정책 동향

-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노동부는 4월 28일, 여성고용 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

- 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6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하게 되며, 여성고용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 목표 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이행하게 됨.
-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 이 제도의 조기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전문 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운영할 계획임.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 노사정, 비정규직 법안관련 교섭 결렬
- 지난 4월 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노사정간 비정규직 법안 관련 교섭이 결렬됨.
 - 민주노총의 교섭참여를 계기로 노사정간 본격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처리에 실패
- 경영계, 비정규직 문제의 시장을 통한 해결 주장
 - 경총은 결렬 이후 성명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흡수를 위한 중요한 통로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겨두 어야 함을 주장함.
 - 또한 앞으로 경영계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시정노력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규직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안정에 협력해야 함을 촉구함.
- 노동계, 향후 지속적 협상과 함께 차별철폐운동 전개 선언
 - 양대노총은 결렬 이후 위원장단 단식농성을 풀면서, 협상의 평가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원칙과 향후 계획이 담긴 성명을 발표함.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

금 원칙을 통한 차별해소,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제시함.

- 또한 향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협상의 지속적 전개와 함께 6월 중 비정규 권리입법화를 위한 대규모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곧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는 데다가 이번 협상에 직접 참가했던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 현직 지도급 인사가 비리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개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는 등 향후 노사정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 비정규직 관련 장기분규 사업장 노사정 대립 발생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파업 일단락
 - 2005년 3월 17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지 역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중 3인이 4월 30일부터 SK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분규가 장기화·격화됨.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 서울 등지의 집회과정에서 울 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 발생
 - 5월 27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조인정 등을 포함하는 1차 합의 도출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분규 장기화
 - 도급계약 해지(2004. 12. 31) 이후 원직복직·고용보장 이행 및 원청회사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집회, 농성을 반복 중 5월 11일부터 부지회장 등 2인이 무기한 천막 단식농성 돌입
 - ※ 2004년 10월 22일 사내하청 노조설립 후,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진행하자 하청회사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원청은 4개 하청회사와의 도 급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지원을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중부권 노동자 대회에서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분규가 장기화·격화됨.
- 경총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사분규 관련 성명전 전개
 - 경총은 사내하청 노조의 분규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
 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완화를 거듭 주장함.
 - 민주노총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함께 향후 임단협 일정과 결합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힘.

주요노동일지

(2005. 4. 25~5. 22)

			(2005, 4, 25~5, 22)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4. 26		·비정규노동법공대위: 비정규노 동법 개악저지와 권리보장 행 동의 날 집회 개최	
4.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노조: 파업 계속(3. 21~) 중 일시적 업무복귀 결정
5. 1		·양대노총: 각각 세계노동절 기 념대회 개최	
5. 2	· 한국노동법학회 등: 동아시 아 노동문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5. 9		·양대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촉구 공동성명 발표	
5. 10		· 경인지역 노사정: 지역경제 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 동결의문 채택	
5. 12		·경기지역 노사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한 노사 정 공동선언문 채택	
5. 13		·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관련 입장 발표 · 민주노총: 울산건설플랜트·청 주하이닉스 등 비정규 현안관 련 기자회견 · 서울지역 노사정: 노사관계 발 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캐리어(주)노조: 임단협 관련 전면파업(5, 9~)중 잠정합의
5. 17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건설 플랜트노조 파업승리를 위한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	
5. 18		·민주노총: GS칼텍스 노조파업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SK울 산공장 정유탑 고공농성(5. 1~) 중 경찰진압
5. 20	· 한국노동연구원: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 회' 개최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중부권 노동자 대회 개최	

〈표 1-1〉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0.11.67)									3 1 11 1 797
		국내총생	국민총소	7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신	<u> </u>	최 종	총 고 정
		산(GDP)	독(GNI)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1)	소비지출	자본형성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523,034.7 487,183.5 533,399.3 578,664.5 600,865.9 642,748.1 662,654.8 693,424.0	544,131.5 499,004.0 545,970.1 576,160.0 592,408.5 633,842.1 645,787.6 670,056.8	115,274.3 106,173.0 129,287.5 151,243.0 154,503.3 166,242.9 175,417.0 195,410.4	53,667.3 48,295.2 44,458.6 42,926.7 45,279.0 46,529.4 50,548.7 51,410.5	10,778.6 10,742.0 11,708.4 13,212.5 14,169.1 15,258.0 15,981.3 16,954.4	257,324,0 247,182,1 263,424,6 279,605,0 293,128,9 316,104,8 321,011,9 325,120,4	363,911.2 325,361.8 357,016.3 382,398.2 401,191.4 431,484.2 430,077.0 430,769.0	192,033.8 147,991.7 160,336.3 179,907.7 179,576.3 191,464.6 199,047.9 202,927.5
실 질 금 액	2000. 2/4 3/4 4/4 2001. 1/4 2/4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2005. 1/4	144,171.4 144,350.1 156,759.7 138,047.3 149,503.6 149,311.5 164,003.6 147,076.1 159,990.3 159,407.1 176,274.6 152,625.0 163,536.1 163,003.9 183,489.9 160,658.2 172,588.5 170,629.1 189,548.2 164,987.7	142,942.8 143,441.3 155,274.2 136,026.1 146,555.5 147,117.0 162,710.0 145,751.7 156,554.3 157,215.8 174,320.2 147,451.2 158,724.4 159,972.0 179,640.0 154,399.5 166,220.0 165,752.0 183,685.2	37,838.2 38,088.3 39,207.9 37,329.3 39,382.8 38,085.9 39,705.2 39,253.9 41,828.8 40,909.0 44,251.1 41,523.2 43,222.9 42,624.0 48,046.9 46,585.1 49,155.5 47,757.9 51,911.8 49,064.4	11,681.4 11,338.5 12,238.6 7,800.4 11,828.2 12,316.5 13,333.9 8,360.7 12,145.1 11,724.1 14,299.5 9,055.0 13,214.4 12,652.3 15,627.1 9,501.5 13,699.3 12,926.9 15,282.8 9,213.3	3,200.3 3,320.7 3,222.7 4,000.4 3,326.2 3,437.0 3,405.5 4,190.9 3,567.2 3,771.1 3,728.8 4,490.1 3,868.7 3,790.7 3,831.9 4,773.0 4,123.7 4,070.9 3,997.8 5,075.6	69,542.9 69,825.0 72,334.8 70,831.8 72,580.0 73,284.1 76,432.9 75,744.3 78,628.4 79,708.3 82,023.9 77,205.0 79,210.4 80,622.2 83,974.3 78,372.3 80,566.9 81,674.4 84,508.1 80,103.7	93,900.6 94,829.4 99,709.9 96,068.8 97,856.4 100,245.4 107,020.9 105,129.6 106,140.3 112,652.0 106,432.5 105,490.4 106,526.2 111,627.9 105,849.7 106,437.4 112,604.7 107,655.2	47,819.5 46,053.3 47,895.1 36,714.4 46,148.2 50,871.6 39,528.2 49,501.8 46,947.6 55,487.0 41,374.9 51,558.9 48,225.6 57,888.6 42,283.4 53,792.9 49,680.1 57,171.1 42,305.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7 -6.9 9.5 8.5 3.8 7.0 3.1 4.6	2.7 -8.3 9.4 5.5 2.8 7.0 1.9 3.8	4.9 -7.9 21.8 17.0 2.2 7.6 5.5 11.4	2.8 -10.0 -7.9 -3.4 5.5 2.8 8.6 1.7	10.0 -0.3 9.0 12.8 7.2 7.7 4.7 6.2	5.1 -3.9 6.6 6.1 4.8 7.8 1.6 1.3	3.2 -10.6 9.7 7.1 4.9 7.6 -0.3 0.2	-2.3 -22.9 8.3 12.2 -0.2 6.6 4.0 1.9
성 장	2000. 2/4 3/4 4/4 2001. 1/4 2/4 3/4 4/4 2002. 1/4	9.4 8.2 4.3 3.5 3.7 3.4 4.6 6.5	6.1 6.1 1.0 1.1 2.5 2.6 4.8 7.1	17.7 19.2 8.1 3.4 4.1 0.0 1.3 5.2	-3.1 -2.2 -2.7 1.7 1.3 8.6 8.9 7.2	14.3 11.8 7.6 15.3 3.9 3.5 5.7 4.8	6.7 4.4 4.5 4.3 4.4 5.0 5.7 6.9	8.7 5.8 4.0 2.2 4.2 5.7 7.3 9.4	14.8 10.8 3.5 -3.7 -3.5 -0.5 6.2 7.7
률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2005. 1/4	7.0 6.8 7.5 3.8 2.2 2.3 4.1 5.3 5.5 4.7 3.3	6.8 6.9 7.1 1.2 1.4 1.8 3.1 4.7 4.7 3.6 2.3	6.2 7.4 11.4 5.8 3.3 4.2 8.6 12.2 13.7 12.0 8.0 5.3	2.7 -4.8 7.2 8.3 8.8 7.9 9.3 4.9 3.7 2.2 -2.2	7.2 9.7 9.5 7.1 8.5 0.5 2.8 6.3 6.6 7.4 4.3 6.3	8.3 8.8 7.3 1.9 0.7 1.1 2.4 1.5 1.7 1.3 0.6 2.2	8.5 7.3 5.3 1.2 -0.6 -1.0 -0.9 -0.5 0.4 -0.1 0.9 1.7	7.3 2.4 9.1 4.7 4.2 2.7 4.3 2.2 4.3 3.0 -1.2 0.1

주:1)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1-2〉생산지수, 대외거래, 환율 및 물가지수

(2000=100.0) (단위:백만달러, 원)

(2000 100.0)							\ <u></u>	1 – – 1, –
	생신	·지수		국제수지		대미 기준환 율	물기	-지수
	산업	서비스	경상수지	수출(FOB)	수입(CIF)	평균자료	생산자	소비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85.6 100.0 100.7 108.8 114.2 126.1	91.9 100.0 106.1 116.1 117.2 117.9	24,521.9 12,250.8 8,032.6 5,393.9 11,949.5 27,612.8	143,685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119,752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463	1,189.5 1,130.6 1,290.8 1,251.2 1,191.9 1,144.9	98.0 100.0 99.5 99.2 101.4 107.6	97.8 100.0 104.1 106.9 110.7 114.7
2001.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104.4 103.6 109.0 106.2 116.1 109.9 112.4 125.0 122.3 126.7 121.9 133.4	111.4 111.2 116.9 115.9 120.3 113.3 118.0 116.5 121.0 115.7 119.1 115.9 120.8	442.2 1,400.6 1,569.7 547.2 1,876.4 -1,556.4 2,572.9 3,669.7 7,263.3 6,130.5 7,030.4 7,098.4 7,353.5	36,349 35,656 40,252 41,255 45,307 43,036 46,053 47,828 56,900 59,299 63,975 61,634 68,937	34,342 33,788 37,192 38,884 42,262 44,223 41,711 42,971 49,922 52,798 55,270 54,709 61,688	1,291.8 1,319.6 1,270.7 1,196.3 1,221.0 1,201.1 1,209.8 1,175.8 1,181.3 1,171.9 1,161.9 1,155.2 1,094.0	98.1 98.3 99.7 99.2 99.7 101.2 101.0 101.1 102.3 105.5 107.3 108.5 108.9	104.5 105.5 106.9 107.4 107.9 109.8 110.5 110.8 111.7 113.4 114.2 115.6 115.5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105.0 116.9 116.5 115.0 109.9 103.3 116.4 113.6 111.4 112.2 108.1 108.0 112.0 125.8 122.0 127.3 115.1 121.3 130.5	117.4 118.9 118.4 123.6 113.7 107.5 118.7 118.4 118.0 117.7 116.9 117.6 119.0 118.8 125.3 113.7 111.7	315.4 1,470.9 1,137.8 -732.3 -467.8 32.2 -1,120.8 -209.4 1,184.1 1,598.2 345.7 1,231.6 2,092.4 2,518.9 2,858.3 1,886.1 2,338.4 2,881.4 910.7	13,901 15,085 15,197 15,026 14,320 13,337 15,379 15,721 14,676 15,656 15,432 15,375 17,021 18,930 18,242 19,729 18,987 19,137 21,175	12,992 13,817 13,993 14,452 14,495 13,858 15,870 14,759 13,524 13,428 14,898 13,541 14,531 16,537 15,761 17,625 16,209 17,469 19,120	1,208.5 1,241.1 1,211.9 1,208.9 1,179.3 1,191.2 1,232.4 1,232.8 1,194.0 1,181.6 1,178.4 1,166.2 1,166.3 1,184.9 1,193.0 1,184.3 1,166.7 1,166.3	99.4 99.6 99.8 99.8 100.5 101.1 102.1 101.5 101.0 100.5 101.7 101.1 101.5 101.8 102.2 102.9 104.3 105.6 106.6	108.0 107.7 107.8 108.3 109.0 109.6 110.7 110.5 110.2 110.1 110.6 111.7 111.5 112.0 112.7 113.2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 3	126.5 126.9 126.7 122.7 119.8 123.2 133.1 134.1 133.1 131.4 112.4 136.7	118.9 118.7 119.6 116.2 114.3 117.3 118.1 118.3 126.1 114.6 111.0 123.6	1,142.5 3,708.4 2,179.5 3,246.6 1,039.0 2,812.8 2,418.6 2,939.7 1,995.2 3,866.2 1,007.3 1,221.1	21,483 20,834 21,657 21,004 19,799 20,831 22,663 23,077 23,197 22,440 20,406 24,034 23,147	18,830 17,895 18,544 18,390 18,124 18,193 20,408 20,312 20,968 19,304 18,288 23,536 21,185	1,150.9 1,177.4 1,158.7 1,157.7 1,159.0 1,148.0 1,144.0 1,091.2 1,050.9 1,038.2 1,022.4 1,077.5 1,010.9	107.1 107.4 107.3 107.7 108.7 109.1 109.2 109.2 108.4 108.6 109.0 109.5 110.2	114.3 114.2 114.2 114.9 115.9 115.9 115.2 115.4 116.2 116.9 117.8

주:1)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집계(소유권 이전기준), 수출·수입은 통관기준(한국무역협회집계). 2) 대미 기주화육은 평균자료인

²⁾ 대미 기준환율은 평균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생산자물가 동향」. 통계청 KOSIS, 산업활동 DB.,「소비자물가 동향」.

〈표 2-1〉 주요 노동시장지표

(단위:천명, 천원, 시간, %)

	생산 가능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룰	임금근로자 비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5,347 35,757 36,186 36,579 36,963 37,340 37,717	21,428 21,666 22,069 22,417 22,877 22,916 23,370	60.6 60.6 61.0 61.3 61.9 61.4 62.0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1,490 1,374 913 845 708 777 813	7.0 6.3 4.1 3.8 3.1 3.4 3.5	56.4 56.7 58.5 59.0 60.0 59.3 59.8	61.7 62.4 63.2 63.3 64.0 65.1 66.0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2005. 1/4	36,824 36,919 37,012 37,097 37,193 37,297 37,391 37,476 37,577 37,672 37,771 37,848 38,010	22,339 23,112 23,067 22,989 22,439 23,055 23,050 23,119 22,982 23,531 23,434 23,534 23,159	60.7 62.6 62.3 62.0 60.3 61.8 61.6 61.7 61.2 62.5 62.0 62.0 60.9	21,511 22,423 22,416 22,326 21,633 22,303 22,295 22,325 22,104 22,744 22,647 22,733 22,247	829 689 652 663 806 751 756 794 878 787 787 802 912	3.7 3.0 2.8 2.9 3.6 3.3 3.4 3.8 3.3 3.4 3.4 3.9	58.4 60.7 60.6 60.2 58.2 59.8 59.6 58.8 60.4 60.0 60.1 58.5	64.5 63.6 63.5 64.4 65.5 65.1 64.4 65.3 66.1 65.9 65.7 66.4 66.8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37,038 37,072 37,094 37,124 37,161 37,193 37,226 37,300 37,330 37,366 37,390 37,418 37,448 37,475 37,506 37,506 37,546	23,095 23,177 23,037 22,754 22,352 22,320 22,644 22,912 23,114 23,138 23,238 22,883 23,031 23,218 23,218 22,922 22,790	62.4 62.5 62.1 61.3 60.1 60.0 60.8 61.5 62.0 62.2 61.2 61.6 62.0 62.0 62.0 62.0	22,490 22,538 22,389 22,052 21,562 21,498 21,837 22,156 22,370 22,383 22,456 22,126 22,301 22,452 22,452 22,452 22,452 22,452 22,452 22,453 21,936	605 639 648 702 789 822 807 756 744 755 781 756 730 765 792 825 854	2.6 2.8 2.8 3.1 3.5 3.7 3.6 3.3 3.2 3.3 3.4 3.3 3.2 3.3 3.2	60.7 60.8 60.4 59.4 58.0 57.8 58.7 59.5 60.0 60.1 59.2 59.6 60.0 59.8 58.9	63.6 63.7 64.3 65.3 65.6 65.3 65.6 65.4 64.9 64.9 65.0 63.9 64.2 64.5 65.2 66.2 66.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 3	37,577 37,608 37,639 37,670 37,707 37,744 37,771 37,798 37,825 37,848 37,870 37,923 38,011 38,097 38,184	22,906 23,249 2,3482 23,527 23,585 23,564 23,182 23,556 23,673 23,581 23,349 22,982 23,011 23,483 23,791	61.0 61.8 62.4 62.5 62.5 62.4 61.4 62.3 62.6 62.3 61.7 60.6 60.5 61.6 62.3	22,005 22,371 22,673 22,738 22,822 22,750 22,382 22,809 22,901 22,802 22,495 22,078 22,086 22,576 22,93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907 857	3.9 3.8 3.4 3.3 3.2 3.5 3.5 3.2 3.3 3.7 3.9 4.0 3.9 3.6	58.6 59.5 60.2 60.4 60.5 60.3 59.3 60.5 60.3 59.4 58.2 58.1 59.2 60.1	66.1 66.1 65.9 65.7 66.0 66.2 65.2 65.7 65.8 66.3 67.2 67.0 66.7 66.6 66.5

주: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²⁾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2〉경제활동참가율(성별·연령대별)

(단위 : %)

												(11.70)
			남	자					여	자		
	전 체	15~	30~	40~	50~	60세	전 체	15~	30~	40~	50~	60세
		29세	39세	49세	59세	이상		29세	39세	49세	59세	이상
1998	75.1	51.2	96.3	94.8	87.2	51.6	47.1	41.7	53.2	62.7	53.4	27.9
1999 2000	74.4 74.2	50.5 50.5	95.7 95.5	93.9 93.6	85.8 84.0	50.7 49.6	47.6 48.6	41.7 43.6	53.7 53.9	63.1 64.1	53.9 53.3	29.5 30.1
2000	74.2	50.0	94.9	93.5	83.4	50.4	49.2	45.2	54.2	63.9	53.8	29.9
2002	74.8	50.3	95.0	93.5	84.7	51.7	49.7	46.4	54.4	63.9	54.2	30.1
2003	74.6	49.5	94.9	93.9	85.4	48.6	48.9	46.8	53.8	62.9	52.6	27.8
2004	74.8	49.7	94.5	93.7	85.5	49.6	49.8	48.4	54.4	64.1	53.1	28.3
2001.3/4	74.7	50.3	95.0	93.8	84.2	52.6	49.7	45.1	53.9	64.0	55.1	32.7
4/4 2002.1/4	74.5 73.7	49.7 50.9	95.1 94.3	94.2 92.7	84.0 81.7	51.4 47.8	49.7 48.4	45.6 46.6	54.7 53.5	64.1 63.0	55.0 51.7	30.5 26.1
2/4	75.7	50.3	95.3	94.0	85.3	53.3	50.7	46.4	55.6	64.6	55.8	32.4
3/4	75.3	50.1	95.1	93.6	85.8	53.6	50.2	46.3	54.5	63.9	55.1	32.1
4/4	75.1	49.6	95.3	93.8	85.8	52.1	49.6	46.3	54.1	64.2	54.1	29.9
2003.1/4	73.9	49.9	94.7	93.5	84.2	45.8	47.5	47.0	53.7	61.3	49.4	23.9
2/4 3/4	74.9 74.7	48.9 49.4	95.3 94.7	94.4 93.9	86.3 85.6	49.6 49.5	49.5 49.3	46.3 47.1	54.6 53.5	63.6 62.7	54.0 53.5	29.3 29.8
4/4	74.9	49.9	95.0	93.8	85.7	49.4	49.2	46.8	53.6	63.8	53.3	28.1
2004.1/4	74.3	50.5	94.6	93.1	83.9	47.1	48.8	48.3	53.7	63.2	51.6	25.2
2/4	75.2	49.5	94.7	94.1	86.1	51.0	50.5	48.3	55.2	64.6	53.8	30.0
3/4 4/4	74.7 75.1	49.1 49.8	94.2 94.3	93.7 94.1	85.6 86.5	50.4 49.9	50.1 50.0	48.7 48.2	54.2 54.5	63.9 64.6	53.1 53.9	29.6 28.3
2005.1/4	73.1	49.5	94.0	92.1	84.0	49.9	48.7	49.1	53.3	63.0	51.8	24.5
2002. 9	75.1	48.9	95.2	93.8	86.4	53.6	50.4	45.6	55.0	64.6	55.3	32.8
10	75.3	49.0	95.4	94.0	86.7	53.9	50.5	45.8	55.0	64.8	55.9	32.6
11	75.2	49.6	95.3	93.9	86.1	52.6	49.8	46.2	54.1	64.1	54.6	30.6
12 2003, 1	74.8 73.8	50.3 50.3	95.1 94.6	93.6 93.2	84.5 83.9	49.8 44.9	48.6	47.0	53.2 53.6	63.6 60.8	51.7 48.9	26.6 23.2
2003. 1	73.8	50.3	94.5	93.4	83.5	45.2	47.3 47.0	47.2 47.3	53.1	60.7	48.3	22.8
3	74.2	49.2	95.0	93.9	85.1	47.2	48.2	46.3	54.3	62.4	50.9	25.7
4	74.7	49.1	95.2	94.2	86.0	48.8	49.1	46.0	54.4	63.4	53.4	28.2
5	75.0	49.0	95.5	94.4	86.5	49.9	49.7	46.1	54.8	64.0	54.3	29.7
6 7	74.9 75.3	48.8 51.0	95.3 95.0	94.5 94.2	86.3 85.7	50.0 49.5	49.8 49.9	46.9 48.4	54.6 54.0	63.5 62.8	54.3 53.9	29.8 29.7
8	74.3	49.1	94.4	93.6	85.2	48.9	48.8	47.1	52.5	61.9	53.0	29.3
9	74.5	48.0	94.7	94.1	85.9	50.1	49.3	45.8	53.8	63.3	53.7	30.5
10	75.0	49.0	95.1	94.1	86.2	51.0	49.7	46.2	53.8	64.2	54.4	30.5
11 12	75.1 74.7	49.7 50.9	94.9 95.0	94.1 93.4	85.9 85.0	50.3 46.8	49.6 48.3	46.5 47.8	54.1 52.8	64.1 63.2	53.9 51.7	29.3 24.7
2004. 1	74.7	51.4	94.3	93.4	83.3	45.3	48.1	48.4	53.0	62.5	50.9	23.5
2	74.0	50.4	94.4	92.9	83.2	46.7	48.6	48.6	53.9	62.9	51.3	24.2
3	74.8	49.6	94.9	93.7	85.2	49.4	49.6	47.9	54.3	64.2	52.4	27.8
4	75.1	49.2	94.8	94.1	86.0	50.9	50.4	47.8	55.4	65.0	53.7	29.8
5 6	75.2 75.3	49.6 49.7	94.6 94.7	94.0 94.1	85.8 86.4	51.1 51.0	50.5 50.5	48.5 48.5	54.9 55.2	64.7 64.2	53.7 53.9	29.9 30.2
7	75.2	50.8	94.3	93.9	85.2	50.4	50.4	49.9	54.4	63.9	53.2	29.2
8	74.2	48.0	94.2	93.3	85.3	49.9	49.2	47.6	53.3	63.0	52.2	29.4
9	74.8	48.4	94.3	93.9	86.2	50.8	50.6	48.5	55.0	64.9	53.8	30.1
10 11	75.3 78.2	49.6	94.2 94.3	94.3	86.6	51.4	50.6 50.1	47.8 47.9	54.7	65.0	54.6 54.2	30.7
12	78.2 74.8	49.8 49.9	94.3 94.4	94.1 93.8	86.8 86.1	50.6 47.8	49.3	47.9 48.8	54.4 54.2	64.7 64.0	54.2 52.9	29.1 25.3
2005. 1	73.7	50.0	94.0	92.2	83.2	45.9	48.3	49.3	53.2	62.3	51.2	23.4
2	73.6	49.6	93.7	92.2	83.4	46.2	48.2	49.2	53.0	62.7	50.6	23.6
3	74.5	49.0	94.4	93.5	85.4	48.8	49.5	48.8	53.8	63.9	53.7	26.6
4	75.0	48.5	94.6	93.9	86.6	51.0	50.3	48.6	54.3	64.6	54.5	29.3

(표 2-3) 경제활동참가율(성별·교육수준별)

(단위 : %)

								(11.70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고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57.6	79.7	93.2	90.7	42.1	48.5	65.3	56.8
1999	57.3	79.0	93.0	88.5	42.9	48.7	64.1	56.9
2000	57.4	78.4	91.1	87.8	43.6	49.5	64.6	58.1
2001	57.0	77.7	91.4	88.2	43.4	50.5	65.8	58.4
2002	57.3	78.2	92.6	88.4	43.1	51.4	66.4	59.1
2003	55.3	77.3	92.1	89.0	40.3	51.4	67.5	58.2
2004	55.1	77.7	91.1	88.7	40.1	53.0	66.8	60.0
2001. 3/4	57.9	78.2	91.1	88.2	44.7	50.6	65.7	57.7
4/4	56.8	78.4	92.6	88.6	43.6	51.5	66.9	58.1
2002. 1/4	55.0	77.7	91.1	88.3	40.8	51.2	65.9	58.2
2/4	58.9	78.0	92.5	88.3	45.0	51.5	67.3	59.2
3/4	58.1	78.5	92.5	88.3	44.2	51.4	65.9	59.1
4/4	57.2	78.4	94.0	88.8	42.5	51.5	66.6	59.7
2003. 1/4	53.7	76.9	92.5	89.1	37.7	50.8	68.4	57.6
2/4	56.8	76.8	92.2	89.1	41.9	50.9	68.3	58.3
3/4	55.8	77.4	91.4	88.7	41.4	51.4	66.6	58.4
4/4	54.8	78.3	92.2 91.5	89.1	40.3	52.3	66.9	58.3
2004. 1/4 2/4	53.8 56.4	77.4 77.6	91.5	88.6 88.4	38.4 41.4	52.6 52.8	66.5 67.4	58.7 60.8
3/4	55.2	77.5	90.6	88.5	40.6	53.1	66.8	60.0
4/4	55.0	78.3	90.8	89.2	39.9	53.5	66.4	60.5
2005. 1/4	52.7	76.7	90.1	89.8	45.0	52.6	65.7	59.7
2002. 9	58.2	78.0	92.9	88.5	44.5	51.5	66.1	59.5
10	58.3	78.1	94.0	88.8	44.5	51.6	66.0	60.1
11	57.5	78.5	93.8	88.7	42.9	51.5	66.5	59.6
12	55.7	78.7	94.1	88.8	40.2	51.5	67.1	59.3
2003. 1	52.2	77.9	92.9	89.3	36.9	51.5	68.1	57.5
2	53.5	76.6	92.3	88.9	36.8	50.5	67.8	57.5
3	55.5	76.1	92.4	89.0	39.3	50.4	69.3	57.8
4	56.5	76.5	91.9	89.1	41.4	50.6	68.4	57.6
5	57.0	76.9	92.4	89.0	42.3	50.9	68.6	58.4
6	56.9	76.8	92.3	89.3	42.1	51.3	67.9	58.9
7	56.2	78.2	91.9	88.8	41.6	52.2	67.4	58.8
8	55.3	77.0	91.2	88.5	40.8	51.1	65.9	57.7
9	55.7	77.0	91.2	88.7	41.7	51.1	66.6	58.6
10	56.0	77.8	92.2	89.0	41.8	51.9	66.9	58.6
11	55.2 53.3	78.4 78.6	92.3 92.2	89.0	41.0	52.4 52.5	67.3 66.4	58.3 58.1
12 2004. 1	51.9	78.4	92.2	89.2 88.9	38.2 37.1	52.5 53.2	65.4	58.1
2004. 1	54.0	76.4 76.6	91.1	88.3	38.1	52.4	66.5	58.7
3	55.7	77.1	91.3	88.5	40.1	52.3	67.5	59.3
4	56.3	77.3	91.8	88.3	41.4	52.7	67.4	60.7
5	56.3	77.5	91.9	88.3	41.4	52.8	67.5	60.8
6	56.4	77.8	91.3	88.4	41.4	52.9	67.3	61.0
7	55.4	78.4	90.9	88.5	40.6	53.7	67.1	60.1
8	54.7	76.9	90.3	88.3	40.0	51.9	66.0	59.3
9	55.5	77.4	90.6	88.7	41.0	53.6	67.2	60.8
10	55.9	78.2	90.7	89.1	41.4	53.4	66.5	60.5
11	55.3	78.4	90.8	89.2	40.3	53.4	66.2	60.7
12	53.8	78.3	91.0	89.3	38.0	53.7	66.7	60.4
2005. 1	51.0	77.8	90.2	89.0	36.4	53.2	65.6	59.6
2	52.7	75.9	89.5	88.6	36.9	52.0	65.3	59.8
3	54.6	76.6	90.5	89.0	44.4	52.6	66.2	59.7
4	55.8	76.3	90.9	89.3	46.7	52.9	67.6	59.9

〈표 2-4〉 산업별 취업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001 2002 2003 2004	2,243 2,148 2,069 1,950 1,825	17 18 18 17 16	4,293 4,267 4,241 4,205 4,290	64 58 52 76 72	1,580 1,585 1,746 1,816 1,820	3,833 3,931 3,991 3,871 3,805	1,919 1,943 2,007 1,981 2,057	1,068 1,114 1,140 1,084 1,128	192 208 231 249 248	752 760 734 751 738
2001.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2,379 2,131 1,727 2,251 2,252 2,046 1,699 2,127 2,090 1,882 1,609 1,967 1,933 1,789	19 18 20 19 16 17 16 17 17 17 19 15 14	4,228 4,302 4,242 4,258 4,214 4,251 4,168 4,238 4,166 4,246 4,274 4,308 4,278 4,296	56 55 53 56 50 50 74 77 78 75 74 73 71	1,642 1,679 1,601 1,791 1,781 1,812 1,734 1,854 1,854 1,762 1,864 1,790 1,864	3,958 4,017 3,996 3,980 4,000 3,988 3,972 3,890 3,801 3,821 3,851 3,762 3,797	1,955 1,958 1,996 2,024 2,018 1,989 1,947 1,944 2,004 2,029 2,061 2,055 2,057 2,056	1,124 1,141 1,126 1,134 1,140 1,159 1,085 1,081 1,078 1,094 1,102 1,129 1,135 1,144	207 215 220 230 238 238 255 252 243 246 244 240 255 255	752 750 751 725 731 729 754 768 744 738 740 736 734
2005. 1/4 2002. 6 7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1,525 2,289 2,249 2,237 2,270 2,276 2,094 1,769 1,596 1,646 1,855 2,076 2,154 2,152 2,102	18 17 16 15 16 18 17 15 15 18 17 16 18	4,260 4,241 4,213 4,190 4,254 4,257 4,240 4,144 4,152 4,209 4,238 4,252 4,225 4,220	71 55 52 52 46 47 51 53 74 73 75 74 78 80 78	1,692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43	3,777 4,001 4,043 3,962 3,994 3,985 3,980 4,000 4,034 3,973 3,908 3,910 3,889 3,870 3,858	2,058 2,012 2,036 2,015 2,002 1,977 1,988 2,001 1,993 1,947 1,902 1,907 1,956 1,969 2,024	1,139 1,144 1,148 1,133 1,139 1,155 1,159 1,164 1,084 1,091 1,082 1,084 1,078 1,080 1,075	263 236 244 232 237 240 236 237 260 254 253 249 253 255 255	729 713 726 735 732 729 724 733 751 754 755 771 774 759 750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2,078 2,090 2,112 1,958 1,575 1,489 1,555 1,781 1,982 1,981 1,989 1,924 1,933 1,942 1,990 1,829	16 18 17 16 20 20 20 18 17 16 14 13 15 16 15	4,115 4,164 4,236 4,246 4,257 4,254 4,272 4,302 4,323 4,286 4,316 4,311 4,226 4,297 4,323 4,304	78 77 75 73 74 72 75 74 72 73 71 71 72 73 7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786 1,751 1,832 1,873 1,877	3,768 3,776 3,823 3,806 3,836 3,846 3,845 3,845 3,791 3,789 3,713 3,786 3,786 3,780 3,814	2,004 1,985 1,981 2,040 2,066 2,073 2,077 2.033 2,033 2,070 2,061 2,099 2,024 2,047 2,031 2,049	1,073 1,085 1,089 1,092 1,100 1,094 1,108 1,105 1,116 1,131 1,141 1,141 1,126 1,138 1,140 1,139	240 234 235 252 250 249 244 238 236 240 244 256 253 256 255 255	741 741 738 733 744 750 741 738 739 744 737 735 734 740 732 732
12 2005. 1 2 3 4	1,549 1,405 1,462 1,708 1,935	15 19 17 19 21	4,261 4,252 4,255 4,274 4,271	70 70 70 71 72	1,843 1,686 1,632 1,753 1,851	3,798 3,782 3,779 3,769 3,725	2,089 2,066 2,060 2,408 2,066	1,153 1,143 1,128 1,147 1,163	257 259 259 272 263	737 730 728 729 735

주: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381 413 423 453	1,010 1,149 1,251 1,303 1,461	758 701 702 757 768	1,191 1,236 1,335 1,484 1,507	428 484 551 539 594	365 393 418 425 458	886 975 1,038 994 1,169	186 206 215 192 125	19 16 18 22 24
387 399 405 405 416 425 401 420 427 445 448 451 456 456	1,179 1,180 1,205 1,256 1,275 1,266 1,201 1,261 1,361 1,391 1,404 1,438 1,480 1,524	684 691 697 713 689 709 738 764 761 763 758 771 770	1,243 1,250 1,299 1,315 1,341 1,383 1,471 1,489 1,503 1,472 1,465 1,522 1,517 1,523	486 505 510 551 564 578 538 521 542 555 568 588 603 615	398 396 413 425 423 412 415 409 439 437 451 457 461 465	984 999 1,015 1,056 1,038 1,043 960 973 996 1,048 1,099 1,171 1,196 1,209	204 222 220 218 212 211 180 196 205 188 144 111 125	15 15 16 18 19 21 24 21 21 23 25 25 24 23
436 467 410 416 413 419 430 424 421 401 393 408 407 420 433 436 420 424 446 440 450 452 448 443 448 452 454 457 447 464 458 455 456 464 461 477 474	1,324 1,498 1,273 1,284 1,261 1,281 1,271 1,268 1,260 1,191 1,171 1,240 1,238 1,267 1,276 1,302 1,370 1,412 1,385 1,400 1,388 1,389 1,424 1,433 1,447 1,434 1,448 1,448 1,4510 1,502 1,539 1,531 1,497 1,502 1,494 1,498	771 763 711 693 687 687 705 713 708 727 734 752 756 769 767 768 757 758 764 766 760 741 762 772 782 770 762 772 760 778 768 777 768 779 768 779 779	1,323 1,501 1,318 1,334 1,320 1,368 1,377 1,386 1,387 1,453 1,449 1,470 1,479 1,491 1,498 1,523 1,486 1,499 1,477 1,469 1,470 1,452 1,486 1,499 1,522 1,544 1,548 1,523 1,523 1,529 1,516 1,485 1,499 1,518 1,533	5628 562 561 570 560 573 579 581 547 548 531 512 520 538 541 547 548 559 570 576 589 585 590 598 597 616 621 612 618 626 638 650	403 483 420 426 423 420 417 412 408 418 411 417 404 407 418 434 436 430 446 450 461 442 448 466 459 468 455 459 467 461 466 478 478 492 492	1,209 1,226 1,072 1,042 1,034 1,039 1,044 1,046 1,040 970 951 959 954 982 984 998 986 1,004 1,020 1,058 1,065 1,065 1,065 1,104 1,106 1,136 1,174 1,204 1,199 1,184 1,204 1,216 1,218 1,225 1,234 1,230	126 213 214 206 215 213 212 206 177 172 191 192 199 196 205 196 213 211 186 166 157 136 138 136 108 113 108 113 121 126 127 124 127 130	23 24 18 18 19 20 21 21 21 23 26 24 24 21 20 21 20 21 22 24 24 25 25 25 25 25 24 23 23 24 24 25 25 26 27 27 28 28 29 2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표 2-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001 2002 2003 2004	1,072 1,016 984 923 866	0 1 1 1	1,535 1,519 1,518 1,475 1,493	11 14 11 12 13	134 136 150 148 162	1,774 1,847 1,865 1,832 1,795	1,304 1,321 1,364 1,349 1,421	94 98 96 89 104	56 58 59 78 79	405 417 397 385 374
2001.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1,164 1,015 760 1,112 1,100 963 749 1,041 1,013 889 717 961	1 1 1 1 2 1 1 1 1	1,494 1,555 1,503 1,537 1,511 1,521 1,452 1,496 1,450 1,501 1,485 1,506	14 15 14 13 9 9 13 13 11 12	141 147 141 160 149 150 138 148 154 151 148	1,863 1,893 1,867 1,868 1,872 1,855 1,880 1,850 1,800 1,798 1,823 1,806	1,320 1,329 1,349 1,380 1,377 1,349 1,310 1,322 1,365 1,401 1,421 1,420	99 99 100 93 94 99 87 91 84 94 101	56 60 59 59 61 59 82 78 76 74 76 76	408 405 408 388 395 399 383 396 381 380 383 377
3/4 4/4 2005. 1/4	934 851 657	1 1 2	1,482 1,501 1,443	14 13 13	163 170 155	1,773 1,781 1,759	1,426 1,419 1,413	105 107 104	81 83 88	365 370 360
2003. 8 9 10 11 12 2003. 1 2 3 4 5	1,081 1,115 1,117 955 778 687 715 846 1,001 1,055	1 2 2 3 2 1 0 1	1,492 1,534 1,545 1,519 1,499 1,437 1,429 1,490 1,494 1,498	10 7 8 9 9 8 9 9	146 152 146 149 155 136 133 143 147	1,839 1,887 1,852 1,852 1,860 1,905 1,873 1,864 1,855 1,848	1,377 1,365 1,347 1,347 1,353 1,336 1,306 1,288 1,298 1,328	91 93 95 103 99 86 86 90 94	58 59 62 57 58 80 86 79 76	396 399 402 396 399 380 382 386 395 403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67 1,020 1,000 1,017 1,031 943 694 639 682 829 931 971 981 923 932 948 98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495 1,475 1,414 1,461 1,503 1,511 1,489 1,471 1,480 1,502 1,518 1,497 1,502 1,497 1,446 1,504 1,504	14 13 14 13 11 12 10 11 12 14 14 15 15 13 13	150 157 153 154 148 155 150 144 151 149 168 165 168 157 156 176 173	1,848 1,828 1,775 1,797 1,810 1,783 1,800 1,833 1,821 1,814 1,818 1,801 1,788 1,740 1,789 1,768	1,341 1,370 1,370 1,354 1,362 1,408 1,432 1,423 1,429 1,410 1,411 1,422 1,427 1,456 1,403 1,418 1,399	91 86 81 85 92 93 96 99 103 100 103 106 103 106 107	79 81 75 72 73 74 76 77 78 74 75 77 76 82 79 81 83	391 386 379 379 380 379 381 386 382 381 382 379 370 367 362 367 371
11 12 2005. 1 2 3 4	880 691 591 607 774 926	1 1 1 2 2 2	1,502 1,477 1,442 1,438 1,449 1,435	12 12 12 13 12 13	170 166 159 151 155 159	1,791 1,783 1,771 1,764 1,741 1,729	1,409 1,448 1,420 1,405 1,412 1,439	106 107 105 101 107 108	83 82 85 86 93 89	368 371 363 358 359 362

주: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명)

								(2.11 2.07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111 127 129 139	321 365 402 399 451	223 205 199 188 213	730 768 844 956 991	304 349 394 385 419	135 146 158 156 173	389 419 438 410 540	183 200 212 188 121	1 2 3 7 7
115 116 120 121 131 137 121 130 130 133 131 137 145 143 139	375 389 398 406 399 405 371 388 414 422 428 445 458 474	196 192 191 207 194 206 176 190 196 190 194 209 226 224 216	768 776 809 830 846 892 927 957 980 960 950 1,006 998 1,010	351 370 366 397 401 413 384 380 384 393 401 417 425 434 456	149 141 152 164 159 157 150 151 161 161 166 172 175 179 188	421 428 424 452 435 442 393 396 407 444 489 543 560 569	197 217 217 215 208 208 176 191 201 184 141 115 108 121	2 2 2 3 3 4 7 7 7 6 6 6 7 7
131 132 142 137 133 117 118 129 126 132 131 130 130 130 135 130 135 132 128 133 138 140 144 142 148 148 149 152	390 401 407 405 402 373 356 386 385 389 398 412 431 423 423 419 420 425 440 443 451 441 446 460 467 458 482 483 486 485 480 478	195 188 206 209 202 175 175 178 183 195 191 200 196 194 193 190 187 184 198 208 210 209 220 217 241 230 223 223 220 208 213 226 239	824 873 884 896 896 907 933 942 948 958 964 988 969 953 957 945 933 973 990 1,007 1,019 970 1,004 1,009 1,016 1,006 977 986 1,018 1,032	408 395 407 414 417 387 389 375 388 374 378 385 382 384 389 397 393 394 403 405 417 413 420 421 419 436 436 429 438 439 438 439 438 439 438 439 438 439 436 429 438 439 438 439 438 439 438 439 438 439 439 436 437 438 439 439 430 431 432 433 443 443 443 444 445 447 448 449 448 449 448 448 449 448 449 448 449 448 449 448 449 449	160 159 160 158 155 155 148 147 147 148 158 164 163 156 157 159 168 166 169 164 170 177 169 174 172 180 177 181 178 183 185 197 198	436 434 440 442 444 396 392 386 404 397 402 408 410 417 451 463 483 493 518 546 565 565 563 549 567 566 571 571 570 564 572 575	202 212 210 210 203 173 169 186 196 192 201 193 208 206 183 164 155 134 132 105 107 109 105 110 119 122 124 122 119 123 125	3 3 3 3 4 7 7 7 7 7 5 6 6 7 6 6 6 6 6 6 6 6 6 6 6

〈표 2-6〉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_ 11 0/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00 2001 2002 2003 2004	465 524 570 598 576	1,403 1,498 1,577 1,702 1,731	2,074 2,079 2,115 2,140 2,324	2,512 2,671 2,822 3,172 3,188	2,675 2,723 2,843 2,735 2,895	2,826 2,933 2,952 2,835 2,749	2,115 2,035 1,964 1,834 1,700	2,688 2,638 2,697 2,407 2,455	2,292 2,332 2,373 2,387 2,490	2,107 2,138 2,255 2,329 2,449
2001. 1/4 2/4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484 525 526 562 573 581 571 555 604 585	1,465 1,520 1,504 1,506 1,519 1,579 1,598 1,612 1,702 1,707	2,072 2,065 2,096 2,082 2,112 2,107 2,131 2,111 2,029 2,109	2,565 2,702 2,704 2,714 2,764 2,807 2,815 2,902 3,184 3,212	2,673 2,726 2,728 2,764 2,803 2,864 2,859 2,847 2,639 2,696	2,867 2,936 2,950 2,980 2,963 2,943 2,964 2,938 2,918 2,834	1,633 2,247 2,256 2,004 1,644 2,126 2,151 1,937 1,603 2,001	2,556 2,658 2,639 2,700 2,629 2,749 2,709 2,699 2,346 2,437	2,313 2,322 2,321 2,372 2,334 2,381 2,377 2,401 2,380 2,379	1,998 2,138 2,176 2,240 2,170 2,286 2,239 2.324 2,228 2,343
3/4 4/4 2004. 1/4 2/4 3/4 4/4 2005. 1/4	583 601 600 580 580 580 565 524	1,707 1,713 1,684 1,697 1,744 1,729 1,754 1,755	2,109 2,190 2,234 2,271 2,329 2,330 2,364 2,365	3,160 3,132 3,154 3,181 3,213 3,205 3,214	2,090 2,771 2,833 2,873 2,891 2,881 2,933 2,952	2,792 2,798 2,818 2,765 2,712 2,701 2,675	1,976 1,756 1,501 1,827 1,817 1,655 1,437	2,437 2,393 2,453 2,110 2,476 2,432 2,474 2,348	2,379 2,365 2,424 2,441 2,494 2,508 2,519 2,532	2,343 2,333 2,411 2,329 2,457 2,445 2,563 2,403
2002. 8 9 10 11 12 2003. 1 2 3	567 566 554 554 555 611 600 601 580	1,593 1,618 1,613 1,618 1,605 1,707 1,715 1,683 1,702	2,128 2,118 2,111 2,106 2,115 1,968 2,037 2,081 2,090	2,802 2,831 2,861 2,898 2,949 3,205 3,168 3,179 3,183	2,843 2,841 2,849 2,852 2,841 2,654 2,640 2,624 2,641	2,939 2,956 2,943 2,921 2,951 2,996 2,924 2,835 2,837	2,141 2,162 2,154 1,988 1,668 1,508 1,558 1,742 1,965	2,676 2,724 2,719 2,715 2,665 2,332 2,308 2,399 2,436	2,367 2,395 2,399 2,403 2,400 2,372 2,383 2,384 2,384	2,166 2,278 2,335 2,335 2,302 2,209 2,165 2,309 2,339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583 591 594 605 606 608 586 580 579 579 576 580 580 580 584	1,710 1,709 1,726 1,704 1,710 1,695 1,687 1,671 1,683 1,690 1,718 1,731 1,754 1,744 1,744 1,751	2,105 2,133 2,179 2,184 2,208 2,211 2,231 2,260 2,263 2,246 2,304 2,321 2,326 2,329 2,333 2,303	3,234 3,220 3,220 3,132 3,130 3,142 3,123 3,131 3,150 3,177 3,135 3,161 3,186 3,181 3,235 3,172	2,721 2,726 2,802 2,756 2,756 2,767 2,837 2,896 2,875 2,891 2,853 2,906 2,825	2,839 2,825 2,822 2,772 2,782 2,805 2,843 2,843 2,753 2,753 2,753 2,753 2,762 2,694	2,027 2,010 1,981 1,973 1,973 1,980 1,817 1,470 1,451 1,644 1,794 1,847 1,827 1,808 1,834	2,452 2,425 2,397 2,362 2,419 2,430 2,438 2,438 2,407 2,421 2,491 2,498 2,468 2,476 2,476 2,417 2,396	2,375 2,379 2,377 2,354 2,365 2,412 2,414 2,445 2,425 2,438 2,460 2,476 2,485 2,494 2,514 2,514 2,496	2,324 2,365 2,359 2,285 2,354 2,404 2,432 2,398 2,301 2,296 2,391 2,436 2,436 2,436 2,457 2,464 2,367
9 10 11 12 2005. 1 2 3 4	576 568 562 565 565 565 569 567 579	1,725 1,749 1,770 1,743 1,727 1,748 1,790 1,812	2,354 2,361 2,367 2,363 2,352 2,370 2,373 2,351	3,232 3,211 3,199 3,205 3,194 3,210 3,239 3,238	2,892 2,896 2,925 2,979 2,953 2,946 2,956 2,991	2,720 2,697 2,703 2,703 2,701 2,671 2,652 2,641	1,809 1,843 1,690 1,433 1,330 1,386 1,595 1,809	2,482 2,490 2,475 2,457 2,340 2,304 2,399 2,432	2,513 2,525 2,517 2,514 2,522 2,515 2,558 2,588	2,505 2,562 2,594 2,533 2,395 2,367 2,446 2,495

주: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표 2-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고위임직 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2003	35	777	729	1,496	1,852	1,535	829	436	305	1,116
2004	40	786	756	1,582	2,006	1,493	764	424	345	1,168
2001. 1/4	31	631	620	1,328	1,824	1,588	676	591	308	929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3/4	36	779	741	1,517	1,877	1,513	921	426	297	1,111
4/4	38	754	746	1,492	1,949	1,516	784	440	319	1,155
2004. 1/4	35	756	746	1,515	1,974	1,538	625	437	335	1,112
2/4	41	796	763	1,577	2,005	1,508	846	431	346	1,169
3/4	41	790	753	1,613	2,008	1,467	841	416	351	1,165
4/4	43	803	763	1,621	2,035	1,459	746	412	349	1,226
2005. 1/4	43	804	753	1,616	2,042	1,438	587	394	340	1,150
2002. 8 9 10 11 12 2003. 1 2	30 29 27 27 27 27 39 32 35	665 681 693 701 692 784 791 780	680 677 684 679 683 690 709 722	1,466 1,479 1,493 1,510 1,534 1,481 1,463 1,478	1,969 1,974 1,973 1,966 1,961 1,768 1,760 1,761	1,595 1,635 1,601 1,591 1,600 1,601 1,562 1,536	1,013 1,037 1,028 919 709 624 648 750	522 531 531 526 500 421 423 444	306 311 315 313 307 307 297 304	993 1,057 1,090 1,069 1,051 1,033 1,018 1,128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32 31 33 35 37 37 39 37 34 34 38 38 41 44 41	790 793 786 790 770 776 762 749 752 753 749 764 777 804 805 805 774	720 712 730 742 738 742 745 744 744 737 757 766 760 762 758 735	1,469 1,512 1,520 1,540 1,504 1,506 1,509 1,490 1,478 1,498 1,522 1,526 1,556 1,584 1,592 1,616 1,583	1,783 1,834 1,840 1,885 1,873 1,872 1,895 1,956 1,976 1,976 1,976 1,976 2,004 2,045 1,962	1,546 1,547 1,537 1,525 1,492 1,520 1,522 1,509 1,517 1,558 1,536 1,520 1,525 1,504 1,478 1,478	904 952 947 925 917 922 927 818 607 567 596 711 815 865 858 832	451 448 439 429 417 432 435 452 434 427 435 449 444 428 421 411	301 300 302 300 292 299 309 322 326 328 340 338 349 341 348 345	1,132 1,135 1,148 1,122 1,078 1,132 1,164 1,176 1,124 1,086 1,106 1,143 1,173 1,155 1,178 1,163
9	40	792	767	1,639	2,017	1,474	841	433	359	1,201
10	42	799	764	1,625	2,005	1,453	865	419	355	1,242
11	43	809	764	1,619	2,027	1,459	769	411	351	1,243
12	43	800	762	1,618	2,071	1,466	603	407	351	1,192
2005. 1	43	781	756	1,602	2,041	1,465	532	393	336	1,130
2	44	800	744	1,611	2,027	1,433	548	393	335	1,139
3	43	830	759	1,634	2,058	1,417	681	396	348	1,180
4	44	842	761	1,617	2,086	1,423	824	385	358	1,198

주: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표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641 7,628 7,795 7,913 7,988 7,736 7,663	1,392 1,351 1,458 1,554 1,617 1,629 1,679	4,225 4,351 4,407 4,497 4,574 4,413 4,431	2,025 1,925 1,931 1,863 1,797 1,694 1,553	12,296 12,663 13,360 13,659 14,181 14,402 14,894	6,534 6,135 6,395 6,714 6,862 7,269 7,625	4,043 4,255 4,608 4,726 4,886 5,004 5,082	1,720 2,274 2,357 2,218 2,433 2,130 2,188
2000.3/4 4/4 2001.1/4 2/4 3/4 4/4 2002.1/4 2/4 3/4 4/4 2003.1/4 2/4 3/4 4/4 2004.1/4 2/4 3/4 4/4 2005.1/4	8,087 7,842 7,430 8,070 8,166 7,987 7,647 8,168 8,190 7,944 7,465 7,794 7,939 7,748 7,490 7,762 7,769 7,631 7,391	1,487 1,507 1,504 1,558 1,558 1,596 1,613 1,631 1,630 1,593 1,567 1,590 1,690 1,676 1,676 1,684 1,680 1,631	4,547 4,432 4,248 4,544 4,642 4,552 4,387 4,669 4,576 4,298 4,433 4,502 4,421 4,325 4,459 4,446 4,391	2,053 1,903 1,678 1,967 1,967 1,840 1,646 1,876 1,892 1,775 1,601 1,771 1,767 1,637 1,489 1,626 1,593 1,505 1,368	13,399 13,578 13,197 13,769 13,734 13,936 13,864 14,255 14,225 14,382 14,168 14,509 14,356 14,577 14,614 14,983 14,878 15,102 14,856	6,429 6,551 6,562 6,762 6,764 6,759 6,855 6,857 7,176 7,250 7,268 7,383 7,460 7,686 7,671 7,781 7,803	4,615 4,655 4,588 4,760 4,722 4,835 4,821 4,908 4,927 4,904 5,082 4,989 5,059 5,067 5,199 5,035 5,026 4,968	2,356 2,372 2,017 2,247 2,273 2,237 2,283 2,492 2,459 2,498 2,088 2,177 2,099 2,155 2,087 2,197 2,172 2,295 2,085
2002. 7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12 2005. 1 12 2005. 1 12 2006. 1 12 2006. 1 10 11 11 12 2006.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8,182 8,193 8,196 8,192 7,995 7,646 7,426 7,451 7,518 7,672 7,859 7,855 7,973 7,973 7,999 7,472 7,428 7,456 7,585 7,724 7,797 7,764 7,797 7,764 7,688 7,797 7,822 7,835 7,355 7,385	1,634 1,634 1,634 1,621 1,605 1,592 1,582 1,560 1,571 1,570 1,568 1,592 1,611 1,639 1,689 1,692 1,702 1,677 1,676 1,668 1,683 1,673 1,673 1,673 1,673 1,673 1,679 1,666 1,685 1,700 1,699 1,678 1,631 1,631 1,627 1,624	4,656 4,674 4,675 4,692 4,607 4,431 4,272 4,295 4,326 4,378 4,460 4,439 4,535 4,535 4,533 4,510 4,443 4,311 4,289 4,313 4,311 4,289 4,460 4,445 4,460 4,445 4,507 4,527 4,511 4,475 4,383 4,383 4,460 4,520	1,891 1,884 1,900 1,896 1,796 1,634 1,594 1,586 1,622 1,726 1,761 1,771 1,653 1,485 1,475 1,475 1,529 1,612 1,577 1,606 1,595 1,624 1,577 1,606 1,595 1,626 1,521 1,369 1,317 1,341 1,477 1,526	14,352 14,030 14,294 14,346 14,394 14,405 14,137 14,047 14,320 14,484 14,519 14,525 14,601 14,149 14,318 14,479 14,627 14,624 14,508 14,549 14,785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508 14,549 14,785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14,949 15,066 15,109 14,731 15,066	6,860 6,851 6,923 6,944 6,950 6,950 6,977 7,142 7,158 7,227 7,239 7,236 7,245 7,236 7,331 7,350 7,388 7,411 7,453 7,501 7,553 7,600 7,606 7,569 7,700 7,744 7,776 7,776 7,776 7,776 7,776 7,776 7,774 7,868 7,907	4,940 4,806 4,919 4,899 4,943 4,940 4,893 4,853 4,966 5,079 5,086 5,152 4,872 4,942 5,025 5,045 5,045 5,045 5,045 5,152 5,045 5,045 5,055 5,044 5,152 5,045 5,055 5,045 5,055 5,046 4,947 5,076 4,946 4,947 5,084	2,552 2,372 2,452 2,503 2,501 2,489 2,102 2,035 2,127 2,168 2,171 2,193 2,210 2,041 2,045 2,104 2,166 2,077 2,053 2,132 2,192 2,174 2,255 2,191 2,071 2,254 2,317 2,258 2,082

〈표 2-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345 3,313 3,372 3,382 3,368 3,138 3,127	243 248 263 296 304 290 321	1,304 1,388 1,421 1,457 1,482 1,328 1,420	1,798 1,677 1,688 1,629 1,582 1,519 1,387	4,745 5,025 5,397 5,609 5,857 5,970 6,237	1,650 1,562 1,679 1,861 1,968 2,109 2,289	2,257 2,289 2,496 2,589 2,682 2,826 2,869	839 1,174 1,222 1,159 1,207 1,036 1,079
2000.3/4 4/4 2001.1/4 2/4 3/4 4/4 2002.1/4 2/4 3/4 4/4 2003.1/4 2/4 3/4 4/4 2004.1/4 2/4 3/4 4/4 2004.1/4	3,547 3,378 3,111 3,493 3,530 3,394 3,173 3,494 3,482 3,323 2,969 3,192 3,252 3,138 3,002 3,207 3,182 3,117 2,055	270 279 287 300 294 302 303 313 308 293 270 283 303 304 307 319 324 334	1,476 1,428 1,359 1,463 1,520 1,485 1,435 1,519 1,504 1,468 1,260 1,309 1,372 1,367 1,425 1,438 1,448	1,800 1,671 1,465 1,729 1,717 1,606 1,435 1,662 1,439 1,600 1,576 1,463 1,328 1,464 1,420 1,334	5,409 5,524 5,413 5,659 5,606 5,759 5,708 5,911 5,862 5,944 5,827 6,033 5,966 6,055 6,073 6,274 6,262 6,340 6,211	1,698 1,764 1,802 1,865 1,908 1,913 1,979 1,977 2,005 2,067 2,070 2,130 2,169 2,188 2,260 2,327 2,379	2,510 2,539 2,523 2,626 2,574 2,633 2,695 2,684 2,725 2,733 2,894 2,824 2,839 2,844 2,849 2,939 2,844 2,844 2,844 2,844	1,201 1,220 1,088 1,168 1,163 1,217 1,173 1,237 1,202 1,215 1,027 1,069 1,011 1,036 1,036 1,075 1,091 1,116
2005.1/4 2002. 7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1 2 2005. 1 2 3 3	2,955 3,485 3,484 3,491 3,357 3,122 2,942 2,951 3,015 3,111 3,229 3,236 3,224 3,253 3,278 3,274 3,166 2,973 2,959 2,976 3,070 3,176 3,228 3,218 3,155 3,180 3,210 3,210 3,235 3,142 2,974 2,894 2,921 3,049	326 311 312 302 295 291 292 263 276 273 269 285 296 307 307 307 307 301 303 314 314 320 323 322 323 327 333 332 336 326 326 325 328	1,424 1,503 1,496 1,514 1,521 1,477 1,406 1,246 1,259 1,275 1,277 1,316 1,333 1,343 1,380 1,394 1,380 1,394 1,358 1,358 1,358 1,358 1,411 1,430 1,459 1,459 1,458 1,427 1,410 1,424 1,440	1,204 1,671 1,659 1,678 1,678 1,674 1,588 1,424 1,434 1,415 1,467 1,564 1,628 1,606 1,586 1,576 1,586 1,480 1,322 1,451 1,478 1,462 1,409 1,427 1,424 1,439 1,352 1,211 1,158 1,172 1,282	6,211 5,898 5,772 5,917 5,944 5,946 5,943 5,805 5,754 5,923 6,017 6,036 6,047 6,069 5,866 5,962 6,032 6,085 6,048 6,015 6,055 6,148 6,257 6,302 6,336 6,096 6,352 6,336 6,353 6,330 6,184 6,153 6,249	2,368 1,965 1,969 1,996 2,006 2,007 2,084 2,054 2,054 2,055 2,085 2,173 2,174 2,173 2,164 2,177 2,219 2,248 2,267 2,262 2,348 2,376 2,381 2,380 2,357 2,356 2,392	2,801 2,709 2,629 2,714 2,702 2,738 2,735 2,680 2,713 2,807 2,900 2,894 2,889 2,911 2,762 2,799 2,848 2,858 2,858 2,846 2,827 2,837 2,930 2,930 2,952 2,939 2,708 2,834 2,952 2,969 2,708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5 2,846 2,738 2,952 2,968 2,768	1,041 1,224 1,174 1,207 1,236 1,206 1,202 1,041 993 1,048 1,062 1,062 1,063 1,073 971 989 1,011 1,063 1,032 1,020 1,042 1,046 1,079 1,062 1,088 1,040 1,146 1,132 1,127 1,090 1,046 1,011 1,065

〈표 2-10〉 성별·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05 926 613 561 467 488 509	404 355 242 229 207 220 224	258 236 159 141 126 122 127	189 182 124 112 77 82 86	120 119 68 60 42 49 54	33 35 20 19 16 15	486 448 300 284 241 289 304	251 219 160 159 135 163 167	106 100 58 52 51 59	84 85 56 49 35 46 52	35 35 20 20 14 17 20	11 9 6 4 6 5 5
2001.3/4 4/4 2002.1/4 2/4 3/4 4/4 2003.1/4 2/4 3/4 4/4 2004.1/4 2/4 3/4 4/4	497 493 531 455 435 503 470 478 499 527 482 502 526 564	211 222 235 199 187 206 239 208 205 228 244 215 208 229 233	126 121 136 122 120 127 121 116 123 129 119 120 132 136 142	93 86 87 78 75 67 76 82 88 82 93 76 89 87	52 48 52 41 38 36 54 49 48 44 53 53 54 55 65	15 16 20 16 15 13 13 15 14 16 18 19 18	258 258 298 234 217 215 303 281 278 295 350 304 285 276 348	135 147 175 128 118 118 185 154 145 166 205 168 147 149 190	49 48 55 51 48 49 56 62 60 59 61 56 60 57	52 40 44 32 32 32 42 44 50 47 58 53 52 47 61	18 19 16 15 14 12 15 18 18 16 20 21 19 20 21	4 5 8 7 6 4 4 3 5 7 7 7 7 7 7 3 7
2005.1/4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7 8 9 10 11 12 2005. 1 2 3 4 4 5 4 5 6 7 8 9 10 11 12 2005. 1	407 434 441 470 487 518 503 471 465 474 485 480 469 492 486 519 540 536 506 481 489 476 521 510 555 564 575 588 527	233 175 198 231 236 250 231 210 207 218 200 196 218 219 247 264 223 198 220 226 229 203 193 212 223 253 238 238 238 233 198	142 114 127 132 122 117 124 121 115 116 123 127 133 129 124 125 118 116 126 117 118 136 137 139 144 145 137 139	69 72 67 62 78 79 79 82 85 86 94 83 81 81 84 83 98 98 82 77 68 84 92 92 83 90 88 105 109 105 105 105	55 32 31 34 42 47 54 60 51 47 50 46 41 45 48 57 54 48 57 54 48 55 59 61 71 62 64	19 16 15 11 13 15 12 13 17 14 14 16 19 19 16 19 19 16 19 17 21 17 17 18 21 22	199 205 207 232 302 304 303 285 278 281 296 277 261 274 306 306 315 364 372 328 300 286 292 291 273 270 259 299 340 354 349 330	190 106 112 115 127 188 192 176 152 159 167 144 124 139 175 185 216 213 178 164 161 158 149 133 143 138 167 193 193 194 195 195 195 195 195 195 195 195 195 195	70 43 52 47 47 56 54 58 66 60 58 59 64 63 58 56 68 60 62 55 51 56 68 60 62 57 53 66 67 68 68 68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32 27 30 38 39 41 46 46 44 41 46 53 50 47 50 48 54 71 58 53 48 54 54 66 66 55 66 66 56	13 12 10 15 16 13 17 17 19 18 20 17 17 19 16 15 18 19 23 23 20 20 20 16 22 17 18 20 21 17 18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7 5 2 4 5 3 3 7 4 4 2 5 4 6 7 7 6 7 7 6 7 7 6 7 7 5 7 7 7 7 7 7 7

(표 2-11) 연령대별·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Q	변 령 대 별		교 육 수 준 별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0 6.3 4.1 3.8 3.1 3.4 3.5	12.2 10.9 7.6 7.5 6.6 7.7 7.9	5.7 5.3 3.4 3.0 2.8 2.9 2.9	5.6 5.2 3.3 2.8 1.9 2.1 2.2	5.3 5.1 2.9 2.6 1.8 2.0 2.2	2.4 2.3 1.3 1.1 1.0 0.9 1.1	5.9 5.2 3.3 2.9 2.1 2.0 2.3	8.3 7.6 4.8 4.3 3.5 4.1 4.3	8.5 7.6 6.0 5.4 4.7 4.9	4.9 4.5 3.1 3.1 2.9 2.9 2.8	
2001.3/4 4/4 2002.1/4 2/4 3/4 4/4 2003.1/4 2/4 3/4 4/4 2004.1/4 2/4 3/4 4/4	3.3 3.7 3.0 2.8 2.9 3.6 3.3 3.4 3.8 3.3 3.4 3.4 3.4	6.7 7.2 7.8 6.3 6.0 6.4 8.4 7.3 7.0 8.0 8.9 7.7 7.2	2.8 2.6 3.0 2.7 2.6 2.8 2.8 2.9 3.0 2.8 2.7 3.0	2.5 2.1 2.3 1.8 1.6 2.0 2.0 2.1 2.4 2.0 2.2 2.1	2.3 2.2 2.3 1.8 1.6 1.5 2.2 2.1 2.0 1.8 2.2 2.2 2.1 2.1	0.8 1.0 1.4 1.0 0.9 0.8 0.9 0.8 1.0 1.2 1.1	2.3 2.6 2.0 1.9 1.9 2.0 1.8 2.2 2.2 2.5 2.2 2.4 2.3	3.9 4.3 3.4 3.2 3.2 4.3 3.9 4.0 4.3 4.6 3.9 4.1 4.5	5.0 4.7 5.0 4.6 4.3 4.8 5.5 5.1 4.5 4.5 4.9 4.2 3.8	2.9 2.8 3.3 2.8 2.6 2.8 3.0 2.8 2.7 3.2 2.9 2.6 2.4	
2005. 1/4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 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 3 4	3.9 2.6 2.8 3.1 3.5 3.7 3.6 3.3 3.2 3.3 3.4 3.3 3.2 3.3 3.4 3.5 3.7 3.8 3.4 3.7 3.8 3.4 3.5 3.7 3.8 3.7 3.8 3.7 3.8 3.7 3.7 3.8 3.7 3.7 3.8 3.7 3.7 3.8 3.7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8.6 5.6 6.2 7.0 8.3 8.7 8.2 7.3 7.2 7.4 7.5 6.9 6.6 7.3 8.0 8.8 9.1 8.8 7.6 7.7 7.8 7.3 6.7 7.3 8.5 8.7	3.4 2.8 2.8 2.7 2.7 2.8 2.8 2.8 2.9 3.0 3.1 2.9 2.7 2.9 2.7 2.9 2.7 2.9 2.7 2.9 2.7 2.9 2.7 2.9 3.0 3.1 3.1 3.0 3.1 3.0 3.1 3.0 3.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2.6 1.7 1.6 1.6 1.9 2.0 2.1 2.0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5 1.4 1.3 1.4 1.8 2.1 2.0 2.1 2.0 2.1 2.0 1.9 1.7 1.8 2.1 2.0 2.0 2.0 2.0 2.0 2.0 2.0 2.0	1.4 0.9 0.7 0.7 0.9 1.0 0.8 1.0 0.9 0.8 0.7 0.9 0.8 0.9 1.0 1.1 1.2 0.9 1.1 1.1 1.0 0.9 1.2 1.1 1.1 1.1 1.0 1.1 1.1 1.1 1.1 1.1 1.1	2.7 1.7 1.6 1.8 2.2 2.1 2.0 2.0 1.8 1.7 1.8 2.1 2.0 2.1 2.5 2.7 2.6 2.3 2.5 2.5 2.5 2.1 2.4 2.3 2.5 2.5 2.1 2.0 2.0 2.0 2.0 2.0 2.0 2.0 2.0	4.9 3.1 3.1 4.5 4.4 4.0 3.8 3.8 4.1 4.3 4.6 4.8 4.5 4.4 4.0 3.9 3.9 4.0 4.2 5.0 5.1 4.0 4.0 4.0 4.0 4.0 4.0 4.0 4.0	4.9 4.3 4.8 4.7 4.9 5.0 5.6 6.0 5.4 5.3 4.7 4.4 4.8 4.3 4.5 5.4 5.3 5.3 4.0 4.1 4.8 3.7 4.0 3.8 3.5 5.3 5.3	29 26 28 28 27 26 3.3 3.6 3.1 3.0 27 29 27 28 28 24 25 3.5 3.1 28 27 26 3.9 25 26 3.0 3.1 3.0	

〈표 2-12〉 성별·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8 7.2 4.7 4.3 3.5 3.6 3.7	14.1 12.8 8.9 8.7 8.0 8.9 9.2	6.2 5.7 3.9 3.4 3.1 3.0 3.1	6.3 5.8 3.8 3.3 2.1 2.2 2.3	6.6 6.5 3.7 3.2 2.2 2.4 2.6	3.3 3.3 1.9 1.6 1.3 1.2	5.7 5.1 3.3 3.1 2.5 3.1 3.1	9.9 8.8 6.3 6.2 5.3 6.5 6.6	4.8 4.5 2.6 2.3 2.2 2.6 2.6	4.4 4.2 2.6 2.2 1.5 1.9 2.1	3.1 3.0 1.7 1.6 1.2 1.4	1.3 1.0 0.6 0.4 0.6 0.5 0.6
2001.3/4 4/4 2002.1/4 2/4 3/4 4/2 2003.1/4 2/4 3/4 4/4 2004.1/4 2/4 3/4 4/4 2005.1/4	3.7 4.0 3.4 3.2 3.3 3.8 3.5 3.5 3.7 3.9 3.5 3.7 3.8 4.1	8.0 8.6 8.9 7.7 7.3 8.2 9.5 8.5 8.3 9.2 9.8 8.9 8.7 9.5 9.8	3.1 3.0 3.3 2.9 2.9 3.1 2.9 2.8 3.0 3.1 2.9 2.9 3.2 3.3	2.7 2.4 2.5 2.2 2.1 1.8 2.1 2.2 2.3 2.2 2.5 2.0 2.3 2.3 2.8	2.8 2.6 2.9 2.1 1.9 1.8 2.7 2.4 2.2 2.6 2.5 2.6 2.8	1.3 1.8 1.3 1.2 1.0 1.2 1.2 1.2 1.3 1.5 1.4 1.4 1.4	2.7 2.7 3.2 2.4 2.3 2.3 3.3 3.0 2.9 3.1 3.7 3.1 2.9 2.8 3.7	5.3 5.7 6.7 5.0 4.6 4.7 7.3 6.2 5.7 6.7 8.0. 6.6 5.7 5.9 7.5	2.2 2.1 2.5 2.2 2.1 2.2 2.5 2.7 2.7 2.6 2.7 2.4 2.7 2.5 3.1	2.3 1.7 1.9 1.3 1.3 1.8 1.8 2.0 1.9 2.3 2.1 2.0 1.8 2.4	1.5 1.5 1.4 1.2 1.1 1.0 1.3 1.4 1.4 1.3 1.6 1.5 1.5	0.4 0.5 0.9 0.7 0.6 0.4 0.5 0.3 0.5 0.7 0.8 0.6 0.7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2 3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12 2005. 1	3.0 3.2 3.3 3.5 3.7 3.9 3.8 3.5 3.6 3.6 3.6 3.7 3.5 3.6 3.7 3.5 3.6 3.7 3.5 3.6 3.7 3.5 3.6 4.0 3.7 3.5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7.0 7.6 7.9 9.1 9.3 9.9 9.3 8.5 8.6 8.2 9.0 8.9 9.8 10.4 9.8 9.1 8.2 9.1 9.3 9.2 8.7 8.2 8.2 9.0 9.3 8.5 9.9 9.8 9.9 9.8 9.9 9.8 9.9 9.8 9.9 9.9	2.8 3.1 3.2 3.0 2.9 3.0 2.8 2.8 2.9 3.0 3.1 3.2 3.1 2.8 2.9 3.0 3.1 3.0 3.0 2.9 3.1 3.0 3.0 2.9 3.0 3.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1.9 2.0 1.8 1.7 2.0 2.1 2.2 2.3 2.3 2.5 2.2 2.2 2.2 2.2 2.3 2.2 2.2 2.3 2.2 2.2	1.6 1.6 1.7 2.2 2.4 2.8 3.0 2.5 2.3 2.5 2.3 2.5 2.4 2.2 2.0 2.2 2.4 2.9 2.6 2.7 2.6 2.3 2.5 2.5 2.4 2.9 2.6 2.7 2.6 2.7 2.6 2.7 2.7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1.2 1.1 0.9 1.1 1.3 1.1 1.1 1.1 1.3 1.1 1.1 1.3 1.6 1.6 1.6 1.2 1.4 1.5 1.2 1.3 1.6 1.5 1.6 1.1 1.1 1.1 1.1 1.1 1.1 1.1 1.1 1.1	2.1 2.2 2.5 3.3 3.4 3.3 2.9 2.9 3.1 2.9 2.7 2.9 3.2 3.3 3.4 3.9 3.9 3.9 3.9 3.0 2.9 3.1 2.9 3.1 2.9 3.1 2.9 3.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4.2 4.5 4.5 4.9 7.3 7.5 7.0 6.1 6.3 6.4 5.7 5.1 5.6 7.1 7.3 7.2 8.4 8.4 7.0 6.3 6.0 6.0 6.0 6.0 5.7 5.5 6.0 6.0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1.9 2.3 2.1 2.5 2.4 2.6 2.6 2.6 2.7 2.9 2.6 2.5 2.6 2.7 2.9 2.6 2.5 2.7 2.9 2.5 2.7 2.9 2.5 2.7 2.9 2.5 2.7 2.9 2.7 2.9 2.7 2.9 2.7 2.7 2.9 2.7 2.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3 1.1 1.2 1.6 1.7 1.8 1.9 1.9 2.2 2.0 1.9 2.0 1.8 1.9 2.2 2.1 1.9 2.0 2.3 1.8 1.9 2.0 2.3 1.8 2.0 2.1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 0.9 0.8 1.3 1.4 1.2 1.5 1.4 1.6 1.4 1.4 1.2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0.5 0.2 0.4 0.5 0.4 0.4 0.4 0.2 0.5 0.4 0.6 0.7 0.7 0.6 0.9 0.9 0.6 0.6 0.7 0.3 0.3 0.3 0.3 0.3

〈표 2-13〉성별·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8.1 7.3 4.7 4.1 2.9 2.6 3.1	8.9 8.1 5.1 4.5 3.8 4.3 4.5	8.7 8.1 6.6 5.8 4.9 4.9	5.0 4.7 3.2 3.3 2.9 2.7 2.6	3.9 3.4 2.1 1.8 1.4 1.5	7.3 6.8 4.2 4.0 3.1 3.8 3.9	8.2 6.9 5.1 4.8 4.4 4.8	4.8 4.1 2.9 2.8 2.7 3.4 3.3
2001.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3.2 3.3 3.6 2.8 2.7 2.6 2.6 2.4 2.8 2.7 3.3 2.8 3.3	4.1 4.0 4.4 3.6 3.5 3.5 4.5 4.0 4.1 4.6 4.7 4.2 4.3 5.0	5.3 5.3 4.9 4.6 4.6 5.5 5.3 5.2 4.6 4.7 4.6 4.3 4.2 3.9	3.0 3.0 3.3 3.0 2.6 2.9 2.9 2.8 2.7 2.5 2.8 2.6 2.6 2.3	1.6 1.5 1.8 1.3 1.3 1.5 1.2 1.6 1.7 1.9 1.6	3.5 3.8 4.1 2.9 2.7 2.7 3.9 3.7 4.0 4.5 3.5 3.8 3.7	4.7 4.1 5.1 4.7 3.9 5.9 5.0 4.3 4.2 5.6 5.5 4.3 3.7	2.7 2.2 3.4 2.6 2.5 2.5 3.9 3.6 2.8 3.1 4.2 3.4 2.8 2.8
2005. 1/4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1 12 12 11 11 11 11 11 11 11 11 11	3.7 2.4 2.5 2.4 2.8 2.5 2.6 2.5 2.3 2.6 2.8 3.0 2.6 2.5 2.5 3.1 3.4 3.5 2.6 2.7 3.1 3.7 3.4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5.1 3.2 3.4 3.7 4.6 4.7 4.3 3.9 4.0 4.1 4.3 4.0 4.1 4.5 4.8 5.0 4.7 4.3 4.2 4.1 4.5 4.8 4.8	4.6 4.9 5.4 5.2 5.8 5.2 5.3 5.5 5.4 4.8 4.5 4.7 4.6 4.6 4.6 4.8 3.6 3.7 4.9 3.9 4.1 4.0	2.6 2.6 2.8 3.0 2.8 2.4 3.3 3.0 2.7 2.7 2.6 2.8 2.8 2.7 2.5 2.2 2.4 2.9 3.0 2.7 2.7 2.6 2.8 2.7 2.5 2.2 2.4 2.9 3.0 2.7 2.7 2.7 2.7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0 1.2 0.9 1.2 1.7 1.7 1.2 1.5 1.3 1.2 1.6 1.6 1.7 1.5 1.7 1.9 1.8 1.8 1.6 1.6 1.7	4.5 2.4 2.6 2.8 4.3 4.1 3.5 3.7 3.5 3.8 4.1 3.5 3.7 3.9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5.3 3.6 4.0 4.1 3.8 4.8 6.1 6.7 5.2 4.5 4.2 4.9 3.8 4.7 4.2 3.7 6.7 6.3 6.2 5.9 4.4 4.6 4.7 3.8 3.8 3.8 3.8 3.8 3.8 3.8 3.8	3.4 2.5 2.8 2.2 2.5 3.2 4.1 4.3 3.5 3.8 3.5 3.0 2.9 2.6 3.1 3.5 2.7 2.7 5.1 4.1 3.1 2.9 2.5 3.2 2.6 4.1 2.7 2.7 2.7 2.7 2.7 2.7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005. 1 2 3 4	3.2 3.9 3.8 3.5 3.4	5.5 5.3 5.2 4.7 4.2	3.5 3.9 4.7 5.2 5.4	2.3 2.4 2.7 2.9 2.8	1.5 2.1 1.8 1.9 1.6	4.1 4.7 4.5 4.5 4.2	3.6 4.4 6.0 5.3 5.2	3.1 3.0 3.9 3.5 3.4

〈표 2-14〉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천명,%)

				(211.28, 70)
	당월입직(입직률)	신규채용(신규채용률)	당월이직(이직률)	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6.4 (1.78) 155.7 (2.75) 165.6 (2.89) 138.1 (2.34) 152.2 (2.52) 153.5 (2.39)	64.9 (1.34) 129.9 (2.29) 144.1 (2.52) 123.0 (2.08) 137.0 (2.27) 139.9 (2.18)	129.7 (2.68) 142.3 (2.51) 152.4 (2.66) 150.4 (2.55) 151.1 (2.50) 158.7 (2.47)	103.4 (2.13) 105.0 (1.85) 120.6 (2.10) 122.3 (2.07) 122,0 (2.02) 142.8 (2.22)
2001. 1/4 2/4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157.6 (2.65) 137.7 (2.32) 133.7 (2.27) 123.4 (2.11) 161.3 (2.68) 156.1 (2.59) 149.5 (2.48) 142.1 (2.35) 187.2 (2.90) 154.8 (2.40) 137.6 (2.14) 134.6 (2.17) 171.6 (2.17) 132.5 (2.11) 124.1 (1.99) 113.2 (1.82)	134.6 (2.26) 122.5 (2.07) 121.3 (2.06) 113.5 (1.94) 142.5 (2.37) 140.3 (2.32) 134.2 (2.22) 131.2 (2.17) 167.5 (2.60) 139.7 (2.17) 126.6 (1.97) 125.8 (1.97) 152.0 (2.42) 118.4 (1.88) 109.0 (1.75) 100.1 (1.61)	165.8 (2.79) 148.7 (2.51) 147.6 (2.51) 139.5 (2.39) 158.4 (2.63) 158.3 (2.62) 146.8 (2.43) 140.8 (2.33) 186.3 (2.89) 165.2 (2.56) 144.0 (2.24) 139.4 (2.18) 172.0 (2.73) 147.0 (2.34) 135.3 (2.17) 123.7 (1.99)	127.1 (2.14) 120.9 (2.04) 122.6 (2.08) 118.5 (2.03) 130.7 (2.17) 123.9 (2.05) 116.5 (1.93) 116.9 (1.94) 165.0 (2.56) 146.9 (2.28) 130.8 (2.04) 128.4 (2.01) 150.6 (2.39) 130.7 (2.08) 117.7 (1.89) 107.5 (1.73)
2002. 6 7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1 12 12 12 12 12 12 11 11 11 12 12	142.0 (2.35) 160.4 (2.66) 145.7 (2.41) 142.5 (2.36) 151.2 (2.51) 150.3 (2.49) 124.8 (2.06) 180.7 (2.80) 168.4 (2.61) 212.4 (3.29) 175.6 (2.72) 143.6 (2.22) 145.1 (2.26) 144.9 (2.26) 134.9 (2.10) 132.9 (2.07) 147.2 (2.30) 128.9 (2.02) 127.7 (2.00) 158.1 (2.51) 165.8 (2.63) 190.8 (3.03) 143.5 (2.28) 127.6 (2.03) 126.2 (2.01) 131.3 (2.10) 123.7 (1.98) 117.3 (1.88) 120.2 (1.93) 113.4 (1.83)	130.5 (2.16) 145.3 (2.41) 128.5 (2.13) 128.6 (2.13) 139.0 (2.30) 140.0 (2.32) 114.7 (1.90) 160.4 (2.49) 148.2 (2.30) 193.9 (3.01) 154.1 (2.39) 129.8 (2.01) 135.3 (2.10) 132.8 (2.07) 124.1 (1.93) 122.9 (1.92) 137.4 (2.15) 120.6 (1.89) 119.4 (1.87) 140.1 (2.22) 145.8 (2.32) 170.3 (2.71) 128.9 (2.05) 116.6 (1.85) 109.8 (1.75) 115.6 (1.85) 109.8 (1.71) 104.6 (1.68) 106.7 (1.71) 104.6 (1.68) 106.7 (1.71) 100.0 (1.61)	149.0 (2.47) 148.0 (2.46) 153.3 (2.54) 139.0 (2.30) 153.0 (2.53) 138.1 (2.29) 131.3 (2.17) 177.2 (2.67) 179.7 (2.78) 207.1 (3.21) 170.5 (2.64) 169.6 (2.63) 155.7 (2.42) 146.1 (2.27) 146.8 (2.29) 139.0 (2.17) 154.8 (2.42) 139.9 (2.19) 123.5 (1.98) 166.1 (2.63) 171.5 (2.72) 178.5 (2.84) 155.8 (2.47) 145.2 (2.31) 140.2 (2.23 142.6 (2.28) 140.6 (2.25) 122.7 (1.97) 133.3 (2.14) 126.3 (2.03)	114.2 (1.89) 115.0 (1.91) 121.5 (2.01) 113.0 (1.87) 126.6 (2.10) 116.6 (1.93) 107.6 (1.78) 146.6 (2.27) 158.9 (2.46) 189.5 (2.94) 148.0 (2.29) 148.0 (2.29) 144.5 (2.25) 131.8 (2.05) 133.4 (2.08) 127.3 (1.99) 143.0 (2.23) 128.1 (2.00) 114.2 (1.79) 148.8 (2.36) 144.7 (2.30) 158.4 (2.52) 136.3 (2.16) 127.7 (2.03) 128.1 (2.04) 123.5 (1.97) 122.5 (1.96) 107.2 (1.72) 113.2 (1.82) 111.3 (1.79)
12 2005. 1 2	106.0 (1.71) 128.6 (2.03) 127.1 (2.01)	93.7 (1.51) 109.8 (1.74) 102.2 (1.61)	111.4 (1.80) 120.6 (1.91) 155.2 (2.45)	97.9 (1.58) 104.3 (1.65) 130.3 (2.06)

주: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5〉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

	1ਜ	모	2π	모	3 11	모	4π	모	5π	모	6π	모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9 2000 2001 2002 2003	3.39 3.22 2.80 2.89 2.65	3.02 2.85 2.71 2.84 2.73	3.15 3.25 2.76 2.90 2.96	2.93 3.10 2.87 2.91 2.96	3.18 3.18 2.51 2.95 2.61	2.73 2.94 2.83 2.84 2.84	2.72 2.86 2.23 2.36 2.12	2.51 2.65 2.62 2.40 2.31	1.91 2.05 1.54 1.93 2.13	1.85 2.13 2.19 1.97 2.15	1.59 2.03 1.38 1.27 1.39	1.60 1.72 1.56 1.28 1.31
2001. 1/4 2/4 3/4 4/4 2002. 1/4 2/4 3/4 2003. 1/4 2/4 3/4 4/4 2004. 1/4 2/4 3/4 4/4	3.23 2.86 2.66 2.48 3.09 2.91 2.82 2.73 3.30 2.87 2.16 2.28 2.28 2.41 2.12 2.01	2.92 2.70 2.67 2.55 2.91 3.02 2.74 2.67 3.27 2.92 2.58 2.15 2.98 2.72 2.38 1.88	3.20 2.81 2.53 2.49 2.86 3.16 2.80 2.77 3.42 3.04 2.64 2.74 3.23 2.37 2.25 2.01	3.01 2.96 2.89 2.60 2.83 3.23 2.84 2.74 3.47 2.99 2.65 2.74 3.36 2.64 2.49 2.18	2.70 2.47 2.56 2.30 3.14 2.86 3.02 2.77 2.61 2.39 2.38 2.77 2.32 2.00 2.07	2.98 2.80 2.77 2.76 3.03 2.84 2.82 2.68 3.27 3.11 2.49 2.47 2.81 2.53 2.26 2.20	2.41 2.05 2.31 2.16 2.61 2.36 2.31 2.15 2.65 2.10 1.92 1.80 2.44 1.88 1.86 1.58	2.75 2.54 2.71 2.47 2.54 2.51 2.34 2.21 2.50 2.42 2.22 2.08 2.45 2.18 2.18 1.92	1.65 1.42 1.73 1.37 2.04 1.88 1.89 2.68 1.96 2.01 1.85 2.33 1.81 1.89 1.66	3.18 1.94 2.06 1.55 2.31 2.02 1.82 1.72 2.52 2.18 1.90 2.01 2.18 2.01 1.88 1.86	1.76 1.42 1.23 1.11 1.54 1.37 1.15 1.01 1.90 1.24 1.36 1.08 2.13 1.37 1.56 1.27	2.00 1.36 1.34 1.54 1.61 1.17 1.12 1.70 1.17 1.19 1.17 1.79 1.43 1.35 1.61
2002. 7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11 2.79 2.56 2.88 3.09 2.22 3.05 2.98 3.32 2.69 2.59 2.25 2.01 2.22 2.58 2.02 2.23 2.77 2.82 2.92 2.43 2.27 2.49 1.95 1.93 2.00 2.15 1.93 2.00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3.00 2.54 2.69 3.08 2.44 2.49 3.12 3.27 3.42 3.17 2.78 2.80 2.33 2.78 2.63 2.63 2.63 2.63 2.61 1.85 3.04 2.61 3.30 2.88 2.56 2.71 2.5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3.03 2.68 2.69 2.96 2.81 2.54 3.47 3.13 3.66 3.34 2.69 3.09 2.91 2.58 2.44 3.09 2.61 2.53 2.93 3.33 3.44 2.59 2.26 2.27 2.24 2.36 2.15 2.26 1.91 1.85	2.82 3.16 2.54 2.98 2.62 2.63 3.21 3.03 2.85 2.83 2.63 2.49 2.88 2.92 2.43 3.15 2.60 2.52 2.72 2.59 2.16 2.25 2.31 1.98	3.11 3.07 2.89 3.05 2.98 2.29 2.62 2.78 3.80 2.95 2.43 2.45 2.39 2.42 2.35 2.49 2.26 2.55 2.61 3.15 2.27 2.11 1.94 1.95 2.14 2.25 1.82	2.77 3.08 2.61 2.77 2.49 2.93 3.11 3.77 3.08 3.35 2.89 2.49 2.48 2.49 2.75 2.55 2.12 2.73 2.63 3.07 2.75 2.46 2.39 2.17 2.51 2.10 2.19 2.11 2.10 2.19 2.41 2.00	2.48 2.22 2.24 2.16 2.26 2.03 2.84 2.33 2.79 2.39 2.09 1.80 1.94 1.94 1.77 1.68 2.19 2.41 2.72 2.06 1.84 1.73 1.97 1.83 1.79 1.67 1.55 1.52	2.24 2.41 2.35 2.50 2.18 1.94 2.40 2.55 2.46 2.51 2.28 2.23 2.32 2.31 2.38 1.98 1.88 2.23 2.58 2.54 2.03 2.01 2.22 2.37 1.94 1.99 1.99 1.99	2.00 1.80 1.88 1.99 1.84 1.85 2.80 2.35 2.10 1.94 1.86 2.16 1.88 1.99 2.09 2.20 2.02 2.78 1.89 1.78 1.78 1.78 1.78 1.78 1.78 1.78 1.78	1.73 1.77 1.96 1.84 1.68 1.63 2.23 2.49 2.84 2.30 2.09 2.16 1.96 1.90 2.23 2.27 2.03 1.73 2.08 2.23 2.24 2.30 2.24 2.30 2.21 2.21 2.23 2.24 2.30 2.27 2.03 2.24 2.23 2.24 2.23 2.24 2.23 2.24 2.23 2.24 2.27 2.20 2.21 2.21 2.22 2.23 2.24 2.23 2.24 2.27 2.20 2.21 2.21 2.22 2.23 2.24 2.23 2.24 2.27 2.20 2.21 2.21 2.22 2.23 2.24 2.24 2.25 2.27 2.20 2.21 2.21 2.21 2.21 2.21 2.21 2.21	1.34 0.99 1.12 1.09 1.06 0.88 1.84 1.66 2.21 1.54 1.09 1.10 1.49 1.37 1.22 1.01 1.00 1.90 1.76 2.72 1.44 1.35 1.32 1.60 1.62 1.46 1.38 1.31 1.29	1.31 1.07 1.14 1.16 1.17 1.02 1.48 1.62 2.01 1.22 1.21 1.06 1.29 1.21 1.05 1.18 1.14 1.18 1.58 1.80 2.00 1.54 1.35 1.40 1.53 1.30 1.23 2.30 1.31 1.32 1.33 1.30 1.33 1.30 1.31 1.31 1.33 1.30 1.33 1.30 1.31 1.31

주: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이며,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 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6〉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천명)

	4 =		0-	7 -	0-	7 🗆	4-	7 🗆	r =	. –	(]	
	1규		27		37		41		5 11		6규	
1000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1998	26.2	23.3	26.7 41.0	36.3	26.6 40.0	37.4	18.0	26.3	4.1 5.5	8.3 5.3	10,9 17.9	21.5
1999 2000	24.3	21.5	43.0	38.2 41.0	40.0	34.4 39.9	25.0 29.1	23.1 26.9	5.5 5.7	6.0	20.3	18.0 17.2
2000	24.3	24.0	39.4	41.0	43.2 34.8	39.3	21.6	25.3	3.9	5.6	13.5	17.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2002	25.2	21.9	44.9	44.9	38.0	41.3	22.8	24.8	7.7	7.8	15.0	14.0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52.7	39.1 45.2	37.8	20.6	21.2 27.1	5.7	5.1	9.3	10.3 18.1
2003. 1/4 2/4	31.4 27.4	31.1 27.8	51.9 46.0	45.3	38.2	48.2 45.5	28.7 22.7	26.2	9.8 7.2	9.2 8.0	20.2 13.3	12.5
3/4	20.5	24.5	40.1	40.2	34.5	35.9	20.6	23.8	7.2	6.9	14.6	12.7
4/4	21.4	20.2	41.6	41.6	34.2	35.6	19.1	22.1	6.7	7.3	11.6	12.6
2004. 1/4	28.9	30.3	51.1	53.1	39.4	39.9	24.5	24.7	7.5	7.1	20.1	16.9
2/4	24.4	27.5	37.4	41.7	32.9	35.9	18.9	21.9	5.9	6.5	13.0	13.6
3/4	21.3	23.9	35.2	38.9	28.2	31.9	18.5	21.7	6.1	6.1	14.8	12.9
4/4	20.0	18.8	31.2	33.9	29.0	30.9	15.6	19.0	5.3	6.0	12.0	15.3
2002. 9	24.0	25.2	40.5	38.2	40.5	36.6	21.6	22.7	5.6	5.8	10.4	10.5
10	27.0 28.9	28.9 22.8	44.6 42.4	44.9 39.5	42.9 42.0	39.0 39.0	20.8 21.6	24.0 20.9	5.9 5.5	5.5 5.0	10.1 9.8	10.7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7	24.7 21.4	26.7 22.2	46.7 44.1	43.1 42.9	35.7 34.7	42.1 36.1	19.4 20.9	24.6 24.0	6.8 7.8	7.9 7.1	11.8 16.0	11.3 13.8
8	19.1	26.4	39.1	39.9	35.0	35.8	20.9	24.0	6.8	6.9	14.7	13.0
9	20.9	24.8	37.0	37.7	33.9	35.9	20.7	22.5	7.2	6.7	13.1	11.3
10	24.2	25.1	46.8	43.7	35.8	39.8	20.7	25.4	6.5	8.3	13.1	12.7
11	19.0	18.2	39.6	44.3	34.5	36.7	18.8	21.0	6.1	7.4	10.9	12.3
12	21.0	17.4	38.4	36.8	32.4	30.4	17.8	19.9	7.5	6.2	10.7	12.7
2004. 1	28.3	30.9	46.5	52.3	36.3	38.8	22.0	22.5	7.1	6.7	17.9	14.9
2 3	28.7 29.7	26.5 33.6	52.6 54.3	57.4 49.6	37.0 44.8	37.3 43.6	24.3 27.3	26.0 25.5	6.5 9.0	7.2 7.3	16.7 25.7	17.1 18.9
4	29.7 25.6	29.2	40.9	49.0	36.5	39.1	20.7	25.1	9.0 6.1	6.6	13.7	14.7
5	24.6	25.9	35.7	44.3	30.3	34.8	18.5	20.4	5.8	7.0	12.8	12.8
6	22.9	27.4	35.6	39.7	32.1	33.8	17.3	20.2	5.7	5.9	12.5	13.3
7	25.0	25.9	35.2	42.6	29.8	30.7	19.7	22.2	6.4	6.6	15.2	14.6
8	19.6	22.9	36.9	40.5	27.3	35.5	18.2	23.6	6.3	5.8	15.4	12.4
9	19.3	22.9	33.5	33.6	27.3	29.5	17.7	19.2	5.6	5.8	14.0	11.8
10	19.9	20.5	35.2	35.1	29.9	30.7	16.5	17.9	5.5	7.2	13.2	22.0
11	21.4	18.5	29.8	35.9	31.5	33.8	15.3	19.6	4.7	5.5	10.7	13.0
12 2005. 1	18.8 15.8	17.3 18.1	28.7 28.8	30.7 30.2	25.4 31.8	28.0 30.0	14.9 21.5	19.3 20.9	5.9 6.7	5.3 6.2	12.2 24.2	10.8 15.2
2005. 1	19.5	24.7	26.6 38.1	37.8	30.6	43.0	18.4	25.4	5.2	7.0	15.4	17.2
_	10.0	,,	50.1	57.0	50.0	10.0	10.4	20.4	0.2	7.0	10.4	

주: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¹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7〉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

	제크	조업	건설	설업	도=	소 매	숙박음	음식점	운수창		금융	보험	부동산	산임대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이직률		이직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79 2.75 2.88 2.14 2.56 2.38	2.90 2.47 2.59 2.45 2.54 2.52	2.55 3.38 3.44 2.91 2.93 2.76	3.33 2.87 3.36 3.28 2.87 2.68	1.87 3.22 3.29 2.82 2.65 2.48	3.36 3.06 3.18 2.86 2.70 2.72	1.35 3.62 3.16 2.94 3.46 3.11	3.15 3.28 3.18 3.15 3.41 3.20	1.71 2.33 2.64 2.14 2.26 1.97	2.04 2.02 2.13 2.49 2.25 2.31	1.38 2.20 2.02 1.76 1.89 1.75	2.18 2.06 2.05 2.04 1.84 1.73	2.32 3.19 3.81 3.44 3.33 3.36	3.07 3.20 3.43 3.27 3.29 2.83
2001.1/- 2/- 3/- 4/- 2002.1/- 2/- 3/- 4/- 2003.1/- 2/- 3/- 4/- 2004.1/- 2/- 3/- 3/- 3/- 3/- 3/- 3/- 3/- 3/- 3/- 3	4 2.20 4 2.07 4 2.09 4 2.39 4 2.56 4 2.57 4 2.76 4 2.42 4 2.15 4 2.18 4 2.55 4 2.33 4 2.33 4 2.33	2.52 2.50 2.35 2.45 2.59 2.66 2.42 2.43 2.92 2.66 2.22 2.28 2.49 2.38 2.07	3.08 2.96 2.82 2.75 3.33 3.22 2.53 2.73 3.35 2.70 2.45 2.56 3.21 2.54 2.60	3.98 3.47 3.10 2.55 3.29 3.18 2.66 2.48 3.18 2.73 2.39 2.43 3.23 2.87 2.39	3.28 2.81 2.68 2.52 2.65 2.62 2.70 2.66 3.01 2.57 2.00 2.34 2.87 2.24 2.01	2.93 2.86 2.88 2.79 2.62 2.85 2.59 2.95 2.98 2.58 2.36 3.07 2.39 2.16	3.33 3.07 2.33 3.04 3.37 3.67 3.40 3.12 3.19 2.83 3.15 3.27 2.72 2.86 2.69	3.63 3.04 2.90 3.03 3.19 3.77 3.47 2.92 3.26 3.62 2.99 3.62 3.69 3.40	2.10 2.08 2.19 2.17 2.53 2.36 2.24 2.09 2.28 1.99 1.81 1.78 1.92 1.81	2.68 2.38 2.50 2.38 2.21 2.28 2.31 2.13 2.25 2.50 2.07 2.42 2.09 2.16 1.91	2.47 1.49 1.82 1.25 2.12 2.05 2.11 1.37 2.33 1.84 1.45 1.39 2.37 1.68 1.54	2.65 1.85 1.98 1.66 2.02 1.91 1.85 1.69 2.47 1.81 1.50 1.14 2.55 1.51 1.91	4.08 3.23 3.33 3.14 3.62 3.46 3.21 3.18 3.67 3.53 3.58 3.15 3.17 1.86 1.76	3.50 3.32 3.21 3.05 3.24 3.27 3.42 3.20 3.84 3.31 3.24 3.11 3.40 2.37 2.31
2004.	9 2.41 0 2.67 1 2.70 2 2.23 1 2.63 2 2.63 2 3.16 4 2.69 5 2.22 6 2.34 7 2.25 8 2.05 9 2.05 9 2.05 9 2.05 9 2.05 9 2.05 9 2.05 9 2.198 1 2.29 2 2.53 2 2.53 2 2.53 2 2.53 3 3.16 1 2.20 2 2.05 9 2.0	2.15 2.29 2.61 2.43 2.71 2.83 3.23 2.66 2.70 2.15 2.30 2.15 2.30 2.36 2.30 2.36 2.30 2.36 2.30 2.36 2.30 2.36 2.30 2.31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7 2.19 2.85 2.59 2.74 3.58 3.32 3.15 3.18 3.01 1.92 2.24 2.19 2.23 3.40 3.13 3.08 2.42 2.41 2.75 2.65 2.42 1.80 2.55 2.55 2.42 1.80 2.55 2.55 2.55 2.55 2.57 2.57 2.57 2.57	2.09 2.05 2.64 2.25 2.89 3.21 3.43 3.40 2.89 1.91 3.03 1.95 2.18 2.36 2.36 2.36 2.36 2.92 2.71 2.81 2.93 2.81 2.56 1.81 1.93 2.37 2.71	1.83 2.49 2.74 2.87 2.36 3.34 3.01 2.69 3.12 2.03 2.55 2.28 1.80 1.93 2.94 1.98 2.09 2.37 2.07 1.77 2.23 2.04 2.28 1.77 2.20 2.29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2.13 2.53 3.01 2.28 2.19 2.64 3.23 3.46 2.95 2.54 2.63 2.79 2.30 2.73 2.43 1.91 3.27 2.50 3.43 2.65 2.65 2.65 2.10 2.12 2.35 2.12 2.35 2.12 2.35 2.12 2.35 2.13	2.63 3.81 3.99 2.91 2.46 2.15 3.12 4.30 3.23 2.53 2.53 2.53 2.52 4.35 2.93 2.92 3.02 2.63 3.25 2.21 2.60 2.83 2.63 2.25 2.21 2.63 2.83 2.83 2.83 2.84 2.92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	3.11 3.73 4.07 2.32 4.01 2.79 2.87 3.09 3.44 3.43 2.90 3.37 4.10 2.75 2.81 3.41 3.12 4.37 3.35 4.52 3.69 3.88 3.03 3.24 3.07 2.60	1.49 2.31 2.08 2.24 1.95 2.21 2.06 2.56 2.42 1.74 1.80 1.90 1.76 1.92 1.93 2.13 1.76 1.55 1.83 1.49 1.60 1.31 1.46 1.69 1.75	1.60 2.22 1.98 2.47 1.94 2.07 2.36 2.31 2.25 3.03 2.22 2.28 1.91 2.02 2.85 2.00 2.68 1.98 1.83 2.10 1.84 1.79 1.78 1.45 1.57 1.64	1.02 1.56 1.36 1.62 1.14 2.51 2.35 2.14 2.64 1.59 1.58 1.17 1.85 1.27 1.06 2.04 2.72 2.34 2.10 1.51 1.42 1.73 1.99 0.90 1.08 0.92 1.84	1.05 1.13 2.05 1.48 1.55 2.56 2.30 2.55 2.02 2.12 1.30 1.59 1.73 1.17 1.36 1.20 0.88 2.07 2.96 2.61 2.01 1.27 1.25 2.32 2.42 1.00 1.08 1.15 0.91 1.39	3.22 3.29 3.51 2.75 4.15 3.61 3.27 3.32 3.36 3.90 3.78 3.85 3.10 3.12 3.65 2.85 3.03 3.65 1.67 2.15 1.77 1.92 1.61 1.75 2.11 1.71 1.36 1.72	3.70 3.38 3.20 3.02 3.77 3.54 4.20 3.27 3.33 3.32 3.33 3.34 3.05 3.04 3.53 2.75 2.80 5.18 2.19 2.28 3.04 1.79 2.19 2.62 2.14 2.03 2.15 1.60 2.13

주: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도소매는 1999~2001년에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수리업, 2002년 이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의미. 부동산임대는 1999~2001년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02년 이후에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의미.

〈표 3-1〉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단위 : 천원/월, %)

		임 금	총 액	
		정 액 급 여	초 과 급 여	특 별 급 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44 (-) 1,668 (8.0) 1,752 (5.1) 1,948 (11.2) 2,127 (9.2) 2,255 (6.0)	1,102 (-) 1,182 (7.2) 1,257 (6.3) 1,408 (2.1) 1,532 (8.8) 1,636 (6.8)	117 (-) 133 (14.1) 131 (-1.6) 126 (-3.9) 135 (7.3) 137 (1.7)	325 (-) 352 (8.5) 365 (3.4) 413 (13.4) 460 (11.4) 482 (4.6)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384 (35.3) 1,962 (-2.7) 1,962 (8.7) 2,012 (8.1) 1,866 (9.0) 2,168 (8.1) 2,072 (6.9) 2,144 (12.8) 2,282 (6.6) 2,034 (7.9) 1,939 (9.0) 2,710 (5.7) 2,388 (0.2)	1,502 (9.0) 1,467 (9.0) 1,514 (9.1) 1,503 (8.6) 1,519 (8.5) 1,520 (8.4) 1,531 (8.3) 1,536 (8.9) 1,543 (8.6) 1,545 (8.2) 1,553 (9.0) 1,652 (9.7) 1,619 (7.8)	128 (10.9) 124 (11.3) 131 (6.3) 131 (4.1) 138 (8.0) 137 (7.7) 128 (0.2) 134 (4.8) 139 (9.3) 148 (10.1) 143 (9.7) 143 (5.8) 131 (2.0)	754 (181.1) 371 (-33.8) 317 (7.8) 379 (7.5) 209 (13.5) 511 (7.3) 414 (3.8) 475 (30.5) 600 (1.1) 341 (5.9) 243 (8.6) 915 (-0.9) 639 (-15.3)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088 (6.4) 2,078 (5.9) 2,109 (4.8) 1,989 (6.6) 2,247 (3.6) 2,256 (8.9) 2,220 (3.5) 2,495 (9.3) 2,145 (5.5) 2,045 (5.5) 3,007 (11.0) 2,273 (-4.8)	1,571 (7.1) 1,605 (6.1) 1,598 (6.3) 1,616 (6.4) 1,624 (6.9) 1,639 (7.0) 1,638 (6.6) 1,652 (7.0) 1,653 (7.0) 1,659 (6.8) 1,757 (6.4) 1,752 (8.2)	134 (7.7) 131 (-0.2) 136 (4.2) 142 (3.1) 137 (0.1) 133 (4.0) 136 (1.8) 141 (1.6) 148 (0.0) 142 (-1.0) 140 (-2.1) 140 (6.9)	383 (3.3) 341 (7.8) 375 (-1.0) 232 (10.7) 486 (-4.9) 484 (17.1) 447 (-5.9) 702 (17.1) 344 (0.9) 245 (0.8) 1,110 (21.3) 382 (-40.2)
2	2,524 (20.9)	1,701 (8.3)	138 (3.7)	684 (78.4)

주: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단위 : 천원/월, %)

		임 금	총 액	
		정 액 급 여	초 과 급 여	특 별 급 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43 (-) 1,568 (8.6) 1,659 (5.8) 1,857 (11.9) 2,018 (8.7) 2,209 (9.5)	963 (-) 1,024 (6.4) 1,095 (6.9) 1,266 (15.6) 1,372 (8.4) 1,485 (8.3)	179 (-) 205 (14.6) 204 (-0.6) 197 (-3.4) 205 (4.2) 219 (6.6)	301 (-) 338 (12.4) 361 (6.7) 395 (9.4) 441 (11.7) 505 (14.6)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2,315 (41.4) 1,831 (-5.6) 1,808 (9.2) 1,882 (8.0) 1,713 (6.9) 2,033 (7.2) 1,966 (4.9) 2,059 (12.9) 2,146 (5.9) 1,963 (6.9) 1,781 (10.8) 2,722 (3.2) 2,307 (-0.3) 2,041 (11.5) 1,975 (9.2) 2,035 (8.1) 1,863 (8.8) 2,175 (7.0) 2,239 (13.9) 2,131 (3.5) 2,441 (13.8) 2,088 (6.4) 1,916 (7.6) 3,311 (21.6)	1,348 (10.1) 1,294 (8.9) 1,369 (10.1) 1,341 (8.5) 1,354 (7.7) 1,356 (7.9) 1,364 (7.6) 1,376 (8.5) 1,385 (7.9) 1,395 (7.0) 1,391 (8.5) 1,495 (8.5) 1,466 (8.8) 1,410 (9.0) 1,469 (7.3) 1,449 (8.0) 1,464 (8.2) 1,470 (8.4) 1,474 (8.1) 1,483 (7.8) 1,507 (8.8) 1,510 (8.3) 1,511 (8.6) 1,612 (7.9)	198 (10.8) 187 (9.8) 201 (0.6) 201 (0.6) 201 (0.6) 213 (4.9) 205 (3.3) 190 (-4.7) 202 (0.0) 208 (6.6) 228 (8.7) 216 (6.9) 213 (4.0) 199 (0.1) 205 (9.7) 210 (4.4) 221 (10.0) 230 (8.1) 218 (6.4) 211 (10.8) 218 (8.2) 227 (9.3) 238 (4.5) 227 (5.0) 221 (3.9)	769 (227.3) 351 (-39.7) 237 (12.5) 340 (10.7) 146 (2.3) 472 (6.8) 412 (1.1) 482 (35.2) 553 (1.1) 341 (5.0) 174 (41.8) 1,015 (-3.8) 642 (-16.5) 426 (21.5) 296 (24.6) 366 (7.4) 169 (15.7) 487 (3.2) 554 (34.4) 430 (-10.8) 707 (27.9) 340 (-0.1) 178 (2.3) 1,478 (45.6)
2005. 1 2	2,200 (-4.7) 2,607 (27.7)	1,606 (9.5) 1,539 (9.2)	232 (16.8) 224 (9.2)	362 (-43.7) 844 (98.1)

주: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3〉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 천원/월)

	전산업		제 2	조 업	건설	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27 1,544 1,668 1,752 1,948 2,127 2,255	276 325 352 365 413 460 482	1,284 1,443 1,568 1,659 1,857 2,018 2,209	234 301 338 361 395 441 505	1,502 1,576 1,701 1,687 1,859 2,072 2,130	166 245 274 221 251 278 274	- - - 1,714 1,861 1,932	- - - 305 349 339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2,384 1,962 1,962 2,012 1,866 2,168 2,072 2,144 2,282 2,034 1,939 2,710 2,388 2,088 2,078 2,109 1,989 2,247 2,256 2,220 2,495 2,145 2,045 3,007	754 371 317 379 209 511 414 475 600 341 243 915 639 383 341 375 232 486 484 447 702 344 245 1,110	2,315 1,831 1,808 1,882 1,713 2,033 1,966 2,059 2,146 1,963 1,781 2,722 2,307 2,041 1,975 2,035 1,863 2,175 2,239 2,131 2,441 2,088 1,916 3,311	769 351 237 340 146 472 412 482 553 341 174 1,015 642 426 296 366 169 487 554 430 707 340 178 1,478	2,312 1,947 1,918 1,925 1,826 2,061 2,048 2,067 2,313 1,976 1,979 2,501 2,368 2,102 1,971 2,030 1,924 2,102 2,160 2,019 2,428 1,980 1,964 2,508	591 264 166 174 78 266 258 254 461 127 100 593 453 218 177 225 76 256 308 167 575 115 113 602	2,014 1,700 1,746 1,735 1,640 1,887 1,772 1,923 2,017 1,773 1,677 2,453 1,986 1,752 1,883 1,772 1,718 1,938 1,970 1,825 2,230 1,828 1,765 2,529	563 238 264 257 142 371 265 409 490 246 144 797 419 229 326 211 135 349 379 221 625 219 152 819	
2005. 1 2	2,273 2,524	382 684	2,200 2,607	362 844	2,024 2,235	181 410	1,874 2,064	247 440	

주: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4〉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천원/월)

	5~!	9인	10~2	29인	30~9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 ! 이상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192 1,274 1,344 1,466 1,543 1,642	(59.0) (58.0) (58.1) (53.9) (50.7) (49.3)	1,376 1,497 1,606 1,705 1,808 1,945	(68.1) (68.2) (69.4) (62.7) (59.4) (58.5)	1,439 1,567 1,680 1,856 2,005 2,124	(71.3) (71.4) (72.6) (68.3) (65.9) (63.9)	1,561 1,713 1,785 2,067 2,230 2,387	(77.3) (78.0) (77.2) (76.0) (73.3) (71.8)	1,794 1,973 2,135 2,357 2,474 2,683	(88.8) (89.9) (92.3) (86.7) (81.3) (80.7)	2,195 2,313 2,718 3,0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648 1,424 1,455 1,450 1,441 1,547 1,581 1,543 1,672 1,495 1,482 1,781 1,767 1,525 1,559 1,560 1,548 1,628 1,699 1,584 1,809 1,555 1,555	(43.5) (49.2) (54.1) (51.8) (60.9) (49.6) (56.5) (50.0) (51.3) (51.5) (59.6) (41.1) (51.4) (48.1) (53.4) (51.8) (60.6) (50.1) (51.4) (49.2) (50.1) (49.6) (56.9)	1,945 1,939 1,677 1,748 1,695 1,687 1,800 1,798 1,820 1,953 1,694 1,712 2,180 2,068 1,798 1,845 1,785 1,838 1,926 1,941 2,016 2,161 1,836 1,839	(51.2) (58.0) (65.0) (60.5) (71.3) (57.7) (64.3) (59.1) (60.0) (58.3) (60.1) (56.8) (63.2) (59.3) (72.0) (59.3) (5	2,124 2,252 1,761 1,884 1,880 1,827 2,037 2,002 2,010 2,173 1,901 1,864 2,468 2,327 1,907 2,008 1,993 1,925 2,133 2,144 2,040 2,404 2,404 2,018 1,984	(59.5) (60.9) (70.1) (67.1) (77.2) (65.3) (71.6) (65.2) (66.7) (65.5) (74.9) (56.9) (67.6) (60.2) (68.7) (66.2) (75.4) (65.7) (64.9) (63.3) (66.6) (64.4) (73.3)	2,363 2,061 2,027 2,204 1,966 2,322 2,168 2,253 2,337 2,162 2,112 2,797 2,484 2,197 2,186 2,314 2,132 2,434 2,329 2,331 2,635 2,296 2,205	(62.4) (71.3) (75.4) (78.7) (83.1) (74.5) (77.5) (73.1) (71.8) (74.4) (84.9) (64.5) (72.2) (69.3) (74.8) (76.8) (83.5) (75.0) (70.5) (72.4) (73.0) (73.2) (81.4)	2,671 2,351 2,161 2,448 2,111 2,589 2,362 2,515 2,621 2,418 2,233 3,221 2,816 2,576 2,343 2,635 2,287 2,707 2,694 2,680 2,892 2,629 2,440	(70.5) (81.3) (80.4) (87.4) (89.2) (83.0) (84.5) (81.6) (80.5) (83.2) (89.7) (74.3) (81.9) (81.3) (80.2) (87.5) (89.6) (83.4) (81.5) (83.2) (80.1) (83.9) (90.1)	3,786 2,892 2,689 2,366 3,119 2,797 3,082 3,257 2,905 2,488 4,338 3,440 3,168 2,921 3,012 2,553 3,247 3,304 3,221 3,610 3,135	(100.0) (100.0)
12 2005. 1 2	1,926 1,710 1,833	(34.3) (51.5) (46.4)	2,295 2,043 2,150	(40.9) (61.6) (54.4)	2,617 2,152 2,283	(46.7) (64.9) (57.8)	3,117 2,295 2,650	(55.6) (69.2) (67.1)	3,504 2,570 2,981	(62.5) (77.5) (75.5)	3,317	(100.0) (100.0) (100.0)

주: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500인 이상 대비 임금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5〉 성별·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남성=100)	정액급여	(남성=1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79 1,735 1,885 1,976 2,193 2,406 2,558	1,157 1,226 1,320 1,400 1,574 1,715 1,830	1,006 1,090 1,178 1,257 1,393 1,501 1,579	(63.7) (62.8) (62.5) (63.6) (63.5) (62.4) (61.8)	755 808 870 940 1,035 1,119 1,201	(65.2) (65.9) (65.9) (67.2) (65.8) (65.3) (65.6)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2,684 2,226 2,220 2,278 2,100 2,450 2,334 2,433 2,576 2,298 2,188 3,094 2,704 2,371 2,353 2,389 2,234 2,542 2,555	1,683 1,642 1,697 1,683 1,701 1,701 1,713 1,718 1,726 1,728 1,737 1,857 1,817 1,757 1,800 1,788 1,807 1,818 1,832	1,711 1,369 1,381 1,418 1,342 1,534 1,485 1,495 1,619 1,441 1,379 1,843 1,686 1,458 1,464 1,487 1,444 1,587 1,589	(63.7) (61.5) (62.2) (62.3) (63.9) (62.6) (63.6) (61.4) (62.8) (62.7) (63.0) (59.6) (62.3) (61.5) (62.2) (62.2) (64.6) (62.4) (62.2)	1,095 1,073 1,101 1,099 1,111 1,114 1,123 1,126 1,133 1,133 1,139 1,189 1,179 1,157 1,173 1,174 1,189 1,193 1,208	(65.1) (65.4) (65.3) (65.3) (65.5) (65.6) (65.6) (65.7) (65.5) (64.0) (64.9) (65.8) (65.2) (65.7) (65.8) (65.6) (65.6)
8 9 10 11 12 2005. 1	2,529 2,827 2,418 2,298 3,477 2,562 2,868	1,832 1,848 1,846 1,852 1,970 1,964 1,901	1,532 1,753 1,534 1,479 1,949 1,623 1,749	(60.6) (62.0) (63.4) (64.4) (56.1) (63.3) (61.0)	1,204 1,213 1,222 1,226 1,276 1,274 1,252	(65.7) (65.6) (66.2) (66.2) (64.8) (64.9) (65.8)

주: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6〉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노동부 조사)

(단위 :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6.6 (-) 204.8 (-0.9) 202.4 (-1.2) 199.6 (-1.4) 198.2 (-0.7) 197.2 (-0.5)	184.0 (-) 181.4 (-1.4) 182.1 (0.4) 181.6 (-0.3) 180.6 (-0.6) 180.5 (-0.1)	22.6 (-) 23.4 (-3.5) 20.4 (-12.8) 18.0 (-11.8) 17.6 (-2.2) 16.7 (-5.1)
2004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197.2 (-0.5) 200.0 (-3.1) 187.2 (8.5) 200.8 (-0.4) 202.7 (-0.2) 197.9 (-5.8) 196.1 (1.4) 202.1 (-0.6) 193.8 (-3.1) 186.0 (-1.8) 206.7 (-0.5) 199.3 (-3.7) 205.8 (2.7) 182.5 (-8.8) 191.7 (2.4) 204.8 (2.0) 198.6 (-2.0) 191.9 (-3.0) 204.4 (4.2) 202.0 (0.0) 197.3 (1.8) 184.3 (-0.9) 199.9 (-3.3) 203.4 (2.1) 205.4 (-0.2) 197.1 (8.0)	180.5 (-0.1) 182.4 (-3.4) 170.8 (7.1) 182.9 (-0.2) 185.3 (0.3) 179.6 (-6.3) 178.4 (1.8) 185.4 (0.2) 176.7 (-2.8) 168.7 (-1.7) 187.6 (-0.6) 181.3 (-3.9) 188.1 (3.4) 166.4 (-8.8) 175.2 (2.6) 188.1 (2.8) 181.7 (-1.9) 174.3 (-3.0) 187.7 (5.2) 185.9 (0.3) 180.9 (2.4) 167.8 (-0.5) 182.4 (-2.8) 186.8 (3.0) 189.2 (0.6) 180.0 (8.2)	16.7 (-5.1) 17.6 (1.7) 16.4 (2.5) 17.9 (-3.2) 17.5 (-5.4) 18.3 (0.0) 17.7 (-8.7) 16.8 (-6.0) 17.1 (-1.7) 17.3 (0.5) 19.0 (-1.1) 18.0 (-4.9) 17.6 (-8.5) 16.1 (0.6) 16.5 (-6.7) 16.7 (-3.4) 16.9 (-3.8) 17.6 (-5.6) 16.7 (-4.2) 16.1 (-4.7) 16.3 (-7.9) 16.5 (-7.8) 17.5 (-7.4) 16.6 (5.6) 16.3 (-4.2) 17.0
2003.	166.1 (-13.4)	150.3 (-14.2)	15.8

주: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7〉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노동부 조사)

(단위 : 시간/월)

	전 체	정 상	÷ =
		0 0	초 과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16.0 (-) 213.1 (-1.3) 208.7 (-2.1) 206.4 (-1.1) 205.9 (-0.2) 205.0 (-0.4)	182.7 (-) 179.8 (-1.6) 178.9 (-0.5) 177.7 (-0.7) 177.9 (0.1) 177.3 (-0.3)	33.3 (-) 33.3 (0.0) 29.8 (-10.5) 28.7 (-3.7) 28.0 (-2.4) 27.7 (-1.1)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07.3 (-2.0) 194.0 (9.4) 209.5 (0.4) 211.8 (0.0) 206.5 (-5.1) 204.9 (1.6) 207.0 (-1.3) 197.8 (-3.0) 193.5 (-0.9) 215.7 (0.4) 208.9 (-3.2) 214.0 (2.6) 189.4 (-8.6) 199.5 (2.8) 213.4 (1.9) 207.5 (-2.0) 201.9 (-2.2) 212.1 (3.5) 209.5 (1.2) 200.2 (1.2) 193.1 (-0.2) 208.4 (-3.4) 212.3 (1.6) 213.0 (-0.5) 205.6 (8.6) 171.4 (-14.1)	179.3 (-3.1) 168.0 (10.1) 180.6 (1.2) 183.8 (1.2) 177.2 (-5.7) 177.1 (2.5) 180.8 (0.2) 170.8 (-2.3) 166.2 (-0.7) 184.9 (0.2) 180.0 (-3.5) 186.3 (3.8) 163.6 (-8.8) 172.9 (2.9) 185.2 (2.5) 178.8 (-2.7) 172.0 (-2.9) 184.3 (4.1) 182.7 (1.1) 173.0 (1.3) 165.4 (-0.5) 178.8 (-3.3) 184.5 (2.5) 186.3 (0.0) 177.4 (8.4) 145.8 (-15.7)	28.0 (6.1) 26.0 (5.3) 28.8 (-4.3) 28.1 (-6.3) 29.3 (-1.0) 27.7 (-3.8) 26.2 (-10.6) 27.0 (-6.9) 27.3 (-1.8) 30.8 (1.7) 28.9 (-0.7) 27.7 (-4.8) 25.9 (-7.5) 26.6 (2.3) 28.3 (-1.7) 28.8 (2.5) 29.9 (2.0) 27.8 (0.4) 26.8 (2.3) 27.2 (0.7) 27.6 (1.1) 29.7 (-3.6) 27.8 (-3.8) 26.7 (-3.6) 28.2 (8.9) 25.7 (-3.4)

주: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8〉 산업별 취업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통계청 조사)

(단위 : 시간/주)

	전산업	제 조 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9	50.4 (-)	50.6 (-)	47.5 (-)	52.2 (-)
2000	50.6 (0.4)	51.0 (0.8)	48.3 (1.7)	52.0 (-0.4)
2001	50.4 (-0.4)	50.6 (-0.8)	48.7 (0.8)	51.7 (-0.6)
2002	49.8 (-1.2)	50.0 (-1.2)	48.2 (-1.0)	51.2 (-1.0)
2003	49.1 (-1.4)	49.6 (-0.8)	47.2 (-2.1)	50.3 (-1.8)
2004	48.7 (-0.8)	49.6 (0.0)	45.7 (-3.2)	49.8 (-1.0)
2003. 3	49.6 (-1.9)	50.8 (-0.9)	47.7 (-3.0)	51.3 (-1.9)
4	50.1 (-1.7)	50.6 (-1.3)	48.0 (-4.2)	51.4 (-1.8)
5	50.8 (-0.8)	50.6 (-1.1)	49.5 (0.4)	51.4 (-1.7)
6	50.6 (0.8)	50.2 (2.7)	48.8 (-0.9)	51.4 (0.6)
7	47.4 (-2.2)	46.6 (-2.2)	43.9 (-5.5)	48.8 (-1.8)
8	45.2 (-2.6)	44.8 (-3.8)	43.9 (-0.5)	45.8 (-3.7)
9	49.3 (-2.2)	49.4 (-2.1)	47.0 (-5.1)	50.3 (-2.4)
10	50.1 (-1.6)	50.2 (-1.4)	49.1 (-1.2)	50.8 (-1.9)
11	49.4 (-1.4)	50.0 (-1.4)	47.5 (-3.8)	50.8 (-1.6)
12	49.0 (-1.0)	50.1 (0.0)	46.8 (-2.9)	50.7 (-1.7)
2004. 1	48.2 (-1.2)	50.2 (-1.0)	45.5 (-3.4)	49.8 (-1.4)
2	48.5 (-1.2)	49.9 (-1.4)	45.5 (-3.4)	50.0 (-1.8)
3	49.4 (-0.4)	50.2 (-1.2)	46.4 (-2.7)	50.9 (-0.8)
4	47.8 (-4.6)	47.5 (-6.1)	45.9 (-4.4)	48.8 (-5.1)
5	49.6 (-2.4)	49.9 (-1.4)	46.4 (-6.3)	50.4 (-1.9)
6	49.6 (-2.0)	49.9 (-0.6)	46.2 (-5.3)	50.4 (-1.9)
7	47.3 (-0.2)	47.6 (2.1)	42.1 (-4.1)	48.8 (0.0)
8	47.7 (5.5)	49.3 (10.0)	44.2 (0.7)	48.5 (5.9)
9	49.1 (-0.4)	50.7 (2.6)	45.6 (-3.0)	49.9 (-0.8)
10	49.6 (-1.0)	50.4 (0.4)	47.2 (-3.9)	50.1 (-1.4)
11	48.9 (-1.0)	49.9 (-0.2)	46.8 (-1.5)	50.0 (-1.6)
12	48.5 (-1.0)	49.7 (-0.8)	45.8 (-2.1)	50.0 (-1.4)
2005. 1	47.0 (-2.5)	49.1 (-2.2)	42.9 (-5.7)	48.6 (-2.4)
2	47.3 (-2.5)	49.5 (-0.8)	41.7 (-8.4)	49.1 (-1.8)
3	48.3 (-2.2)	50.0 (-0.4)	44.3 (-4.5)	49.8 (-2.2)

주: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에 대한 평균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³⁾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 · 숙박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표 4-1〉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니버스테	지 부	분 회	노 동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노조)	조합원수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	318	948,134
1981	2,158	1	16	2,1	41	966,738
1982	2,208	1	16	2,1	91	984,136
1983	2,255	1	16		238	1,009,881
1984	2,382	1	16		365	1,010,522
1985	2,551	1	16	,	534	1,004,398
1986	2,675	1	16		5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 · · · · · · · · · · · · · · · · · ·	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86	1,267,457
1988	6,164	1	21	· · · · · · · · · · · · · · · · · · ·	42	1,707,456
1989	7,883	1	21	7,8		1,932,415
1990	7,698	1	21	· · · · · · · · · · · · · · · · · · ·	376	1,886,884
1991	7,656	1	21	,	34	1,803,408
1992	7,527	1	21	,	505	1,734,598
1993	7,147	1	26	,	20	1,667,373
1994 1995	7,025 6,606	1 1	26 26	· · · · · · · · · · · · · · · · · · ·	998	1,659,011
		1		· · · · · · · · · · · · · · · · · · ·	579 207	1,614,800
1996 1997	6,424	1	26 40	,	397 202	1,598,558
1997	5,733 5,560	1	40 42	,	692 517	1,484,194
1999	5,637	2	42	· · · · · · · · · · · · · · · · · · ·	592	1,401,940 1,480,666
2000	5,698	2	43 44	,	92 652	1,526,995
2000	6,150	2	44	· · · · · · · · · · · · · · · · · · ·	03	1,568,723
2001	6,506	2	43 41		163	1,538,499
2002	6,257	2	41	· · · · · · · · · · · · · · · · · · ·	юз 12	1,536,499
2000	0,237	2	40	0, 1	14	1,043,343

주: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표 4-2〉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단위:개소, 명)

				, , , , , ,
연 맹 별	조합수		조합원수	
12 75 72	고입구	전 체	남 자	여 자
총 계	6,257	1,549,949	1,223,330	326,619
소 계	3,951	831,660	664,981	166,6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63	3,891	2,935	956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175	34,457	15,938	18,519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3	5,576	5,283	293
전국전력노동조합	3	14,421	12,640	1,781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43	20,016	14,587	5,429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58	14,521	12,330	2,19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59	29,539	28,242	1,29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64	27,833	27,670	16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84,083	58,285	25,798
저구다베이사ㄴ도ㅈ하	4	6,469	5,556	913
한 전국함에전남도중조합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664	87,585	68,185	19.40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653	113,538	88,919	24,619
국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638	77,599	60,642	16,957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60	3,448	2,504	944
지크지도하나 도구하시에	556	80,797	2,504 79,425	1,372
노 선국사동자노동소합연맹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155	16,680	,	,
			10,181	6,499
전국체신노동조합	3	22,535	16,984	5,551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503	95,958	94,939	1,019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16	8,159	6,965	1,194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	4	2,170	1,494	676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9	16,657	11,226	5,431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40	1,054	975	79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18	7,087	5,691	1,396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22	16,016	14,502	1,51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11 23	4,527	1,257	3,270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2,568	1,720	848
한국교원노동조합	1 52	25,060	9,960	15,100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9,416	5,946	3,470
소 계	1,332	673,880	523,419	150,4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131	11,122	7,017	4,10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14	69,393	46,808	22,58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56	19,491	18,261	1,230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민 전국공공유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16	42,522	12,616	29,906
	217	136,868	119,243	17,62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188	30,883	27,222	3,661
주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지구시성광기 등 지원성맹	13	4,150	3,813	33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30	1,291	1,146	14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노 정크고소사업 등 조합업명	72	26,493	26,359	134
신국급곡산업도공소업연맹	172	175,730	167,605	8,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95,000	45,600	49,400
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20	2,894	253	2,64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06	33,469	32,063	1,406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86	12,243	6,194	6,049
전국대학노동조합	8	9,848	6,736	3,112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1	1,633	1,633	0
한국비정규노동조합	1	850	850	0
상급단체 미가입	974	44,409	34,930	9,479

주:1) 조합수에는 지부 · 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²⁾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표 4-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조 직 률(A)			조 직 률(B)		포지르(O)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조직률(C)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1	21.9	13.8	15.4	18.5	10.4	17.2
1992	17.8	21.1	11.8	14.6	17.9	9.1	16.4
1993	16.9	20.2	11.0	14.0	17.2	8.7	15.6
1994	16.1	19.6	9.9	13.3	16.6	7.9	14.5
1995	15.1	18.5	9.2	12.5	15.7	7.3	13.8
1996	14.5	18.2	8.3	12.1	15.5	6.6	13.3
1997	13.3	17.3	6.9	11.1	14.7	5.5	12.2
1998	13.7	17.6	6.8	11.4	15.2	5.3	12.6
1999	14.7	18.4	8.3	11.7	15.4	6.1	11.9
2000	14.3	18.3	7.6	11.4	15.3	5.7	12.0
2001	14.2	18.5	7.1	11.5	15.7	5.4	12.0
2002	13.5	17.9	6.7	10.8	14.9	5.1	11.0
2003	13.0	17.1	6.8	10.8	14.5	5.5	11.0

주: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자료 :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표 4-4〉 주요 노사분규 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2002 2003 2004	234 235 144 121 88 85 78 129 198 250 235 322 320 462	175,089 105,034 108,577 104,339 49,717 79,495 43,991 146,065 92,026 177,969 88,548 93,859 137,241 184,969	3,271,334 1,527,612 1,308,326 1,484,368 392,581 892,987 444,720 1,452,096 1,366,281 1,893,563 1,083,079 1,580,404 1,298,663 1,197,201
2002. 1 2 2 3 4 5 6 7 8 8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1 12 2004. 1 2 3 4 5 6 7 7 8 9 10 11 11 12 2004. 1 2 3 4 5 1 6 1 7 1 7 1 8 1 7 1 8 1 7 1 8 1 7 1 8 1 7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2 21 30 40 172 207 234 250 264 279 292 322 11 17 25 56 81 118 256 276 290 302 308 320 7 10 18 27 75 320 402 413 433 444 453 462 9 13	1,272 16,615 17,531 18,021 46,148 65,334 80,245 82,841 86,089 89,837 91,664 93,859 1,324 2,382 5,214 9,211 13,954 58,478 123,144 124,205 126,992 131,363 131,775 137,241 20,023 20,083 21,082 28,708 35,475 128,952 151,703 168,602 180,940 182,252 183,263 184,969 830 1,630 11,821	31,160 80,394 212,450 240,565 395,669 764,817 1,110,896 1,262,183 1,380,973 1,462,300 1,537,918 1,580,404 18,445 28,041 67,195 91,460 116,564 245,832 806,964 1,084,443 1,148,515 1,215,811 1,270,270 1,298,663 32,902 54,455 67,267 88,288 138,423 406,057 876,228 1,010,149 1,065,694 1,114,833 1,160,000 1,197,201 15,578 34,390 66,468
4	31	12,415	107,130

주: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자료:노동부.

〈표 4-5〉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전 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 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8(100.0) 85(100.0) 78(100.0) 129(100.0) 198(100.0) 250(100.0) 235(100.0) 322(100.0) 320(100.0)	-(0.0) 1(1.2) 3(3.8) 23(17.8) 22(11.1) 7(2.8) 6(2.6) 2(0.6) 5(1.6)	33(37.5) 19(22.4) 18(23.1) 28(21.7) 40(20.2) 47(18.8) 59(25.1) 44(13.7) 43(13.4)	1(1.1) -(0.0) -(0.0) 3(2.3) -(0.0) 2(0.8) -(0.0) 8(2.5) -(0.0)	49(55.7) 62(72.9) 51(65.4) 57(44.2) 89(44.9) 167(66.8) 149(63.4) 249(77.3) 249(77.8)	5(5.7) 3(3.5) 6(7.7) 10(7.8) 47(23.7) 27(10.8) 21(8.9) 19(5.9) 23(7.2)
2004	462(100.0)	3(0.6)	56(12.1)	-(0.0)	386(83.5)	17(3.7)

주:()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4-6〉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건,%)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995	88(100.0)	21(23.9)	27(30.7)	28(31.8)	12(13.6)
1996	85(100.0)	13(15.3)	25(29.4)	23(27.1)	24(28.2)
1997	78(100.0)	19(24.4)	26(33.3)	19(24.4)	14(17.9)
1998	129(100.0)	27(20.9)	35(27.1)	34(26.4)	33(25.6)
1999	198(100.0)	44(22.2)	55(27.8)	38(19.2)	61(30.8)
2000	250(100.0)	72(28.8)	58(23.2)	65(26.0)	55(22.0)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2003	320(100.0)	94(29.4)	124(38.8)	61(19.1)	41(12.8)
2004	462(100.0)	187(40.5)	150(32.5)	69(14.9)	56(12.1)

주:()안은 구성비임.

〈표 4-7〉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건,%)

	전 산 업	제 조 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 산업
1995	88(100.0)	57(64.8)	8(9.1)	9(10.2)	5(5.7)	9(10.2)
1996	85(100.0)	56(65.9)	8(9.4)	5(5.9)	9(10.6)	7(8.2)
1997	78(100.0)	42(53.8)	14(17.9)	4(5.1)	11(14.1)	7(9.0)
1998	129(100.0)	72(55.8)	37(28.7)	8(6.2)	9(7.0)	3(2.3)
1999	198(100.0)	116(58.6)	26(13.1)	21(10.6)	22(11.1)	13(6.6)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7.2)	43(18.3)	20(8.5)
2002	322(100.0)	136(42.2)	72(22.4)	23(7.1)	81(25.2)	10(3.1)
2003	320(100.0)	167(52.2)	66(20.6)	29(9.1)	41(12.8)	17(5.3)
2004	462(100.0)	140(30.3)	165(35.7)	32(6.9)	99(21.4)	26(5.6)

주:()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4-8〉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건, %)

	전 체	노사		노동위원회			기 타	미해결
	선 세	직접교섭	알선	조정	중재	자체종결	기다	미애설
1995	88(100.0)	76(86.4)	-(0.0)	-(0.0)	2(2.3)	7(8.0)	1(1.1)	2(2.3)
1996	85(100.0)	79(92.9)	-(0.0)	-(0.0)	2(2.4)	2(2.4)	-(0.0)	2(2.4)
1997	78(100.0)	55(70.5)	-(0.0)	-(0.0)	-(0.0)	20(25.6)	2(2.6)	1(1.3)
1998	129(100.0)	81(62.8)	-(0.0)	-(0.0)	-(0.0)	37(28.7)	3(2.3)	8(6.2)
1999	198(100.0)	147(74.2)	-(0.0)	-(0.0)	-(0.0)	46(23.2)	1(0.5)	4(2.0)
2000	250(100.0)	189(75.6)	-(0.0)	-(0.0)	1(0.4)	37(14.8)	8(3.2)	15(6.0)
2001	235(100.0)	154(65.5)	-(0.0)	-(0.0)	-(0.0)	57(24.3)	12(5.1)	11(4.7)
2002	322(100.0)	235(73.0)	-(0.0)	-(0.0)	-(0.0)	66(20.5)	11(3.4)	10(3.1)
2003	320(100.0)	200(62.5)	-(0.0)	-(0.0)	1(0.3)	93(29.1)	9(2.8)	17(5.3)
2004	462(100.0)	394(85.3)	-(0.0)	-(0.0)	3(0.6)	46(10.0)	4(0.9)	15(3.2)

주:()안은 구성비임.

미해결은 연도말 현재 분규지속 중인 사업장임.

〈표 4-9〉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개소,%)

				협약임금	이사륨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10111	TE DIMIT		임금총액 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2. 1 2 3 4 5 6 7 8 9	5,754 5,476 5,097 5,116 5,218 5,401 5,751 5,909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401	5,281 5,156 4,744 4,798 4,857 4,991 5,292 5,514 74 154 420 630 1,435 2,103 2,887 3,517 4,161 4,377 4,655	91.8 94.2 93.1 93.8 93.1 92.4 92.0 93.3 1.4 2.9 7.8 11.7 26.6 38.9 53.5 65.1 77.0 81.0 86.2	4.3 -2.7 2.1 7.6 6.0 6.7 6.4 5.2 7.4 7.0 5.5 6.1 6.6 6.7 6.9 6.9 6.9 6.9 6.9 6.9 6.9	4.2 0.0 2.1 7.2 6.0 - - - - - - - - - -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5,40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5,751	4,991 107 214 413 718 1,306 1,856 2,491 3,372 4,503 4,700 4,958 5,292	92.4 1.9 3.7 7.2 12.5 22.7 32.3 43.3 58.6 78.3 81.7 86.2 92.0	6.7 5.0 5.9 6.0 6.5 6.7 6.7 6.6 6.5 6.5 6.5	- - - - - - - - -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5. 1 2 3 4	5,909 5,909 5,909 5,909 5,909 5,909 5,909 5,909 5,909 5,909 6,228 6,228 6,228 6,228	12 152 445 706 1,118 1,770 2,380 2,901 3,482 4,061 4,587 5,514 13 107 344 554	0.2 2.6 7.5 11.9 18.9 30.0 40.3 49.1 58.9 68.7 77.6 93.3 0.2 1.7 5.5 8.9	4.4 4.7 5.1 5.3 5.2 5.4 5.5 5.5 5.5 5.5 5.5 5.2 2.3 4.4 4.0 4.6	- - - - - - - - - - -

〈표 4-10〉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5	289	161,150	9,470	_	-	-	-
1966	594	222456	13,096	_	-	-	_
1967	1,142	336,159	18,207	_	-	-	_
1968	2,389	488,628	22,959	_	-	-	_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80,755	3.19	2.13	7.75
2003	1,006,549	10,599,345	94,924	92,697	3.68	2.35	8.96
2004	1,039,208	10,473,090	88,874	-	-	-	8.49

주:1) 도수율=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 ×1,000,000 2) 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1,000 제해자수 자해자수 근로자수 ×1,000

4)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로서 재해건수, 도수율 및 강도율은 2005년 9월경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노동부,『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4-11〉 산업별 천인율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2002	7.75	73.16	12.22	7.19	2.88	7.44
2003	8.96	104.53	14.16	8.61	2.82	8.72
2004	8.49	141.87	12.83	9.40	2.55	7.79

주: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임. 자료:노동부,『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1〉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단위:개소, 명)

전산업 농림어업 광 업 제조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	구도사급 업장 피보험자	
	175 52,811	
	180 53,493	
	575 53,625	
	768 55,170	
	341 55,440	
	357 56,545	
200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371 57,148	
	391 58,697	
	333 60,975	
2002. 9 803,596 7,085,202 2,394 19,524 1,035 16,208 174,364 2,629,125	371 57,768	
10 810,158 7,102,108 2,412 19,716 1,043 16,218 175,358 2,627,182	368 57,318	
11 817,460 7,141,024 2,425 19,859 1,055 16,145 176,368 2,635,128	368 57,286	
1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370 57,148	
	382 57,167	
2 818,388 7,159,428 2,453 19,369 1,066 16,112 177,055 2,646,988	382 57,493	
	370 57,657	
	376 57,808	
	381 57,824	
	377 57,956	
	371 58,050	
	371 58,406	
	377 58,525	
	390 58,418	
	388 58,505	
	58,697	
	58,597	
	396 59,021	
	020 59,295	
	187 59,421	
	345 59,595	
	389 59,844	
	411 60,310 427 60,693	
	419 61,035	
	498 61,205	
	557 60,992	
	333 60,975	
	217 61,457	
	158 61,707	
	152 61,820	

주:1) 2004년 1월부터 산업분류 바뀜.

²⁾ 고용보험제도 시행초기(1995.7.1)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이후 10인 이상(1998.1.1), 5 인 이상(1998.3.1), 1인 이상(1998.10.1)으로 적용확대됨.

³⁾ 기타공공 개인서비스업에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포함

⁴⁾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1〉의 계속

(단위:개소, 명)

	건·	설업	도소	:매업	숙박음	음식점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10,101	235,617	2,368	271,405	591	67,061	3,487	486,924	1,699	394,563
1997	12,280	233,198	2,635	278,482	625	66,566	3,566	488,499	1,753	394,015
1998	48,528	364,757	91,968	508,659	30,523	105,923	12,242	529,171	6,971	378,494
1999	68,282	467,226	150,054	637,669	58,604	150,405	16,789	552,243	7,639	385,299
2000	85,996	509,958	166,125	724,676	55,348	167,565	21,102	586,293	7,388	389,633
2001	108,707	529,913	194,997	775,666	70,613	177,902	24,059	578,825	7,619	377,860
200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2. 9	120,969	552,008	190,591	812,940	57,794	176,240	24,172	580,680	7,861	384,215
10	122,381	559,649	191,876	817,066	58,660	176,736	24,361	581,037	7,948	383,565
11	125,035	569,346	193,315	824,242	58,821	175,465	24,528	581,593	8,001	285,750
1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	128,138	571,046	194,621	830,890	58,260	174,788	24,748	582,924	8,020	385,249
2	124,918	567,163	193,789	832,741	56,808	172,529	24,760	581,358	8,021	386,286
3	121,370	567,049	193,456	832,734	55,885	171,777	24,796	580,599	8,025	387,546
4	123,498	572,106	190,691	835,156	53,249	171,212	24,677	580,029	7,970	387,255
5	124,967	573,190	190,533	836,985	52,274	170,495	24,705	578,092	7,978	386,283
6	126,799	569,109	191,051	828,318	52,669	164,905	24,783	574,778	8,000	385,453
7	129,423	562,592	189,830	823,770	51,559	160,340	24,739	571,354	7,939	385,320
8	132,193	560,176	190,528	823,804	51,274	160,385	24,816	568,319	7,932	385,009
9	132,589	557,206	190,773	820,840	51,262	159,568	24,923	566,216	7,,942	386,555
10	136,497	557,725	193,344	820,266	52,128	159,551	25,194	559,397	7,987	385,907
11	138,747	559,543	194,780	823,318	52,510	159,598	25,384	559,685	8,024	385,387
12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	138,360	564,737	183,954	764,730	54,072	160,173	25,645	561,137	8,085	383,941
2	139,640	569,625	183,458	772,631	53,298	160,792	25,756	562,399	8,040	384,640
3	150,884	570,856	182,442	776,878	52,035	161,478	25,751	562,708	7,993	384,702
4	167,522	572,797	179,736	780,977	50,682	162,413	25,642	564,206	7,902	384,249
5	185,961	574,166	179,916	783,262	50,681	163,590	25,646	564,959	7,830	384,583
6	198,800	573,100	181,476	783,513	52,428	164,669	25,744	565,506	7,873	385,059
7	211,324	573,137	181,477	782,559	52,430	164,161	25,794	565,077	7,860	383,194
8	222,380	571,849	181,979	778,417	52,369	162,024	25,903	566,405	7,858	384,754
9	228,433	569,957	187,814	778,582	55,373	161,395	26,652	566,354	8,068	385,083
10	238,641	569,108	204,457	779,829	59,101	162,190	27,553	566,322	8,456	384,562
11	250,865	570,039	212,282	781,525	60,973	162,811	27,953	567,319	8,595	383,472
12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5. 1	182,473	560,971	224,591	786,587	61,667	160,179	28,663	573,336	8,737	380,397
2	186,347	561,523	224,611	793,263	61,638	160,465	28,843	575,800	8,723	382,997
3	203,571	565,512	224,309	799,825	61,266	161,181	28,926	578,775	8,690	380,419

〈표 5-1〉의 계속

(단위:개소, 명)

							(인치ㆍ개조, 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개인서비스업		기타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099	395,955	322	12,387	1,063	122,232	1,277	90,372	114	11,273
1997	4,697	434,448	325	13,287	1,134	127,369	1,364	94,141	134	12,110
1998	41,218	617,919	20,290	62,335	31,401	217,833	16,982	149,094	365	20,894
1999	58,947	751,283	33,344	96,408	37,529	247,929	28,896	182,980	509	21,647
2000	75,022	905,435	43,832	146,150	40,272	270,642	30,922	209,583	4,565	95,342
2001	87,848	976,486	48,259	161,251	44,911	299,916	36,325	224,315	4,982	96,777
200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33,756
2002. 9	91,667	1,015,620	46,037	179,191	46,515	321,944	34,201	237,932	5,125	101,807
10	92,365	1,018,229	46,476	181,464	46,884	323,077	34,368	238,230	5,140	102,621
11	93,229	1,026,253	46,925	182,749	47,165	324,878	34,545	239,305	5,157	103,025
1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	94,482	1,031,616	47,089	177,047	47,495	325,735	34,403	238,150	5,186	100,462
2	94,783	1,035,574	46,912	175,558	47,611	327,938	34,122	238,813	5,208	101,506
3	95,343	1,038,744	47,183	185,869	47,840	331,788	34,076	241,014	5,254	104,250
4	95,143	1,048,369	46,909	190,327	48,024	336,544	33,314	244,022	5,297	105,285
5	95,586	1,054,505	46,975	191,766	48,545	340,308	33,237	244,225	5,301	105,551
6	95,934	1,054,556	46,841	190,056	48,848	341,538	33,246	243,503	5,313	105,789
7	95,969	1,054,518	46,561	187,431	49,020	343,147	32,897	243,261	5,349	105,429
8	96,682	1,056,134	46,542	186,893	49,280	344,391	32,934	244,612	5,371	106,183
9	97,304	1,057,007	46,673	190,161	49,534	343,872	32,967	244,778	5,373	107,597
10	98,401	1,063,269	47,206	192,333	50,038	345,220	33,327	245,708	5,404	108,451
11	99,208	1,067,734	47,431	192,516	50,244	346,802	33,516	247,080	5,431	108,938
12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	100,548	1,078,142	47,168	185,450	51,077	350,890	47,426	316,533	5,850	109,118
2	101,345	1,106,147	46,984	185,195	51,345	354,563	47,456	323,155	6,483	120,525
3	102,008	1,124,546	46,741	195,592	51,924	361,016	47,318	328,058	6,888	125,435
4	101,749	1,142,249	46,370	201,698	52,275	366,940	46,890	331,557	7,143	128,231
5	101,823	1,156,767	46,087	205,574	52,738	372,018	46,670	334,648	7,275	131,989
6	103,448	1,168,561	46,098	207,363	53,291	376,448	47,122	336,004	7,318	130,171
7	104,053	1,174,192	45,899	204,083	53,647	379,544	47,179	335,534	7,547	127,975
8	104,630	1,174,283	45,889	201,722	53,887	380,660	47,344	336,824	7,675	132,001
9	106,754	1,173,744	46,560	204,256	54,406	382,734	48,394	337,028	7,907	135,837
10	114,043	1,178,421	47,048	207,165	54,957	384,278	49,916	336,831	8,031	137,370
11	116,898	1,185,393	47,206	208,074	55,314	386,079	50,707	328,408	8,052	148,750
12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133,756
2005. 1	123,361	1,201,456	46,665	199,881	55,874	386,127	50,601	338,183	7,358	149,214
2	123,763	1,209,049	46,647	199,819	56,266	388,828	50,805	342,134	7,675	162,330
3	124,456	1,219,286	47,299	212,468	58,257	400,752	51,037	347,186	7,714	163,157

〈표 5-2〉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 득	상 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19,322 1,345,231 2,963,828 3,330,353 3,695,723 3,435,154 3,692,771 3,449,449 3,764,995	1,395,985 1,392,542 1,975,706 2,499,662 2,981,558 3,234,745 3,404,669 3,394,502 3,364,005
2001.3/4 4/4 2002.1/4 2/4 3/4 4/4 2003.1/4 2/4 3/4 4/4 2004.1/4 2/4 3/4	859,931 830,994 955,178 941,291 867,023 929,273 941,635 911,252 804,214 792,348 1,011,402 993,762 876,309	853,254 799,740 873,050 848,816 844,678 838,125 925,890 900,868 832,783 734,961 859,906 858,013 842,534
2002. 9 10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1 2 2004. 1 5 6 7 8 9 10 11 12 2005. 1 12 2 3	272,038 330,751 328,046 270,476 294,107 280,359 367,169 341,374 294,602 275,276 305,675 253,373 245,166 287,135 261,507 243,706 253,211 344,590 413,601 357,811 317,828 318,123 328,403 279,683 268,223 300,518 282,652 342,843 279,543 450,474	263,131 312,108 287,345 238,672 305,396 277,536 342,958 304,880 286,199 309,789 327,997 255,305 249,481 278,796 239,025 217,140 240,080 277,524 347,302 298,822 272,703 286,488 320,855 272,460 249,219 281,374 269,970 252,208 335,304 226,848

주:1) 취득자는 신규, 경력, 기타 취득자의 합.

신규취득자: 학교, 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처음으로 신규 채용된 피보험자. 경력취득자: "신규취득자"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기타취득자: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신분이 바뀐 근로자, 새로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등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3〉 고용보험사업 현황

(단위:명, 백만원)

(근표・당, 팩근편,											
	고용안정 사업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 성 보호급여사업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금 액	신청자	인정자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신규 수급	인 원	금 액	
1997	12275	50,991	50,774	199,880	58,873	-	-	-	-	-	
1998	97449	438,465	434,199	588,006	257,670	-	-	-	-	-	
1999	184304	327,929	325,220	1,029,156	418,184	-	-	-	-	-	
2000	113809	260,407	258,727	1,379,987	396,433	-	-	-	-	-	
2001	129233	349,245	347,388	2,154,046	380,222	-	_	-	-	-	
2002	90052	299,215	297,109	2,313,973	457,717	22,711	22,601	3,763	-	3,087	
2003	91573	379,600	375,561	2,228,566	440,114	32,133	33,522	6,816	-	10,576	
2004	-	471,158	467,362	-	-	38,541	41,570	9,304	-	20,803	
2002. 9	6,160	21,890	21,767	160,133	29,979	2,251	2,228	409	926	377	
10	8,464	26,769	26,447	185,047	32,954	2,294	2,266	394	997	415	
11	8,352	26,359	26,027	215,508	32,209	2,222	2,225	424	989	446	
12	5,024	23,262	22,954	574,707	56,869	2,231	2,251	454	1,045	497	
2003. 1	7,861	32,796	32,484	202,576	28,967	2,433	2,469	433	1,072	516	
2	6,731	27,863	27,569	166,251	60,696	2,165	2,219	435	1,038	553	
3	5,970	30,693	30,383	265.354	32,206	2,495	2,574	520	1,199	712	
4	7,375	30,931	30,582	217,954	32,129	2,427	2,478	535	1,225	762	
5 6	8,223	30,523	29,963	175,974	32,414	2,791	2,876	547 575	1,237	738 850	
7	4,874 8,339	30,395 36,711	30,078 36,338	223,774 206,442	27,563 33,255	3,123 3,116	3,256 3,270	575 695	1,384 1,629		
8	9,840	30,800	30,487	210,073	62,869	2,636	2,768	583	1,530	1,011 935	
9	7,428	27,874	27,568	201,230	31,234	2,596	2,759	591	1,644	1,039	
10	8,757	35,976	35,686	170,583	27,268	2,702	2,739	642	1,797	1,185	
11	8,736	32,692	32,377	179,328	27,243	2,655	2,822	592	1,648	1,098	
12	7,443	32,346	32,046	261,472	50,584	2,994	3,189	668	1,845	1,178	
2004. 1	6,618	36,737	36,486	144,309	19,674	2,625	2,801	519	1,675	1,053	
2	10,067	40,252	39,917	207,285	26,680	3,189	3,435	591	1,749	1,149	
3	6,469	42,646	42,247	220,649	26,143	3,262	3,458	779	2,016	1,433	
4	7,379	38,857	38,451	182,010	29,511	2,954	3,128	735	1,922	1,499	
5	8,613	36,613	36,297	297,161	36,389	3,392	3,679	782	2,027	1,596	
6	6,999	37,585	37,270	235.509	38,440	3,776	4,006	884	2,283	1,819	
7	7,566	42,864	42,556	165,070	31,700	3,209	3,464	782	2,229	1,660	
8	8,661	37,778	37,487	222,542	32,290	3,133	3,398	736	2,375	1,860	
9	7,690	34,832	34,550	207,158	30,933	2,839	3,088	844	2,463	1,921	
10	8,064	37,304	37,001	164,117	28,879	3,008	3,271	803	2,717	2,152	
11	8,983	40,773	40,488	266,992	37,113	3,431	3,761	870	2,840	2,157	
12	9,898	44,917	44,612	265,917	56,313	3,723	4,081	979	3,143	2,504	
2005. 1	8,461	60,357	60,039	185,749	25,602	3,274	3,572	800	2,948	2,189	
2	9,368	39,879	39,640	210,286	25,068	2,842	3,152	706	2,698	1,960	
3	9,693	56,169	55,908	222,380	27,379	3,744	4,097	946	3,224	2,573	

- 주:1) 실업급여사업관련 시계열 자료에는 2004년 1월부터 일용직이 포함.
 - 2) 2004년 통계 완전히 수집되지 않음.
 - 3) 연도별 실적은 매년 말일 기준의 실질지원금액이므로 사업에 따라 12개월간의 월별 지원금액을 합산한 수치와 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출력조건, 기준시점 등의 사유로 인해 타기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4) 고용안정사업의 시계열을 일치시키기 위해 위의 표에서는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고령자·여성재 고용장려금을 빼서 따로 보고하였음.
 - 5) 고용안정사업의 2001년의 경우 장기실작자채용장려금 17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 6) 고용안정사업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 및 지원요건이 변경됨.
 - 7) 모성보호급여사업의 금액은 신규수급인원을 포함한 해당기간의 총수급인원에 대한 지급금액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